

발간사

지난 몇년간 여러가지 곡절이 있기는 하였지만, 긴 안목에서 살펴보면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외면적으로는 아직도 대결의 관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2억 8천만 달러가 넘는 식량을 지원했으며, 또한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일환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수로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4자회담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 북한의 핵문제, 그리고 이후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 기도로 남북관계가 극한 긴장으로 치닫던 때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큰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더욱 큰 폭으로 그리고 더욱 빠르게 진전되어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단순히 영토나 주민의 재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민족이 세계의 주류에 당당히 서는 한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분단의 명예를 안은 채 우리민족이 새로운 도약을 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민족의 정당한 권리를 제약하고 번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단을 극복함으로써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통일국가를 이루하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통일은 더 이상 꿈이나 소망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오늘의 남북관계를 조망해 볼 때, 통일은 우리세대가 마무리지을 수 있는 현실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난관을 계기로 삼아 우리 모두가 지혜와 슬기를 발휘한다면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 속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의 질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또한 통일에 대한 준비도 더욱 실질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부풀려진 통일논의를 내실화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민족의 공동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성 있게 기울여 나간다면 머지않아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제사회의 협조와 축복 속에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1997년 통일백서는 우리의 통일추진 노력에 대한 지난 5년간의 기록입니다. 이번 통일백서의 발간이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국민과 정부의 노력을 정리함으로써 그 의미를 되새기고 남북관계의 오늘과 내일을 정확히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997. 12. 17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목 차

제1장 남북분단과 통일정책의 변천

제1절 분단사의 전개

- | | |
|---------------|----|
| 1. 분단과 6·25사변 | 15 |
| 2. 분단의 심화와 영향 | 17 |

제2절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개관

1.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	22
2. 제2공화국의 통일정책	23
3. 제3공화국의 통일정책	24
4. 제4공화국의 통일정책	27
5. 제5공화국의 통일정책	28
6. 제6공화국의 통일정책	29

제2장 통일환경의 변화

제1절 국제정세

1. 국제정세 변화의 특징	37
2. 국제정세 변화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	38

제2절 북한의 현황

1. 권력승계	41
2. 대내정책	43
3. 대외정책	47
4. 대남정책	50
5. 북한체제의 전망	53

제3장 김영삼정부의 통일정책 기조

제1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립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천명의 배경	59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	60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 및 특징	64

제2절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 방안 제시

제3절 통일정책 추진방향

제4장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

제1절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 제시 77

제2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추진

1. 제의 배경과 의의 81
2. 4자회담 성립 경과 85
3. 제1차 4자회담 98

제5장 북한 핵문제와 경수로 지원

제1절 북한 핵문제 해결노력과 경수로 지원결정

1. 북한 핵문제의 대두 105
2. 핵협상의 교착과 한반도 긴장고조 106
3. 제네바협상 타결과 경수로 지원결정 109

제2절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115
2. KEDO-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타결 116
3. KEDO-북한간 후속의정서 협상 121
4. 부지조사 실시 126
5. 부지준비공사 착공 128

제3절 향후 과제 132

제6장 남북교류협력

제1절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1. 추진 경위 137
2. 신경제 5개년계획 남북교류협력부문계획 수립 138

3.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139
4.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	141

제2절 남북인적교류

1. 남북왕래	144
2. 북한주민접촉	149
3. 향후 전망	154

제3절 남북교역

1. 남북간 물자교역	156
2.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	164
3. 남북간 교통로 개설	168

제4절 남북협력사업

1. 개황	172
2. 추진 현황	174
3. 향후 전망	179

제5절 남북협력기금

1.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182
2.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183

제6절 남북교류협력의 발전방향

제7장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제1절 대북지원

1. 북한식량문제의 본질	191
2. 대북지원 기본방향	192
3.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193
4.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197

5.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201

제2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 최근 탈북현상의 특징 204
2.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206
3.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206
4. 정착지원 체계 208

제3절 이산가족문제

1. 정부차원의 해결 노력 214
2. 이산가족 당사자 노력의 지원 220

제4절 북한인권 개선 추진

1. 북한의 인권정책과 실태 225
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전개 230
3. 향후 추진방향 233

제8장 남북대화

제1절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1. 배경 239
2. 진행 경과 243

제2절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1. 배경 251
2. 진행 경과 252
3. 김일성 사망과 정상회담의 무기 연기 261

제3절 남북간 북경회담

1. 배경 262

2. 진행 경과	263
제4절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대표 접촉	
1. 배경	272
2. 진행 경과	274

제9장 통일의지 함양과 국민합의 기반 조성

제1절 통일교육

1. 통일교육의 기본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	291
2. 사회통일교육의 강화	297
3. 학교통일교육의 지원	303

제2절 대국민 통일홍보

1. 정부부처간 홍보협의체 구성 · 운영	311
2. 홍보자료 개발 · 보급	312
3. 언론을 통한 홍보	314
4. 첨단매체를 통한 홍보	315
5. 시설물을 통한 홍보	317
6. 기타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319

제3절 해외통일홍보

1. 국제사회에 대한 통일홍보	321
2. 해외동포에 대한 통일홍보	323

제4절 민간 통일활동 지원

1. 민간 통일활동의 전개	328
2. 민간 통일활동 지원	335

제10장 통일의 전망과 과제

341

■ 부 록

1. 통일정책 관련 선언 및 제의 351
2. 주요 남북관계 합의문건 381
3. 통일정책 관련 법규 431
4. 남북관계 주요일지(1993~1997) 509

제1장 남북분단과 통일정책의 변천

제1절 분단사의 전개

제2절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개관

제1절 분단사의 전개

1. 분단과 6·25사변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우리민족은 여전히 분단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분단은 우리민족을 단순히 지리적으로 갈라놓는 데 그치지 않고 사상적·이념적으로 갈라놓음으로써 남북한을 이질적인 체제로 만들어 놓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로부터는 독립했으나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미국과 소련이 분할점령함에 따라 우리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한반도는 남북으로 양분되었다. 분할점령 기간동안 미국과 소련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소련은 점령지역인 38선 이북에 위성정권을 수립하고자 공산화를 추구한 반면 미국은 일본의 항복절차가 끝난 뒤 전 한반도에 걸친 통일정부 수립을 구상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소 대립과 세계적으로 냉전질서가 고착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하나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우리민족의 희망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1948년 8월과 9월 남북한에 각기 자유민주주의 모델과 공산주의 모델에 따른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한반도는 분단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어 소련과 중국의 지원 아래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목표로 한국을 기습 침공하였다. 6·25사변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의 체결로 일단락되었으나, 이후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분단구조의 성격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첫째, 동족상잔의 결과로 남북관계는 상호 적대와 대립의식이 심화되었

다. 남북한 주민은 공동체의식을 상실하고 상대편을 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념적인 차이가 6·25사변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내면화되었고, 상대체제나 이념 심지어 상대주민들에게도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둘째, 정치적인 차원에서 남북한에 모두 권위주의체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전쟁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헌영과 남로당을 숙청하는 등 정치적 경쟁세력을 차례로 제거하고 주체사상과 유일사상 체계를 바탕으로 전체주의적인 일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끊임없는 남침위협에 대처할 필요성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순조롭게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어려워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정치질서가 유지되었다.

셋째, 6·25사변은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왔다. 20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건국이후 초보적인 산업화를 추진하던 한국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공업화되었던 북한도 황폐화되어 남북한 모두 전후복구에 국력을 소비할 수밖에 없어 경제성장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

넷째, 사회문화적으로 6·25사변은 전통적인 사회구조가 붕괴되고 외래 문화가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과정에서 이념적인 차이로 사적인 보복이 횡행하면서 전통적 윤리와 가치를 근간으로 1차집단적인 성격을 유지 하였던 지역공동체가 파괴되었다. 많은 사상자와 피난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이동은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혼란을 동반하였다. 6·25사변후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통제체제가 강화되고, 한국에서는 서구문화가 유입됨에 따라 남북한 사회체제의 이질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다섯째,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냉전체제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반도가 동서냉전의 전초기지가 되어 강대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던 미국과 중국, 소련은 전쟁이후 한반도문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6·25사변은 냉전적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시작되었던 분단 구조를 민족내부의 분단으로 전화시키는 한편 극심한 대결로 그 성격을 규정짓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2. 분단의 심화와 영향

남북한은 반세기 이상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사고의 틀 속에서 서로 다른 발전과정을 거침으로써 이질화가 심화되어 왔다. 이와 같이 분단이 장기화·심화되고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동서 이념대결 구조에 남북한이 편입되고, 이러한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상호 대결구도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6·25사변으로 인해 불신이 심화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각자 자기체제의 강화에 주력했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둘째, 북한의 대남공산화전략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한반도 통일이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무력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군비를 증강시켜 왔다. 동시에 북한은 한국사회의 혼란을 유도하여 친공산정권을 수립한 후 친공산정권과의 합작을 통해 통일을 이루하려는 이른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도 병행하였다. 북한은 무력통일에 방해가 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계속 요구해 왔고, 친공산정권 수립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산주의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과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반정부 활동을 선동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오히려 불신과 대결이 일상화 되는 양상이 계속되었다.

셋째, 분단의 책임이 있으며 6·25사변을 도발한 김일성이 장기간 북한을 지배하고 대남적화전략을 계속 추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신뢰구축을 이를만한 여건이 마련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김일성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념적 대결구도를 끊임없이 조장하였으며, 한국사회에는 이러한 북한정권에 대한 민족적 배신감과 공산주의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게 되었고 북한의 무력침략과 파괴공작에 대처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넷째, 동서진영간 냉전의 국제적 상황이 한반도에 계속적으로 작용하였다. 상호협력과 화해보다는 경쟁과 대결의 구도를 구축해 온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대립은 1980년대 후반 소련이 개혁개방 노선을 선택한 시점까지 지속되었다. 한반도 분단과 남북한 대결도 단순히 민족내부의 분열상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동서 양진영의 대리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한반도 분단은 민족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적 문제가 되었으며, 분단극복의 방법도 매우 복잡한 국제화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분단이 반세기 이상 지속됨으로써 남북한 체제의 구성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 남북한이 체제경쟁을 위해 막대한 양의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우리민족 전체의 역량은 상당부분 소모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분단은 과거와 현재의 남북한 체제와 남북관계에 뿐만 아니라 미래 통일국가의 성격과 구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의 각 분야는 부정적 영향을 받아왔다. 정치분야에서 남북한은 상이한 통치이념 아래 이질적인 체제를 발전시켰다. 한국은 개인의 자유를 토대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하였고, 이와 함께 사적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경제활동의 기본이념으로 삼았다. 분단상황과 안보위협속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국은 점진적으로 민주화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개도국중에서도 모범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국제사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체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념체계는 김일성 일인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 국내적 기반이 취약하였던 김일성은 분단상황을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는 데 이용하였고,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사회주의 이념체계를 활용한 것이다. 또한 주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동원하는 데 통일명분을 내세우는 등 분단상황을 전체주의적 일인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활용하였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분단이 끼친 영향도 매우 크다. 지난 반세기 이상의 기간동안 남북한은 적대적 대결 속에서 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쏟아 부어야 할 막대한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적으로 낭비하였다.

남북한은 체제경쟁 차원에서 각기 다른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였다. 한국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속에서 수출주도 산업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선진기술을 수용하고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정의 막대한 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선진국가로의 도약과정에서 분단으로 인한 초과비용의 지출은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도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여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은 이루었으나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개인의 자율과 창의가 억압됨으로써 성장의 한계를 맞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따른 국제적 협력기반의 상실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

여 주민의 기본적 욕구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 들었다. 게다가 과도한 군사비와 체제유지비는 경제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분단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가져다 준 영향은 보다 본질적이다. 6·25사변으로 상대체제에 대한 적대감뿐만 아니라 상대주민들에 대한 집단적 적대감도 생겨났다. 더구나 인적인 교류나 사회 문화적인 교류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남북한 주민들의 이질화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가치체계나 규범이 다르게 변했으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언어생활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분단상태가 장기화된 결과 남북한 사회문화부문의 이질화와 공동체의식의 상실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사회가 정체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 남한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사회문화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남북한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은 더욱 희박해질 여지가 크다.

결국 분단은 일과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역사적 과정이다. 분단상태는 민족단위의 발전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를 왜곡시켜온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북한이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민주적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국이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민족이 진정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분단상태의 종식, 즉 통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분단을 인식한다면 분단의 극복과 통일은 그 어떤 희망이나 당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놓여있는 민족적 과제라고 하겠다.

제2절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개관

1.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

제1공화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内外에 선포함과 동시에 통일에 관한 기본입장을 천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 한반도에 대한 주권을 가진 유

일한 합법정부이다.

② 선거가 보류된 북한에서 조속히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여 북한동포를 위하여 국회에 공석으로 남겨둔 100석의 의석을 채워야 한다.

③ 북한동포들의 자발적 의사가 계속적으로 봉쇄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무력에 의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유엔결의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합류해야 함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북한지역의 수복을 위해 무력행사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기반으로 북한을 반란단체로 규정한 것 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무력행사를 위한 준비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선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였다고 할 수 있다.

제1공화국 정부의 통일정책은 정부수립 당시의 국제법적, 도덕적 우월성에 기초하여 북한당국을 철저히 부정하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방법론적으로는 한반도문제 해결의 국제화, 특히 유엔을 통한 해결방법과 북한지역에서의 자유선거 실시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지위에 두고 출발하는 모든 논의는 배제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세계적화 전략을 추종하고 있던 북한은 국제적 정통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력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였으며,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기습남침을 감행함으로써 우리민족은 3년여에 걸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게 되었다.

6·25사변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끝이 났다. 양측은 이 정전협정에서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이 완성될 때까지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와 무력행위의 일체 정지를 약속하였다. 이때 확정된 군사분계선인 휴전선에 의해 남북분단이 고착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제2공화국의 통일정책

자유당 정부의 독재에 항거하여 발생한 1960년의 4·19혁명에 의해 내각책임제 헌법에 기초하여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4·19혁명 이후 보수·혁신을 막론하고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표면에 나타났으며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다양한 통일방안이 제시되었다. 혁

신계와 일부 학생들은 남북교류·협상론, 중립화통일론 등을 들고 나오기도 하였다.

통일문제에 대한 비등하는 여론을 감안하여 민주당 정부는 제1공화국 자유당 정부의 유엔감시하의 북한지역 자유선거 또는 북진통일론 대신 ‘유엔감시하의 남북자유총선거’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였다.

제2공화국은 제1공화국에 비해 짧은 기간이긴 하였지만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는 훨씬 활발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통일논의의 상당부분은 분단의 원인과 배경이 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국제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통일논의가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를 도외시한 채 무질서하게 전개됨으로써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3. 제3공화국의 통일정책

통일논의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무질서하게 전개됨과 함께 국내정국이 혼란으로 빠져들던 시대적 상황에서 5·16이 일어났다.

5·16을 계기로 등장한 군사혁명위원회는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다. 그 중 제1항은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제5항에서는 “민족적 숙원인 국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기울인다”고 천명하였다. 즉 반공체제의 재정비 강화와 국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이 통일의 기본방향이었던 것이다. 이로써 혁명정부 1년간은 제2공화국 시기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통일논의가 중지되고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통일정책만 있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1월 10일 연두교서를 통해 정부의 통일방안은 유엔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통일, 실지회복에 의한 국통일임을 밝히고, 통일을 위한 제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1966년 1월 18일 국회에 보낸 연두교서에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조국근대화야말로 남북통일을 위한 대전제요, 중간목표이다. 통일의 길이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이 경제자립에 있는 것이라면 자립은 통일의 첫단계가 된다”고 함으로써 ‘선건설 후통일’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당시

의 정부는 우리의 경제력이 북한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또한 민주주의가 정착된 다음에야 통일노력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1960년대 들어 두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대북한 국력우위를 확보하기 시작한 3공화국 정부는 1960년대의 ‘대화없는 남북대결시대’를 청산하고 1970년대의 ‘대화있는 남북대결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1969년 7월 닉슨독트린이 발표되고, 1970년대 들어 미·중·일 관계개선 등을 계기로 새로운 세력균형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등 세계적인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국의 통일정책은 매우 신축적이면서도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해 1969년 3월 1일에는 국토통일원을 설치하였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제25주년 경축사를 통해 남북한간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는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하였다.

- ① 긴장상태의 완화없이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에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 ② 북한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 전복 기도를 포기해야 한다.
- ③ 남북간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용의가 있다.
- ④ 북한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한다면 북한의 유엔 참석을 반대하지 않는다.
- ⑤ 남북한의 어느 체제가 더 잘 살 수 있는가 개발과 건설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일 것을 제의한다.

이러한 기본정신에 따라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북한적십자회에 대해 1천만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 제의를 북한적십자회가 수락함으로써 분단 26년만에 인도적 문제에서부터 남북대화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한편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 양측의 당국자간 비공개 접촉과 상호방문을 거쳐 분단이후 최초의 남북한간 합의문서라 할 수 있는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한 양측은 ①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

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③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등 3원칙에 합의하였다.

또한 상호 중상·비방 중지,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다방면적 교류실시, 직통전화 설치 등 실천조치를 합의하고, 쌍방간의 합의 사항을 추진하고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조절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초의 이러한 남북대화는 북한이 구체적 실천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은 채 정부의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1973.6.23)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후 북한은 당국간의 접촉과 대화보다도 ‘대민족회의’ 소집 등 한국사회의 국론분열에 주력하였다.

4. 제4공화국의 통일정책

1972년 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4공화국 정부의 통일정책은 제3공화국의 연속선상에서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를 타개하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본좌표와 접근방식을 종합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천명하였다. 동 선언에서는 ①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의 경주, ②한반도의 평화유지, 남북간의 내정불간섭 및 불침략, ③성실과 인내로써 남북대화 계속, ④북한의 국제기구에의 참여 불반대, ⑤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불반대, ⑥모든 국가에의 문호 개방, ⑦평화선린에 기초한 대외정책의 추진 등 7개항을 담고 있다.

이후 제4공화국 정부는 1974년 1월 18일 ‘남북상호 불가침협정 체결’ 제의, 1974년 8월 15일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천명, 1979년 1월 19일 ‘남북한 당국간 무조건 대화제의’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1974년 8월 15일의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에서는 ①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상호불가침 협정 체결, ②남북간에 상호문호개방

및 신뢰회복을 위하여 남북대화, 교류와 협력 추진, ③이 바탕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총선거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5. 제5공화국의 통일정책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고, 1981년 3월 3일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 정부는 ‘통일되고 독립된 근대적 민족국가의 건설’이라는 통일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통일 노력은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과 남북한 정상회담의 개최제의, 통일문제와 남북한 관계정상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제시, 민족적 화해와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20개 시범실천사업’ 등의 제시로 구체화 되었다.

1982년 1월 22일 대통령 국정연설을 통하여 제시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통일헌법의 제정으로부터 총선거를 통한 통일민주공화국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통일이 민족자결의 원칙아래 거래전체의 자유의사가 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로서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이 헌법에 따라 통일된 단일 주권국가를 완성시킨다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통일조국의 국호, 정치이념, 국내외 정책의 기본방향, 정부형태,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과 시기 및 절차 등은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여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가운데 토의, 합의될 문제임을 적시하였다.

이러한 통일방안 제시의 후속실천조치로서 정부는 1982년 2월 1일 국토통일원장관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하여 민족화합을 위해 20개항에 걸친 구체적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시범사업의 내용에는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개통, 남북 이산가족들의 편지교류 및 상봉실현, 설악산 이북과 금강산 이남지역의 자유관광 공동지역 개방, 쌍방 정규방송의 자유로운 청취, 민족사의 공동연구, 남북간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제6공화국의 통일정책

1980년대 중반이후 국제정세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다. 세계를 동서로 갈라놓았던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화해·협력의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동구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추세도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속에서 1988년 2월 25일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제6공화국 정부가 출범하였다.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전문에 조국의 평화통일의 사명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66조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에 통일 관련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이 관념과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천과제임을 보다 분명히 하게 되었다.

제6공화국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한 통일정책을 전개하였다. 즉 민족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민족자존과 화해를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에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정책적 표현이 1988년 7월 7일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하 7·7선언)과 1989년 9월 11일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었다.

‘7·7선언’은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간 대결구조를 화해구조로 전환키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정책선언이었다. 특히 7·7선언은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위한 실천조치들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천조치의 일환으로 1990년 8월 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6공화국 정부는 국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1989년 9월 11일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해 발표하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간에 누적된 불신과 대결의식, 그리고 이질화 현상을 그대로 둔 채 일시에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

려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먼저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는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제시하였다.

통일국가의 수립절차는 우선 남북대화를 추진하여 신뢰회복을 기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현장’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어 남북의 공존공영과 민족사회의 동질화, 민족공동생활권의 형성 등을 추구하는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마지막으로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완전한 통일국가인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민족공동체현장에서의 합의에 따라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공동사무처 등을 두도록 하였다.

한편 1988년 12월 28일 강영훈 국무총리는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 앞으로 서한을 보내 남북한간 제분야에서의 상호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하기 위한 ‘남북총리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한 쌍방은 1989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여덟 차례의 예비회담과 두 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가진 끝에 ‘남북고위급 회담’을 개최키로 하였다. ‘남북고위급회담’은 예비회담에서 합의한 절차와 의제에 따라 8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제5차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전문과 25개 조항으로 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서명하였다 (1991. 12.13). 아울러 현안으로 떠오른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표접촉을 12월안에 개최키로 하는 등 3개 항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역사적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효시키고, 「남북고위급 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발효시켰다.

제7차회담에서는 남북 양측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발효시켰다.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 발효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간의 역사적인 합의사항은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이 증폭되고, 북한이 1993년 1월 29일 모든 남북당국 사이의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한 아래로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개요 〉

시대	대북인식	통일접근방식	주요 발표계기
제1 공화국	○ 실체 불인정 ○ 실지회복의 대상	○ 유엔결의에 의한 북한지역에서만의 총선거 ○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총선거	○ 제헌국회, 「북한 동포에 보내는 결의문」 ('48.6.12) ○ 변영태 외무장관 「제네바 정치회의 연설」 ('54.5.22)
제2 공화국	○ 실체 불인정 ○ 실지회복의 대상	○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총선거	○ 민주당 「통일외무 정책 쇄신방안」 ('60.7.26)
제3 공화국	○ 실체 불인정 ○ 실지회복의 대상	○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 총선거 ※ 선거 후 통일	○ 제6대 국회 제25차 본회의 결의안('64.11.29) ○ 「평화통일구상선언」 ('70.8.15)
제4 공화국	○ 실체 인정 ○ 평화공존의 대상	○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 「6.23 선언」 ('73.6.23) ○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천명('74.8.15)
제5 공화국	○ 실체 인정 ○ 평화공존의 대상	○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 실시 -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 협정 체결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천명('82.1.22)
제6 공화국	○ 상호체제인정 ○ 선의의 동반자	○ 남북연합의 과도단계를 거쳐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 실시	○ 「7.7특별선언」 ('88.7.7)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천명('89.9.11)

제2장 통일환경의 변화

제1절 국제정세

제2절 북한의 현황

제1절 국제정세

1. 국제정세 변화의 특징

1980년대 후반기를 기점으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실리 위주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난 국제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구소련 및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 체제를 스스로 변용·해체시키면서 국제환경의 변화를 촉발하였고 다시 그 변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혁의 과정을 밟아 왔다는 점이다. 냉전 종식 이후 새롭게 형성된 국제질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제질서의 성격을 규정하던 양대 초강국의 위상은 쇠퇴하고, 이들의 지위를 보장하던 군사적 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국가간의 이념적인 대립은 급속히 감소되고, 그 대신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한 실리 위주의 정책들이 주조를 이룸에 따라서 과거 이념의 확산과 세력의 확장을 뒷받침했던 군사력의 중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경제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둘째, 양극체제하의 체제경쟁에서 나타나던 제로섬(Zero Sum)적 사고가 상호 이익을 존중·조화시키는 입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추구가 국제정치의 핵심이 되었다. 즉 과거 체제경쟁에서는 정치·군사적면에서 세력 확장을 위한 소모전 양상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현 국제질서는 상호 정치·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과 협조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셋째, 국가 및 지역 간의 분쟁 해결이나 환경오염, 핵개발, 인권문제, 마약, 경제개발 등과 같은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차원적인 상호의존

성이 중시되고 있다.

넷째, 지구적 문제의 해결이나 다자간협상은 국제적 협력의 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빈부국간의 갈등 증대 및 지역주의(Regionalism)의 강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질서가 재편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간 협력의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즉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과 같이 지역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 국제정세 변화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

동북아지역은 아직 탈냉전의 질서가 완전하게 자리잡힌 것은 아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아 점진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한반도의 대결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남북간의 대결관계가 국제냉전체제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던 테 반해 이제는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외부요소가 사라짐으로써 우리 민족의 노력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증가되었다.

특히 대남 적화통일을 추구하였던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소련이 해체되었으며 중국도 우리나라와 수교하였고,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함으로써 남북간 갈등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동아시아지역의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간의 전통적 경쟁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국간의 역학관계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복잡성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한반도 통일과 이들 주변국의 이해관계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변국가 모두는 최소한 한반도에서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가들의 공감대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남북간의 무력대결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화해와 협력의 국제조류는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는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모든 국가가 협력을 추구하지 않고는 생존과 발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국제적 흐름은 모든 국가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북한도 장기적으로는 생존을 위해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주변국의 요구를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동참할 여건은 더욱 높아졌다고 하겠으며, 이렇게 될 때 남북관계도 크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한편 최근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현상은 남북간 현안문제 해결이 국제적 틀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수로 건설에 있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국제식량계획(WFP)이 전면에 나서고 있고, 두만강 개발계획을 유엔개발계획(UNDP)이 주관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선하에 남북간 항공로를 개설하는 합의도 성립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사회가 한반도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는 한편 국제적 협력차원에서 남북간의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추세에서도 알수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 문제가 정치·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식량문제, 경제문제, 인도적 문제 등 다원화되고 있는 점도 큰 특징이다.

요컨대 한반도 문제는 과거 냉전질서의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맞이하였으며 실질적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속에서 남북한이 상호 슬기를 발휘하여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제2절 북한의 현황

1. 권력승계

1997년 10월 8일 북한은 ‘당중앙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 특별보도’를 통해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발표하였

다.

북한은 김정일이 총비서직을 승계함으로써 부분적이나마 권력승계를 이루었으며, 김일성 사망이후 3년여동안 당총비서와 국가주석 등 체제의 중요직책들을 공석으로 남겨두었던 비정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탈피하였다.

그러나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왔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던 1964년 노동당 조직지도원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북한정권의 핵심인 당권 장악에 나섰고 그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1967년 5월의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였다. 이 회의를 기점으로 북한체제는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로 돌입하였는바 당시 당 조직과 선전선동 등 핵심분야를 책임지고 있던 박금철, 이효순 등 소위 갑산파들이 숙청되었다. 북한의 공식 역사서는 이 숙청을 김정일이 주도하였다고 쓰고 있으며, 이로써 김정일은 북한 노동당의 핵심으로 접근하였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선정된 것은 이 사건이 있은 지 7년후인 1974년의 일이다. 그해 2월 비공개리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는 김정일을 당 정치위원으로 선출함과 동시에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위대한 수령님의 후계자로 추대하는 결정’을 채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공식화되었으며 김정일은 이 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사실상 당권 장악에 성공하게 된다.

당권장악에 이어 김정일은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되면서 군권 장악에도 본격적으로 나서, 1991년 12월 24일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는 1992년 헌법개정을 통해 분리·독립되고 권한이 강화된 국방위원장에 취임함으로써 이를 완성하게 된다.

한편 김정일의 권력장악이 진행됨에 따라 이미 1986년 5월 김일성은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선언하였으며 각종 선전매체들은 북한에서 “영도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었다”는 선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특히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이 되던 무렵부터 김정일은 ‘당·국가·군대의 수위’로 호칭되어 김일성 사후 3년간의 공백기간이 있긴 하였지만 김

정일의 당총비서직 승계, 나아가 권력의 승계는 시기와 형태가 문제였을 뿐 그 자체는 새로울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1997년 10월의 김정일 당총비서 승계는 그 절차에 있어 예전 김일성 시대의 그것에 비하면 다소 이례적인 것이었다. 김일성이 당총비서에 선출될 때에는 통상 당대회 혹은 당 대표자회를 열고 그 마지막날 당중앙 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당총비서에 선출되어 왔다.

이에 비해 김정일의 당총비서 추대절차를 보면, 먼저 1997년 9월 21일 평안남도 당 대표회를 필두로 10월 3일까지 12개 시·도 및 군 당대표회를 개최하여 김정일을 당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였으며 당대회나 당대표자회를 열지 않고 바로 ‘특별보도’로써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추대되었다고 선포한 것이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당총비서 선출의 권한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 회의가 열렸었는지, 김정일을 총비서로 추대하자는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은 김정일의 당총비서 선출절차의 하자 문제에 대해 “그 어떤 실무적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당적인 일대 정치적 사업으로 당의 최고 영도자를 추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김정일은 그가 당 총비서가 되는 문제에서부터 기존의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향후 김정일체제의 불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2. 대내정책

북한은 그동안 제반 대내외 정책의 목표를 소위 김일성이 창시하였다는 주체사상 구현을 통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공산주의화’ 하는 데 두어 왔다. 이를 위해 북한은 소위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등의 방침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김일성 사후 권력의 구심점 상실, 심각한 경제난, 외교적 고립과 이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안의 미정립 등 총체적 위기국면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80년대말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주창해 온 주체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를 계속 강조해 오고 있다.

김일성 사후 3년여동안 국가주석과 당총비서 등 최고 권력의 공백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정일이 군부의존의 위기관리체제하에서 국방위원장 및 인민군 최고사령관 직함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오다 1997년 10월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추대됨으로써 어느 정도 권력구조의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총비서직만 승계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직책인 주석직은 아직 공석인 상태에 있어 체제상의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그간 체제유지의 절대적이며 유일적인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는 주체사상을 토대로 1996년 ‘붉은기 사상’을 새로이 제기하여 김정일의 사상가적 면모 강조와 아울러 김일성시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붉은기 사상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자주와 창조의 사상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김정일시대의 새로운 사상으로서의 그 의미를 부여, 계속 강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면에서는 1990년이후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자력 성장의 잠재력을 상실하였으며, 에너지, 원자재난 등의 심화로 공장가동률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고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1995년부터는 북한의 식량 난이 국제적 문제로 되었다.

특히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에 따라 설정하였던 완충기(1994~1996) 정책의 성과나 차기 경제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던 점은 완충기의 주요과제인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또한 실패하였음을 시사하는 한편, 이렇다 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완충기를 연장하는 경제마비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극심한 식량 및 물자난으로 각종 사회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체제유지의 근간인 관료사회에 직권남용·뇌물·횡령 등 부정 부패 심화와 무사안일, 보신주의 팽배 등 기강해이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처하여 주민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범죄척결을 위한 본보기식 공개총살, 군대동원 등을 통해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사회 저변에 확산되어 있는 사회부조리가 단절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향후정책은 당분간 체제생존 및 김정일 체제의 안정적 기반 확보에 목표를 두고 추진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당분간은 기존 입장을 답습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북한 정권이 직면하게 될 대내정책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김정일체제의 안정화 기반 확보, 둘째, 외부로부터의 자본 및 인력 유입시 주민들에 대한 사상적 통제문제, 셋째, 경제 난 타개를 통한 주민들의 물질생활 향상문제 등이다.

북한은 김정일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김일성을 ‘선대 수령’으로, 김정일을 ‘후대 수령’, ‘하느님’ 등으로 부르면서 대대적인 상징 조작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가부장제 정치문화인 북한체제의 특성을 감안, 김일성에 대한 최상의 애도와 효도로 자신이 충효의 최고 화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유훈통치를 당분간 지속시켜 대중적 지지기반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김정일은 급격한 세대교체 없이 노·장·청 3세대간의 균형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혁명 1세대들의 자연사로 인한 공석을 점차 자신의 측근 인물인 혁명 2세대의 전문기술관료들을 중심으로 충원해 나갈 것이며 특히 김정일체제 유지의 근간인 군부인물의 대거 등용이 예상된다.

한편, 북한은 이완된 통제력의 강화를 위해 정치·사상적 통제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일성시대보다 김정일 체제에서 외부 사조의 침습방지 등 정치·사상적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앞으로도 농업제일주의·경공업제일주의·무역제일주의 등 이를 바 ‘3대 제일주의’를 경제전략의 기조로 계속 유지하면서 식량난 해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원자재 및 에너지 부족, 중공업 편중의 경제구조, 생산력 저하 현상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단기간에 회생될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이나마 경제 개방의 점진적 확대와 실용주의 노선 채택을 도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개인사업 허용 등 인민적 소유제도의 확대와 경제관리 및 운영체계의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정일은 최고지도자로서 김일성의 ‘유훈’을 충실히 받들어 나간다는 외양속에서 자신의 통치영역 확대와 독자성을 구축, 김일성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가게 될 것이나, 경제정책의 실패, 군부의 영향력 등 제약요인도 아울러 수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대외정책

북한은 1980년대 말 구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체제 해체 등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국제적인 고립 탈피와 내부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 미·일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은 김일성 사후에도 기존 대외정책 노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체제 유지와 한계상황에 이른 경제난 해결을 위해 대미·일 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중·러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기존 우호관계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1994.10.21) 이후 핵연료봉 보관·처리, 경수로 건설 및 중유지원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과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에 관해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한편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사업을 진척시키면서 미사일 협상에도 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도 제네바 합의의 이행 차원에서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조치 발표(1995.1.20), 미·북 직통전화 개설(1995.4.10), 대북 인도적 지원 규제 해제 조치(1996.4.7) 이외에도 UN을 통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실시하고 미하원 정보위 대표단(1997.8) 등 정치·경제·사회 단체 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하였다.

또한 북한의 정전체제 무실화 책동에 대응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한·미 정상이 제의(1996.4.16)한 4자 회담에 대하여도 북한은 두 차례의 예비 회담에서 본회담 의제의 세분화와 선 식량 지원 약속 등을 요구하여 난항을 야기하기도 하였으나 제3차 예비 회담(1997.11.21)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한 제반 문제’를 의제로서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제1차 본회담이 1997년 12월 9일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은 일본의 연립여3당 대표단과의 일·북 국교 정상화 회담 재개 합의(1995.3.30) 및 일본의 대북 쌀 지원(1995.6) 이후 대일 접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과 북한은 일본인 층의 고향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계기로 국교 정상화를 위한 예비 회담(1997.8.21~22)을 개최하여 일본인 층의 고향 방문 실현과 국교 정상화 회담 재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인 층 방문 단 제1진이 일본을 방문

(1997.11.8) 하였으며, 연립여3당 대표단이 방북(11.11)하였다.

한편 북한은 우리와 국교수립으로 다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과는 당·정 및 사회단체 대표단을 빈번히 교류하는 한편 김정일과 강택민 주석이 등소평 사망, 홍콩반환 및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등 기념일을 계기로 조전과 축전을 상호 발송하는 등 황장엽 망명사건 처리시 (1997.2)의 다소 불편했던 관계에도 불구하고 쌍방간 친선 유대강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러시아와도 1961년 7월에 체결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이 만료(1996.9)됨에 따라 군사적 동맹관계에서 일반적 국가관계로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 신조약의 체결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5년부터 시작된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형식의 1997년 신년사에서도 기존 외교정책의 기본이념인 ‘자주·평화·친선’ 원칙의 고수를 재천명하고 김정일의 이른바 「8·4노작」(「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8.4)을 통해서는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스스로의 태도 변화는 없이 이들 국가에 대해서만 대북정책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은 기존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은 그대로 유지한 채 김정일 체제의 최대 당면과제인 체제 안정, 심각한 경제난 타개 및 외교적 고립 탈피를 위해 생존전략차원에서 실용주의노선을 병행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대외정책의 중심고리로 삼아 핵동결, 경수로건설 등 미·북 제네바 합의를 이행해 나가고 미군유해 발굴 및 미사일문제 등 양측간 현안사항에 대한 협상에도 응하여 추가 경제제재 해제 및 경제적 지원 확보 등 실리를 취하는 한편, 연락사무소 개설 등 대미관계 개선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수교를 이끌어내 체제 유지를 보장받으려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군사력 우위 유지, 북한 정권의 정통성 확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군사비 부담 해소 등을 위해 미·북 평화 협정 체결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는 초기 국교수립을 목표로 국교정상화 회담의 재개를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조총련 및 일본내 친북단체들을 적극 활용, 국교 수립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면서도 일본으로부터 최대한의 보상을 얻어내고자 노력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함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중국과의 친선유대 및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러시아와는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체계 구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한 그들 입장에 대한 지지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동맹 국가들과의 친선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심각한 경제난 타개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동남아국가들과도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4. 대남정책

북한은 분단이후 지금까지 50여년간을 지속해온 대남 적화통일 기도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지난 1992년 개정된 헌법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사회주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조선노동당 규약에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당규약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반도의 공산화가 그들의 대남전략의 최종목표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대남 인식이나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내외 정세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남정책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있다.

분단이후 5년, 남북 쌍방이 정권을 수립한 지 2년만에 무력적화통일을 위해 일으킨 6·25 남침은 북한의 가장 공격적이며 강력한 대남정책이었다. 이후 1960년대말까지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1968.1),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1968.11) 등 각종 대담한 도발을 통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폭력성이 주조를 이루어 왔다.

1960년대의 폭력혁명정책이 실패하고 때마침 국제적인 동서 냉전 해빙무

드가 이는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1970년대 이후에는 대화와 대결을 병행하기 시작하여 대화없는 대결상태에서 대화있는 대결상태로 겉모양만 달라진 대남정책을 추구하였다.

1980년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통일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방안은 남과 북이 혼존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남과 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할 것 등 통일국가로서의 개념에 맞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철수’, ‘남한 반공법 철폐’, ‘남한 현정권 퇴진’ 등을 요구함으로써 이 제의가 기본적으로는 ‘남조선해방론’에 입각한 적화통일노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일성사망(1994.7.8)이전까지 이와 같은 대화와 대결 병행 정책을 추구하던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남북관계를 단절시킨 채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시 정부의 조문불허 방침을 구실로 내세워 자신들의 대화거부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内外의 체제 위기적 상황 속에서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켜 이를 주민통제에 이용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저의에서 나온 책임전가용 대남비방책이라 하겠다.

북한은 1996년 1월 31일 개최한 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1996년을 ‘평화와 민족대단결의 해’로 설정하고 북·남·해외의 정당·단체 및 각계인사들과의 접촉과 대화를 제의함으로써 정상적인 남북대화 단절의 책임을 회피하고 한국내 무분별한 통일논의를 부추겨 국론분열을 획책하려는 통일전선 공세를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통일전선 공세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8·15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편승한 한총련의 연세대 점거 농성사태 등과 혼합시켜 남한사회 혼란 조성에 이용하였다.

북한은 또한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사건(1996.9.18), 경비정 서해 북방 한계선 월선 및 함포사건(1997.6.5), 비무장지대 우리측 GP총격 및 포격 사건(1997.7.16) 등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을 자행하였다.

북한은 대남 교란을 위한 통일전선 공세와 무장도발을 자행하는 한편으로 우리 정부 및 대한적십자사와 민간단체들의 식량 및 인도적 대북지원 물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남북간 교역도 꾸준히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개별적 대북 투자를 요청하는 등 경제적 실리 추구를 외면하지 않고 있다. 최근 김정일은 당총비서 추대를 앞두고 소위 「8·4 노작」을 발표(1997.

8.4) 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등 기존 대남정책들을 묶어 조국통일 3대헌장이라 명명하고, 이러한 기본노선을 자신도 그대로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당면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당분간은 큰 변화없이 정치적 통일전선공세와 경제적 실리추구를 근간으로 한 기존의 대남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5. 북한체제의 전망

북한은 남북분단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해 옴으로써 소련이나 동구의 국가들이 경험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더욱이 대남적화 통일의 가장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 군사력의 사용을 설정하고 있는 북한은 대남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에 따라 왜곡된 투자구조의 심화에 따른 경공업의 폐폐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불균형적 생산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주민의 기본적 욕구도 충족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근래에는 통제된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주민의 사회일탈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과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사실상 적화통일보다는 체제유지를 우선시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의 불만을 무마하고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도 북한은 경제난 해소와 주민 생활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데올로기와 강압적인 방법을 통한 체제단속은 현재와 같은 생활고가 계속될 경우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은 체제단속을 강화하면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부분적으로라도 개방과 개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세계적인 흐름인 개방과 개혁을 계속 외면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제의 붕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지도부가 기존 체제의 고수로 인한 급격한 체제붕괴를 바라지 않는 한, 북한은 점차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선택하고 이를 남북간의 교류협력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평화적이고 질서있는 통일을 위한 중대한 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50년이상 고착되어온 사회주의 체제와 전체주의적 사고는 북한의 변화를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남 적화통일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정권의 존립명분을 축적해 온 북한으로서는 대남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힘들 것이다. 변화의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구적 요소들로 인해 북한의 개방과 변화는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최근 적발된 남파간첩사건이나 우리 언론기관에 대한 테러위협 등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의 수구적 요소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기존 대내외 정책과 대남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추진할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유훈통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힘이 아직도 절대적이며, 이를 바꿀 만한 리더십이 형성되어 있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여건과 북한 내부 정세간의 괴리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고, 이는 북한체제의 유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큰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남정책에서도 현실을 무시하고 기존의 혁명전략에 입각한 행태를 지속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할 우리의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3장 김영삼정부의 통일정책 기조

제1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립

제2절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 방안 제시

제3절 통일정책 추진방향

제1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립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천명의 배경

1990년대 들어 소련 및 동구공산권이 붕괴되고 동·서독이 통일되는 등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자유화·복지화·개방화의 새로운 세계사적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창의가 존중되고 국제적으로는 국가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호협력이 더욱 실질화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론 실리추구와 경제력이 국제사회의 역학관계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한편 남북한 관계에서는 근 반세기 동안 북한체제를 이끌어 왔던 김일성의 사망 등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북한은 그동안 심화된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으로 인해 체제유지의 한계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권력승계 등 커다란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下에서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통일 및 대북정책을 새롭게 점검 보완하고 보다 자신감 있게 미래지향적인 통일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통일의 기본철학을 명확히 밝히고, 통일원칙, 통일과정 그리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보다 분명한 모습으로 제시하여 통일방안에 관한 대강을 일목요연하게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정부가 제시하였던 통일방안들을 종합검토하

고, 전반적인 통일환경의 변화상황을 반영하여 국민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통일의 기본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4년 8월 15일 제49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게 되었다.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

가. 통일의 기본철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그동안 우리의 통일방안에서 다소 모호하게 제시되었던 두 가지 중심개념을 분명히 정립하였다. 즉 통일추진의 기본철학이 ‘자유민주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통일의 접근방도가 ‘민족공동체’임을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철학은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나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핵심 가치가 자유와 민주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향한 접근방도로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한마디로 민족공동체를 통하여 국가통일로 나가는 뜻이다. 즉, 남북한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공동체를 형성 발전시켜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정치적 통일을 완성해 나간다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의 접근방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통일은 권력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계급이나 집단중심의 이념보다도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 통일의 원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하고 있다.

‘자주’란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

라 남북한 당사자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우리민족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통일을 이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평화’란 통일이 전쟁이나 상대방을 전복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제요 염원이라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족의 희생을 초래할 무력이나 폭력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란 통일이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민주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통일을 이루하는 과정이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통일을 실현한 뒤에도 민족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민주’라는 개념에는 우리민족 개개인 모두에게 통일의 방법과 절차를 결정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통일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도 고루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다. 통일의 과정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기조위에서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제1단계인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적대와 불신,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속에 남북화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화해적 공존을 추구해 나가는 단계이다. 즉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1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정착되면서 상호신뢰가 더욱 쌓이게 되면 남북관계는 평화를 제도화하고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남북연합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제2단계의 ‘남북연합’은 하나의 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을 목표로 이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이 잠정적인 연합을 구성하여 남북한 간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도적 통일체제이다.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 법적·제도적 장치가 체계화되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기구에서 국가통합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다.

남북연합에서 어떤 기구를 두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남북한간 합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가 상설화되고 남북한의 의회대표들이 함께 모여 통일을 위한 법절차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제3단계인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즉, 남북한 의회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국가의 수립이 모든 문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정치적인 외형의 통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경제적·심리적 차원에서의 분단 흔적을 말끔이 씻어내고 민족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라. 통일국가의 미래상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통일국가는 통일과정에서 형성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정치·경제적 자유의 보장 및 복지와 인권존중이 설정되고 있는바,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복지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곧 민족전체의 복리가 구현되는 통일된 조국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통일된 조국은 분단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었던 여러가지 병리적 현상이 제거된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지향한다. 나아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국 가는 항구적인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가운데 민족구성원 모두가 성숙한 선진시민이 되는 사회일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세계속의 중심국가이다.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 및 특징

가.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의 기본철학으로 정립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한국의 통일정책이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바탕 위에서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세계사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 민족사 발전의 일관된 맥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과거 동서 진영간 이념적 경쟁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이자 시대정신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의 기본철학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세계사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1세기 동안 우리가 일관되게 지향해 왔던 가치도 다름아닌 민족의 자주독립과 부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이자 기본질서이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앞으로 우리민족이 세계사의 주류에 동참하여 민족의 자존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통일을 추진하는 기본철학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제시하는 당위성은 바로 이와 같은 근거에서 연유한다.

나. 통일의 주체가 민족구성원 모두임을 강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의 통일 3원칙을 제시함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철학 위에서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통일은 민족전체의 생존과 안전에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통일의 주체는 마땅히 민족구성원 전체가 되어야 하며, 어느 특정 계층이나 계급이 될 수 없다. 또한 통일은 반드시 민족구성원 전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하며, 통일된 조국은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국 가여야 한다.

다.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민족공동체 강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정책의 패러다임(Paradigm)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를 제시하였다. 민족공동체는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뿐이며, 한민족이 재결합할 수밖에 없는 당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통일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정부는 남북한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민족·민주·복지공동체를 건설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민족공동체 개념은 통일을 특정 집단 또는 계급의 국가권력 장악 과정이나 가공적인 국가체제의 조립으로 보기보다는 한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남한과 북한이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를 어떻게 건설해 나가는가를 더욱 중시함으로써,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사회·문화·정보공동체를 형성 발전시켜, 민족사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치적 통합의 여건이 성숙되어 갈 때 1민족 1국가의 단일 민족국가를 완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개념인 민족공동체에는 민족공동생활권의 형성이 내포되어 있다. 남북한간에 분야별 민족공동생활권 형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때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 통일국가의 구체적 미래상 제시

인류보편의 가치와 한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통일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가 보장되고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이다.

따라서 통일이 언제 어떻게 오더라도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회복 발전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통일과정에서 회복 발전시키려고 하는 민족공동체는 다름아닌 민족 전체의 번영을 약속하고 나아가 인류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의 번영은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될 때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에서 일관되게 추구해야 할 가치는 다름아닌 민주주의여야 한다.

통일은 선진국 진입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면서 민족의 창의와 능력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통일국가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한국사회부터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즉 우리는 먼저 우리사회 내부에서부터 모범적인 ‘민주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제2절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 방안 제시

김영삼 대통령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1996년 제5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의 방향을 선언하였다. 이는 문민정부의 정통성과 높아진 국가위상을 바탕으로 통일 및 대북정책을 적극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남북관계 진전과 성취를 위한 실천적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통일을 분단으로 귀결된 ‘미완의 광복’을 극복하여 ‘진정한 광복’을 완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족적 최대과제로 설정하였다. 즉, 통일국가는 민주와 번영으로 세계를 앞서가는 선진국가, 정신적 가치와 도

덕성이 존중되는 문화국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세계에 우뚝 선 일류국가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를 우리 손으로 창조하자는 민족적 비전을 제시하였다.

둘째,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천명하였다. 우리민족이 겪고 있는 분단의 고통과 비극을 극복하고 통일과 번영의 큰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평화와 협력’ 이 요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불안정’ 이 아니라 ‘안정’ 을, 북한의 ‘고립’ 이 아니라 ‘국제사회 참여 지원’ 을, ‘일방적 통일’ 이 아니라 점진적인 ‘합의 통일’ 을 추구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우리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여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셋째, 남북기본합의서의 조기 이행을 촉구하였다. 남북한이 이미 기본합의서 및 각종 합의문건을 통해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서로 교류·협력해 나가기로 세계와 민족앞에 약속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동시에 북한측의 약속위반으로 남북기본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는 남북이 합의한 기본정신에 바탕을 두고 남북관계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넷째, 남북간 평화와 협력정신을 실천에 옮기는 4자회담의 실천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4자회담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가 토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평화체제 구축문제의 논의가 필요하며, 군사적 신뢰문제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긴장완화 차원에서 남북경제협력 문제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태세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감상적 통일론이나 일방적 시혜론은 남북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실질적 대비노력이 필요함을 밝혔다. 아울러 통일조국을 이루기 위한 주요 과제로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지역간·계층간·세대간 통합을 강조하였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간 협력의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 식량난은 일시적 지원으로는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 협력을 강

조하였다. 둘째, 북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해결과 남북공동번영 추구를 위해 ‘민족발전 공동계획’을 남북대화를 통해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환기시켰다. 이는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의 대북 경제협력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셋째, 북한의 자세변화가 있는 경우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넷째, 북한에 대한 지원과 관련, 자원의 합리적 배분문제 제기 등 북한의 변화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북한동포를 적극적으로 돋되, 북한당국에 당연히 요구할 것은 요구한다는 입장의 표현이다.

제3절 통일정책 추진방향

정부는 통일이 인류의 보편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민족 전체의 삶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정립하였다.

그러나 국제적 차원의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반도에는 불신과 대결의 두터운 장벽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는 가운데 식량난 등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개혁과 개방을 거부한 채 시대착오적인 대남 전략을 고수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통일의 기본원칙과 한반도 현실을 감안하여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간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민족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 왔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의 대남 교란책동과 안보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4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전쟁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주도하였으며, 경수로 지원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 취임직후부터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 왔다. 남북관계개선과 인도적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이인모의 방북을 허가하였으며,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도 제의하였고 남북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단계로 끌어 올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이 체제붕괴의 위기감으로 인해 폐쇄정책과 대남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핵개발 의혹을 야기시켜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남북간 인적·물적교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남북간 협력의 접점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비록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제한되어 있지만 주요한 계기마다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여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정부와民間차원의 식량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편으로는 북한 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인권보호와 정착지원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였다.

한편 정부는 통일환경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 탈냉전과 함께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제사회가 핵비확산체제 강화를 추구하는 때에 부각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직접 개입하게 되었고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자 국제기구들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체제의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변국가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는 추세에 배타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국제적 틀 속에서 진행되는 한반도 문제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남북간 접촉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일본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남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만큼 남북당사자가 신뢰를 가지고 직접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용이한 길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북한에 대하여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며,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대북지원을 대한적십자사가 주도하도록 하는 등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임과 동시에 대결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물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며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에 단호히 대처하여 이의 포기를 유도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양면성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 대응은 상호 보완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통일정책은 평화와 협력이라는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 4 장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

제1절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 제시

제2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추진

제1절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 제시

우리가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유지시켜 나가는 일이다. 평화 없이는 통일된 조국은 물론 민족의 장래도 기약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여 평화통일을 실현시키는 것을 통일정책의 기조로 삼아왔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40여년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최종적인 평화상태가 달성될 때까지 무력행동을 중지하기 위한 순수한 군사적 차원의 조치로서, 이는 한반도가 불안정한 평화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남과 북은 지난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사측이 군사정전위원회의 유엔사측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한 것을 구실로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1993년 4월 중립국감독위원회 체코 대표단을, 1995년 2월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마저 강제로 축출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 판문점 중

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을 폐쇄하고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의 출입을 제한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4년 4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현재의 정전협정은 이미 빈 종이장이 되었다”고 강변하면서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제의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일방적으로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12월에는 중국측으로 하여금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단을 철수토록 하는 등 정전체제의 무실화를 기도하였다.

북한이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정전협정을 무실화하여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정전협정의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구상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정전체제 무실화 책동에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원칙’을 천명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반드시 남북 당사자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책임은 다름아닌 남북한 당사자에게 있다. 만약 남과 북 어느 한쪽이라도 평화를 지킬 의사가 없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남북 당사자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이며, 그래야만 실효성 있는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둘째,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간의 합의사항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에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서로가 상대방의 평화의지를 불신하고 반목한다면 평화는 결코 이룩될 수 없다. 또한 신뢰는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키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쌍방 총리를 대표로 하는 책임있는 남북당국간의 회담을 통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합의하고 그 이행·실천을 민족과 세계앞에 엄숙히 약속한 통일의 대장전이다. 또한 이들 합의속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실천과제들이 담겨져 있다. 어떤 면에

서는 남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성실히 실천해 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저절로 구축될 수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이 있을 때 그 실효성이 더욱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역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공동노력이 보편화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따라서 주변국가들은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남북한이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관련국가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여 남북당사자간의 노력을 촉진하고 지지하며 보장하는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하여 평화의 참뜻을 분명히 하고 이의 실천을 촉구하였다. 4대원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는 무력포기를 의미한다. 북한은 민족적 범죄행위인 무력도발은 물론 대남 무력 적화노선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둘째, 평화는 상호존중을 전제로 한다. 남과 북은 상호 실체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진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

셋째, 평화는 신뢰구축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 합의사항이 이행되어야 하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상황에 맞는 합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평화는 상호협력위에서 이루어진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동족인 우리뿐이라는 것을 북한당국은 받아들여야 한다.

제2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추진

1. 제의 배경과 의의

가. 배 경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파기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도발을 자행하였다. 특히 1996년 2월에는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명의로 당장 미·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중간조치로서 ‘잠정협정’을 체결하자고 미국측에 제의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4월에도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명의로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유지·관리임무 포기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진입하는 북측 차량 및 인원의 식별표지 부착 중지를 선언하였다. 그 이후에도 북한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무장병력을 투입하여 무력시위를 벌이고, 군사분계선과 동·서해상에서의 침범을 계속하는 등 정전체제의 근본을 파기함으로써 한반도 불안정 상황을 심화시켰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파기행위 및 대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이 대화에 응해 올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다. 그 결과, 북한의 입장과 현 남북관계 상황 및 주변정세를 고려할 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과 정전협정 서명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4월 16일 제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양국정상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결과를 한·미 공동발표문을 통해 천명하면서 4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던 것이다.

나. 의의

정부는 4자회담을 제의하면서 새로운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한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미-북한간 별도협상은 배제하기로 한 한·미 정상간의 합의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남북한 당사자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다.

공동발표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4자회담에서는 평화문제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협상을 하고 미국과 중국이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즉, 남북한, 미·중 4자가 동시에 참석하지만 실질적인 협의는 남북한 양자간 회담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미국과 중국은 회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4자회담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만,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와 신뢰구축 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4자회담 제의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평화체제 구축문제 외에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도 함께 토의할 수 있다는 ‘열린 협의의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확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4자회담 제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평화체제 수립의 기본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4자회담 제의는 한반도의 역학관계가 근원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21세기 한반도 질서를 내다보며 우리 주도로 취한 역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4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보장 장치가 마련되면 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광범한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식량난 등 북한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북 지원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은 북한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한반도 평화체제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자회담에서 남북간에 협의한 결과를 미국과 중국이 국제적으로 보장하게 됨으로써 실효성 있는 평화보장 장치를 구축하게 되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정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정부는 4자회담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하에 한반도 평화보장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동시에,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는 현 정전협정을 준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다.

2. 4자회담 성립경과

가. 북한의 공동설명회 요구 및 잠수함 침투사건 사과

4자회담 제의직후 북한은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채 ‘검토중’ 이란

반응을 보이다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을 상대로 4자회담 제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설명요구에 대하여 4자회담이 한·미 양국의 공동제의인 만큼 한·미가 공동으로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자 북한측은 “미국 대통령이 4자회담을 제기하여 왔으므로 이 제안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미국에게 요구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남측이 설명회에 참여하려는 것은 상식이하의 행동이다”라고 강변하기도 하였다. 한편, 그 즈음 극심한 식량난에 처하게 된 북한측은 미국에 대해 공동설명회의 참여를 시사하며 식량지원이라는 반대급부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북한이 4자회담과 식량지원을 연계하는 데 반대하며, 4자회담 수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강조했다(1996. 7.20, 미 국무부 대변인).

한편,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의 식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4자회담이 시작되면 평화체제구축 문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와 함께 긴장완화 조치의 차원에서 북한의 농업생산성 제고, 수해 농지의 복구, 나진-선봉지구 투자, 남북교역의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음을 밝혔다(1996. 8.15, 광복절 경축사).

설명회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절충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강릉 해상에 잠수함을 침투시켜(1996.9.18) 군사적 긴장상태를 고조시켰다.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자 우리의 대북 경각심을 다시 환기시킨 사건이었다.

우리정부와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북한의 도발행위에 단호히 대처했으며 평화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당초 북한은 명백한 물증 앞에서도 ‘통상적인 훈련중 좌초한 사고’ 등 억지주장을 하면서 우리의 대응을 비난해 왔으나 우리가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에 단호한 자세를 보이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이 고조되자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의 과거 행적이나 태도로 볼 때 북한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은 특이한 일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단결과 단호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평화체제의 수립이 시급한 과제임이 더욱 부각되었다.

나. 공동설명회 개최

북한은 잠수함 침투에 대한 사과성명 발표와 함께 4자회담 공동설명회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97년 1월 20일 한·미 당국자들은 서울에서 4자회담 공동설명회 개최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설명회를 1997년 1월 29일 뉴욕에서 개최, 한국어를 공용어로 하여 영어통역을 실시, 한국측 수석대표는 송영식 외무부 제1차관보, 미국측 수석대표는 카트만 국무부 부차관보” 등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4자회담 공동설명회는 북한측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최초예정일에서 두 차례나 연기되다가 1997년 3월 5일 뉴욕 힐튼호텔에서 비로소 개최 되게 되었다.

이 설명회에 우리측은 송영식 외무부 제1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유명환 북미국장, 권종락 대통령비서실 외교비서관, 이봉조 통일원 제1정책관이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북한측에서는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을 대표단장으로, 이근 외교부 미주국 부국장, 한성열 주유엔 대표부 공사, 박명국 외교부 미주국 과장이 대표로 참가하였다.

한편, 미국측에서는 찰스 카트만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대리를 수석 대표로 하여, 마크 민튼 한국과장, 잭 프리차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주담당 보좌관, 토마스 하비 국방부 한국담당관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비록 4자회담 ‘설명회’라는 형식이기는 하였지만, 남북한과 미국의 당국자들이 공식적으로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분단후 처음이었다. 4자회담 설명회에서는 먼저 각국 수석대표들의 기조발언이 있었으며, 이어서 4자회담 제의에 관한 한·미 양측의 설명과 북한측 질문에 대한 한·미 양측의 답변순으로 진행되었다.

우리측 송영식 수석대표는 먼저 1996년 4월 16일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대통령이 4자회담 개최를 공동으로 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감안할 때 항구적인 평화체제는 남북한 주도로 이루

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1996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밝힌 바 있는 대북경협과 지원조치의 기본방향을 상기시키면서 4자회담에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식량문제를 포함한 남북경협 추진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북측이 구체적인 제의를 해올 경우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4자회담의 실무절차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공동설명회 종료후 가급적 조속히 4자회담 본회담을 상호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것과 회담대표는 장관급을 수석대표로 하고 차관급을 교체수석대표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회담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와 「남북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문제」를 양대 의제로 하되 필요시 의제를 세분화하여 토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미측의 카트만 수석대표는 금번 설명회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가져올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고, 이러한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이 「남북기본합의서」와 「미·북 제네바 합의문」을 기초로 조속히 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미측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는 미·북한이 별도로 협상할 문제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직접 당사자인 남북간에 논의되어야 하며 바로 4자회담은 이러한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나아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전협정의 서명당사국인 중국의 참여가 매우 긴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 남북간에 이미 불가침 합의가 있으므로, 미·북한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였다. 북한측 김계관 단장은 한국과 미국측의 설명내용에 대하여 “돌아가서 신중히 품을 들여 연구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다소간 긍정적인 여운을 남겼다. 이날 접촉에서 김계관은 한중관계와 미북관계의 차이로 북한이 동등한 지위로 4자회담에 참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다. 공동설명회 후속협의

공동설명회가 개최된 지 한달여 후 북한측의 요청에 따라 1997년 4월 16일 4자회담설명회 후속협의가 뉴욕 유엔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협의에 우리측은 송영식 수석대표, 유명환, 권종락, 이봉조 그리고 이수혁 주미대사관 정무참사관이, 북측은 김계관 대표 단장 외 4명, 미국측은 카트만 수석대표 외 4명이 각각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 협의에서 우리측은 4자회담 예비회담을 5월 말에, 4자회담 본회담을 6월 말에 개최하자고 제의했으나, 북한측은 4자회담 개최는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회의 개최일자를 정하는 데는 반대하였다. 북한측은 오히려 4자회담의 개최를 전후하여 대규모 식량지원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4자회담 개최 이전에 식량지원은 불가하며 4자회담이 시작되면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차원에서 식량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16일 전체회의 이후 3차례의 실무접촉과 1차례의 비공식 수석대표 접촉을 가졌으나,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의한 예비회담과 본회담 개최 시기를 정하는 문제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4자회담 개최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대북 제재조치 완화 및 적대정책 포기 등을 요구하고,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진행하다가 적절한 단계에 가서 중국을 참여시키는 ‘3+1’ 형식의 회담을 제의함으로써 4자회담 개최에 또 다른 난관을 조성했다.

결국, 북한측이 ‘선 대북식량지원 보장, 후 4자회담 예비회담 개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공동설명회 후속협의는 별 진전없이 4월 21일 종료되었다. 그러나 남·북·미 3자는 외교채널을 통해 실무접촉은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라. 4자회담 예비회담 개최

(1) 예비회담 개최 합의

공동설명회 후속협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남·북·미 3자 실무대표들은 뉴욕에서 접촉 및 전화협의를 갖고 4자회담

개최와 관련된 실무문제들을 논의하였다.

이 실무접촉에서 북한측은 4자회담 예비회담의 개최 등에 동의하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에 대해 한·미가 보장해 줄 것을 다시금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한·미는 4자회담 참석을 조건으로 하는 식량제공의 사전보장은 불가하며, 다만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인도적 긴급 구호 성격의 식량지원은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되,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은 4자회담 테두리내에서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북한측에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북한측에게 4자회담을 수락하는 것만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식량부족 등 북한이 처한 경제난을 극복하는 길임을 꾸준히 설득함으로써 북한측은 마침내 4자회담 예비회담 개최에 호응해 나오게 되었다.

1997년 6월 30일 뉴욕 팔레스호텔에서, 공동설명회와 그 후속협의에 참가했던 남북한 및 미국 대표단은 함께 모여(차관보급 3자협의) 그동안 3자 실무대표간 협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최종 확인하고, 중국을 포함하는 4자회담 예비회담을 1997년 8월 5일 뉴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이를 공동 발표하였다.

이로써 1996년 4월 16일 한·미 대통령이 제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공식 제의한 이래 1년 2개월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4자회담 과정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4자회담의 목적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4자회담 예비회담 개최에 대한 합의는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이후 전쟁을 일시 중단한 상태로 44년간 불안하게 유지되어 오던 한반도 평화문제가 이제 본격적인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지게 됨을 의미한다.

정부는 북한이 4자회담을 수락하고 예비회담 개최에 합의해 나온 것을 환영하면서 4자회담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4자회담의 진전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달성을 물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2) 제1차 예비회담

남북한 및 미·중이 참가하는 4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이 1997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뉴욕, 콜럼비아대학교 국제 및 공공정책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 우리측에서는 송영식 외무부 제1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유명환 외무부 북미국장, 권종락 대통령비서실 외교비서관, 이봉조 통일원 제1정책관, 유진규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차장, 이수혁 주미한국대사관 정무참사관, 전옥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 7명이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북한측에서는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을 대표단장으로, 이근 주유엔북한대표부 부대사, 장장천 외교부 미주국 부국장, 박명국 외교부 미주국 과장, 김명길 주유엔 북한대표부 참사관 등 5명이 대표로 참가하였다.

미국측에서는 찰스 카트만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대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마크 민튼 국무부 한국과장, 잭 프리차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주담당보좌관, 토마스 하비 국방부 한국담당관, 에릭 존 국무부 한국과 북한담당관, 로렌스 로빈슨 주한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등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한편, 중국측에서는 천지엔(陳建)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넝푸쿠이(寧賦魁)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 티엔바오전(田寶珍) 외교부 한국과장, 티엔췬옌(田春燕) 북미·대양주국 1등서기관, 양시위(楊希雨) 주미 중국대사관 1등서기관, 싱하이밍(邢海明) 외교부 한국과 2등서기관 등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제1차 예비회담에서는 4자회담 본회담 개최 시기, 장소, 대표 수준, 소위원회 설치, 회의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잠정합의가 도출되었으나 가장 큰 관심사항인 본회담 의제문제는 참가국간 입장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음 예비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본회담 개최와 관련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본회담 개최시기는 예비회담 종료후 대략 6주 이내에 개최하기로 합의 한다.
- 대표수준은 4자회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경우 외무장관들이 참석토록 하고, 여타 본회담에는 고위관리가 대리 참석토록 한다.
- 개최장소는 스위스 제네바로 한다.
-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등을 본회담에서 협의하여 설치한다.
- 회담 기간은 사전에 합의하여 정한다.

이같은 실무절차문제에 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담 의제문제에 관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 등 포괄적인 양대 의제로 하자는 우리측 입장과,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미군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세부의제로 포함하자는 북한측 입장이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차기 예비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북한측은 제1차 4자회담 예비회담 기간중 개최된 남북한 및 미국 3자 수석대표단 회의에서 4자회담 개최 이전에 대규모 식량지원 보장 등을 계속 요구하였다.

(3) 제2차 예비회담

제1차 예비회담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난 후 장승길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와 그의 형인 장승호 파리주재 무역대표부 참사관 일가족이 미국으로 망명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측은 이들 외교관 일가의 망명에 대해 미국측의 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이들이 공금을 횡령한 범죄자이므로 미국측은 이들을 북한측에 즉각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승길 망명사건의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희망하였다.

한·미는 4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이 당초 합의된 날짜(9월 15일로 시작되는 주)에 예정대로 열려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제2차 예비회담 날짜를 9월 18일, 19일 양일간으로 하고 필요시 9월 22일에 추가회의를 가질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기로 하였다.

9월 10일 북경에서 개최된 미·북 협의에서 북한측은 장승길 망명사건에도 불구하고 4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을 9월 18일에 개최하는 데 동의함에 따라 이를 중국에 통보, 4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이 9월 18일 뉴욕 콜럼비아대학에서 열리게 되었다.

제2차 예비회담의 대표는 지난 1차 예비회담의 대표들이 대부분 그대로 참석하였으며, 교체된 대표는 중국대표단중 티엔바오전(田寶珍) 대신에 화빙(關華兵) 신임 한국과장, 싱하이밍(邢海明) 대신에 장천강(張承剛) 한국과 3등서기관이, 미국대표단중 로빈슨 대신에 로버트 칼린 국무부 정보조사국 부과장이었다.

제1차 예비회담에서 본회담 개최와 관련된 실무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합의되었으므로 제2차 예비회담에서는 본회담의 의제문제만 해결되면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예비회담의 첫날회의에서 북한측은 1차회담시 제의한 2개의 제(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으로부터의 미군철수, 미·북 평화협정 체결) 외에 ‘남과 북이 한반도 외부로부터 군사장비 도입 금지’를 본회담 의제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의제문제 토의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우리측은 각자가 세부적인 의제를 제시하기 시작하면 의제만 가지고도 회담이 무한정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무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회담에서는 본회담의 의제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측 입장을 고려한 대안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긴장완화에 관한 제반 문제’라는 단일의제를 제시하고 북한측의 수락을 촉구하였다.

한편, 미국측은 우리측의 의제 제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북한이 내놓은 세부 의제는 본회담 개최 이전부터 어떤 결과를 예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측도 4자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희망하고 있는 공통점에서 출발하여 각측의 관심사항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의제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채택하자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의제문제에 관한 의견차이는 단순한 의제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라고 주장하고 북측으로서는 현단계에서 의제문제에 신축성을 보일 수 없다고 고집하였다.

이처럼 북한측의 입장이 완고함에 따라 4자대표단은 미국측의 제의에 따라 1일회의를 종료하고 9월19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였으며, 9월 18일 오후에는 북한측의 요구에 따라 남북한 및 미국간 3자협의를 개최하였다.

3자협의에서 북한측은 미국과의 적대관계와 남북간의 상호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4자회담을 개최하는 데 따른 북한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본회담 개최이전에 식량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데 성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아울러 북한측은 식량지원 보장 등이 4자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부득이 4자회담과 연계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그동안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을 꾸준히 진행 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분배 투명성이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10월 말경 대북 식량실태조사단을 파견코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측은 이번 예비회담에서 본회담 개최문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 할 경우 미국의 정치적 능력에 영향을 미쳐 앞으로의 대북지원이 매우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이번 예비회담에서 의제 합의가 안될 경우 더 이상의 예비회담 개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의 식량난은 사회주의 주체농법의 실패, 군사비에 대한 과다 지출 등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4자회담을 개최하여, 남북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범위내에서 대북지원을 논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3자협의에서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9월 19일 남북한 및 미국·중국이 참가하는 제2차 예비회담의 이틀째 회의가 속개되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북한측이 자기측 의제와 4자회담 개최전 식량보장 요구를 계속 고집함에 따라 아무런 결실없이 끝나고 말았다.

(4) 제3차 예비회담

제2차 예비회담이 아무런 결실없이 종료됨에 따라 4자회담은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가까운 시일내 개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1997년 10월 21일 미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최된 한 세미나에 참석했던 마크 민튼 미 국무부 한국과장과 이근 주유엔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비공식 접촉을 갖고 4자회담 개최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 접촉에서 북측은 4자회담 예비회담과 본회담 개최에 호응할 뜻을 비쳤고, 이어서 뉴욕에서 개최된 4자 실무접촉에서 북한측은 그동안 주장해 오던 세부 의제 대신에 의제를 일반화하는 데 융통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따라 제3차 예비회담을 11월 21일 뉴욕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하고 이를 각자 본국에 보고하여 승인받음에 따라 제3차 예비회담이 11월 21일 뉴욕 콜럼비아대학에서 개최되었다. 3차 예비회담에 참가한 대표단은 지난 2차 예비회담과 같았다.

제3차 예비회담에서 북한측은 우리측이 지난 2차 예비회담에서 제시했던 포괄적 단일 의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한 제반 문제(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ssues concerning tension reduction there)’로 하는 데 동의하였고 중국측과 미국측도 이를 지지함으로써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의제문제가 타결되었으며, 4국 수석대표들은 본회담을 12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시하는 데 합의하였다.

3. 제1차 4자회담

남북한 및 미국·중국은 제3차 예비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1997년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차 4자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이시영 주프랑스대사가 수석대표로, 문무홍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장이 차석대표로, 유명한 외무부 북미국장, 유진규 국방부 군비통제관, 권종락 대통령비서실 외교비서관, 이수혁 주미대사관 정무참사관, 이봉조 통일원 제1정책관, 전옥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 8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북한측에서는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이 대표단장으로, 이근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부단장으로, 박석균 외교부 부국장, 김경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사, 박명국 외교부 미주국 과장, 정동학 외교부직원 등이 대표로 참가하였다.

미국측은 스탠리 로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고, 찰스 카트만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차석대표로 하여, 윌리엄 라이트 국방부 아·태담당 과장, 마이클 모슬리 합참준장, 잭 프리차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주담당보좌관, 노옴 울프 군비통제·군축처 비확산 및 지역군비통제담당 차장보 대리, 마크 민튼 국무부 한국과장 등이 대표로 참가하였다.

중국측은 향자쉬엔(唐家璇) 외교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싸주캉(沙祖康) 주제네바 대표부대사를 차석대표로 하여, 넝푸쿠이(寧賦魁)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 천밍밍(陳明明) 외교부 북미·대양주국 참사관, 화빙(關華兵) 외교부 아주국 한국과장, 꾸즈핑(顧子平) 외교부 신문국 과장, 티엔쉬에쥔(田學軍) 외교부 부부장 비서관, 양시위(楊希雨) 주미 중국대사관 1등서기관

등이 대표로 참가하였다.

제1차 4자회담은 미국이 의장국으로서 회의의 진행을 맡았다.

우리측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남북의 주도와 관련국의 뒷받침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4자회담 제의의 취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하였다. 우리측은 나아가 ‘남북당사자 원칙 존중,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 강구, 남북기본합의서와 군사정전 협정 등 기존합의의 준수·이행, 평화체제 구축 및 긴장완화 조치의 상호 주의에 바탕한 점진적 협의·이행, 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 구성’ 등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5개항의 기본틀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4자회담을 미·북대화와 남북대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대화의 연단으로 보고 참여하는 용단을 내렸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보장 체계 수립과 긴장완화 및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미·북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문제 논의가 우선하여야 한다는 등 기준입장을 계속 고수하였다.

미국은 4자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 그리고 4자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긴장완화 문제와 관련, 이미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상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북측의 주장에 대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북한의 안보 위협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반박하였다.

한편, 중국은 4자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간의 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하여 4자회담에서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이틀간에 걸친 제1차 4자회담에서는 회담의 틀을 갖추기 위해 분과위 구성을 먼저하자는 한·미측 입장과 본회담에서의 의제를 세분화하자는 북한 측의 입장이 맞섰으나, 4자 모두가 제2차 4자회담준비를 위한 특별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차기 의장국 순서를 정하는 성과를 이룸으로써 그 결과를 의장성명(1997.12.10)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다음은 12월 10일 발표된 의장 성명의 내용이다.

이로써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정부는 실질 당사자인 남북한과 관련 당사자인 미·중의 참여 하에 4자회담 본연의 정신과 목표를 견지하며 평화정착 과정을 밟아나갈

방침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에는 남북간의 신뢰구축과 교류협력 문제를 비롯하여 복잡한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4자회담을 차분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5장 북한 핵문제와 경수로 지원

제1절 북한 핵문제 해결노력과 경수로 지원결정

제2절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제3절 향후 과제

제1절 북한 핵문제 해결노력과 경수로 지원결정

1. 북한 핵문제의 대두

북한은 소련의 권유로 1985년 12월에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했지만, 18개월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를 6년동안이나 이행하지 않았다.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1992년 1월 북한이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이후 동 협정을 근거로 실시된 사찰결과와 북한이 사전에 동 기구에 신고한 내용간에 불일치가 발생한 데서 비롯된다.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시설에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이라는 핵물질을 한차례 소규모 추출했다고 신고했으나(증92.5) IAEA의 사찰결과 여러 번에 걸쳐 보다 많은 분량이 추출된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1993.2).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AEA는 규정에 따라 특별사찰을 요구하였고, 이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NPT 탈퇴를 선언(1993.3)하여 국제적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핵시설은 구소련의 핵기술에 기반을 두고 자체 개발한 가스냉각 방식의 원자로로 흑연감속재와 천연우라늄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

성과 경제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비교적 쉽게 추출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북한은 1993년 당시 영변에 5MWe급 실험용 원자로 1기를 가동하고 있었으며, 영변과 대천에 각각 50MWe급, 200MWe급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중에 있었다. 또한 원자로에서 인출한 사용후 연료봉을 재처리하는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을 운영하면서 이 시설을 확대하는 공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방사화학실험실은 IAEA의 사찰시(1992.5~1993.2) 현 북한의 원자력 산업 구조상 필요 이상으로 대형인 재처리시설임이 밝혀졌고 시료채취 및 분석결과 ‘불일치 문제’가 발생된 곳이기도 하다.

더구나 북한은 1992년 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핵재처리시설 및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재처리시설을 보유·운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 서명을 미뤄왔던 점, IAEA의 사찰결과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IAEA의 특별사찰 요구를 강력하게 거부한 점 등이 북한이 핵무기용 물질을 추출하고 숨겨 왔다는 국제사회의 의혹을 증폭시켰다.

2. 핵협상의 교착과 한반도 긴장고조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핵활동에 대한 과거, 현재 및 미래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 북한의 NPT복귀, 특별사찰을 포함한 IAEA 핵안전조치의 전면 적용, 남북한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천을 핵문제 해결의 목표와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외교적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초강경자세로 일관하자 IAEA는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의(1993.3.31)하였고, 결국 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안보리가 나서게 되었다. 유엔 안보리는 의장성명(1993.4.8) 및 결의안 채택(825호, 1993.5.11)을 통해 북한의 NPT 복귀와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요구하였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해결노력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초하여 핵비확산체제를 주도해 온 미국이 북한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미국과 북한은 갈루치 국무부 차관보와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미·북 1단계 협상(1993.6.2~6.11, 뉴욕)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

에서 양국은 북한이 NPT 탈퇴를 잠정 유보하고 향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Joint Statement)을 채택(1993. 6.11)하였다. 이어 미·북 2단계 협상(1993.7.14~7.19, 제네바)에서 양측은 핵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경수로 지원문제를 논의하였으며, 'IAEA와의 협의' 및 '남북대화'를 빠른 시일내에 시작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 IAEA와의 협의에서 NPT 탈퇴 유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IAEA의 완전한 사찰권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5MWe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에 대한 IAEA의 접근을 거부하였다. 또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도 북한은 '핵전쟁연습 중지'와 '국제공조체제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다가 제4차 실무대표접촉을 하루 앞두고 일방적인 통보로(1993. 11.3)로 실무접촉을 중단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1993년 11월 정상회담을 통해, 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확인하면서 일단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 및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그동안 중단되었던 미·북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북 양측은 실무접촉을 갖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4개 동시조치'에 합의(1993.12.29)하였다. 4개 동시조치는 ①안전조치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IAEA 사찰 개시, ②특사교환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 재개, ③한국의 1994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④미·북한 제3단계 접촉을 1994년 3월 21일 제네바에서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1994년 3월 방북한 IAEA 사찰단에 대하여 북한은 일부 핵심시설에 대한 사찰활동을 거부하였고, 남북간 재개된 특사교환 실무접촉도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제8차 실무접촉, 1994. 3.19)으로 결렬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은 다시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IAEA는 특별이사회를 개최(1994.3.21)하여 북한의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였고, 유엔 안보리도 북한에 대해 IAEA 사찰 수락, 남북대화 재개 등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발표(1994.3.31)하였다.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이후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북한도 NPT 완전 탈퇴 위협 등 강경 대응함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

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1994년 5월 5MWe 원자로의 사용후 연료봉 인출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였다. 이에 대해 IAEA는 동 연료봉의 인출시 북한의 과거 핵활동 확인이 가능하도록 일부 사용후 연료봉을 별도 선정, 보관하여 추후 계측가능성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북한측에 요구하였고, 유엔 안보리도 의장성명(1994.5.31)을 통하여 이를 재차 촉구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IAEA는 의료분야를 제외한 일체의 대북한 핵관련 기술지원을 중지하는 대북한 제재결의를 채택(1994.6.10)하는 한편,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5MWe 원자로의 사용후 연료봉에 대한 추후 계측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1994.6.13)하였다. 또한 한·미·일 3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대북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북한은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IAEA를 탈퇴한다고 선언(1994.6.13)하면서 유엔제재가 취해질 경우 이를 곧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3. 제네바협상 타결과 경수로 지원결정

가.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 타결

유엔 안보리 제재가 추진되고 한반도의 정세가 점차 급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국면 전환과 군사적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1994년 6월 13일~18일간 남북한을 방문하였다. 카터 대통령의 방북기간중 김일성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대화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예비접촉이 있었으며, 미국은 미·북 대화의 기초로 ①5MWe 원자로 연료의 재장전 금지, ②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 금지, ③IAEA 안전조치의 계속성 유지를 제시(1994. 6.16)하였고, 북한이 이를 공식 확인(1994.6.24)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은 중단되었고, 제3단계 미·북회담이 제네바에서 개최(1994.7.8)되게 되었다. 그러나 미·북 제네바회담은 개최 하루만인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연기되었으며, 아울러 예비접촉을 통해 준비해

오던 남북 정상회담도 무기 연기되었다.

남북 정상회담이 비록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구상 아래 “북한이 핵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북한의 평화적 에너지 개발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 9월 23일부터 속개된 제3단계 미·북 협상이 급진전하여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0월 21일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본구도인 「제네바 기본합의」를 채택·서명하게 되었다. 제네바 미·북 회담에서 채택된 합의문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과 기본합의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북한이 공개하기를 꺼리는 부분이 포함된 비공개합의문(Confidential Minute) 두 가지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네바 기본합의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흑연감속로 등 핵활동 동결 및 추후 해체조치는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핵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전세계적인 핵비확산체제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과거 핵개발 활동이 규명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어 핵무기 개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특별사찰을 요구받았던 의혹시설에 대한 사찰이 미래로 미루어짐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인한 한반도 불안정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미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고 과거 핵활동의 투명성을 확인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도 핵무기 비확산 차원에서 북한의 과거 핵활동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할 것이다.

나. 경수로 지원원칙과 준비

1994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 핵활동의 투명성이 보

장되면 경수로 건설지원 등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였으며, 아울러 북한에 대한 경수로 건설지원을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남북이 함께 설계하는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첫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한·미·일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한 노력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목표를 견지해 왔다.

첫째, 경수로 지원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표준형 원자로가 제공되는 데 어떠한 장애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의 비용부담에 상응하게 국제컨소시엄 구성은 물론 경수로사업의 설계·제작·시공·사업관리 등 제반분야에서 우리의 중심적 역할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경수로 지원과정은 반드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은 궁극적으로 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촉진시키고 가시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경수로 지원은 제네바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경수로 지원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동결조치와 함께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이 이행되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북 경수로지원에서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참여속에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종합적인 대북정책의 구도하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정부는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착실히 진행시켜 왔으며 1995년 1월 23일에는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에 있어 우리의 중심적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통일원에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을 설치하였다.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단장과 통일원·재정경제원·외무부·통상산업부·과학기술처 등 관계부처와 한국전력공사·한국원자력연구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은 경수로사업 추진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

행하고, 또 동 사업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토록 유도하며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나가고 있다.

제2절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제네바 합의 직후부터 한·미·일간에는 대북 경수로건설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가 수시로 개최되었다. 그 결과 한·미·일 3국의 주도하에 북한에 건설될 경수로의 공급과 재원조달을 담당할 국제기구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가 1995년 3월 9일 설립되었다.

KEDO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집행이사회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무국 및 모든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되는 총회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이사회는 종래 원회원국인 한·미·일 각 1인씩 3인의 집행이사로 구성되어 전원 합의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7년 9월 19일 EU가 집행이사국 자격으로 KEDO에 정식 가입하게 됨에 따라 현재는 한·미·일 및 EU의 4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집행이사회의 의사결정도 전원합의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수결로 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이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KEDO의 집행이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사무국은 재원조달, 계약의 승인·작성·집행을 포함한 기구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담당하는데 사무총장(1인) 및 사무차장(2인)은 원회원국 국민을 채용하도록 되어있다. KEDO의 운영경비는 한·미·일 3국이 1/3씩 분담하고 있다.

현재 KEDO에는 원회원국인 한·미·일과 집행이사국으로 새로이 참여한 EU외에도 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폴란드 등 8개국이 일반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이외에 영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태국 등 여러 국가들이 KEDO에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KEDO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표명해 오고 있다. KEDO는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북한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 KEDO-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타결

가. 쿠알라룸푸르 합의

제네바 기본합의 서명식(1994.10.21)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협정을 6개월내에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미·북 전문가회의가 1994년 11월부터 1995년 4월까지 5차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북한에 공급될 경수로 노형과 경수로 제공에 있어서 중심역할(주계약자) 문제가 핵심쟁점이 되었다. 북한은 한국표준형 원전의 대북공급이 북한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라고 비난하고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강력히 거부하였다.

제네바 기본합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북한은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협상결렬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핵동결 해제를 위협하였으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미·북 준고위급 회담(1995. 5.19~6.13)에서 북한이 현실적으로 한국표준형 원전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수로 노형 선정과 주계약자 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쿠알라룸푸르 합의(1995.6.13)에서 경수로 노형과 주계약자를 KEDO가 선정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이미 한국표준형 원전을 북한에 공급키로 규정한 KEDO 설립협정(1995.3.9)에 비추어 북한은 한국기업(주계약자)이 건설하는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제공받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며, 이후 우리가 KEDO 대표단의 일원으로 대북협상에 직접 나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편 북한과 협상을 벌였던 미국은 공동발표에 앞서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형식으로,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는 한국표준형으로서 참조발전소는 울진 3, 4호기가 될 것이며, 한국기업이 주계약자로 설계·제작·시공 및 사업관리 등 경수로사업 전체를 책임질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쿠알라룸푸르 합의 발표 당일, KEDO는 서울에서 집행이사회를 개최하여 동 합의가 경수로사업 이행의 기본원칙인 한국표준형 경수로의 제

공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주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시작할 것을 결정하였다.

나. 경수로 공급협정의 타결

쿠알라룸푸르 합의에 따라 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KEDO-북한간 회담이 1995년 9월 11일부터 시작되었다. KEDO측 대표에는 최영진 차장 등 KEDO 직원외에 우리 정부대표로 경수로기획단 관계자가 포함되어 남북한 당국의 대표가 처음으로 협상 자리에 마주앉게 되었으며,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원칙에 따라 공급협상을 사실상 우리가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고위급 회담과 전문가 회담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 진행된 협상 결과 마침내 1995년 12월 15일 우리측 입장을 대부분 관철한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게 되었다.

북한은 한국표준형 원전공급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 문제를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경제적이고 실리적인 태도를 보였다. 협상의 막바지까지 북한은 송·배전시설, 핵연료 성형 공장, 항만·부두 개선 등의 추가 공급과 흑연감속로에 대한 기투자분 탕감 등 불합리한 요구를 주장하였으나, 통상적인 원전 건설 관례와 울진 3, 4호기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우리측의 확고한 원칙에 따라 결국 북한이 이를 철회함으로써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공급협정의 체결은 북한의 핵활동 동결 및 해체 등 제네바 기본합의라는 미·북간의 정치적 약속을 국제법적인 조약의 성격을 갖는 법적의무로 전환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통행·통신, 신변안전, 핵사고 책임부담 등 경수로 사업의 원활한 이행과 직결된 사항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10여년간이 소요될 장기적인 경수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 한전의 주계약자 지정

KEDO-북한간 체결된 경수로 공급협정에서 KEDO는 경수로사업을 수행할 주계약자를 선정하며 이 주계약자와 상업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쿠알라룸푸르 합의 당일(1995.6.13) 서울에서 개최된 KEDO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주계약자 지정문제를 협의하여 오던

KEDO와 한국전력공사는 1996년 3월 20일 「KEDO-한전간 주계약자 지정 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한전이 일괄도급방식으로 대북 경수로 공급사업을 전반적으로 수행해 나갈 주계약자로 공식 지정되었다.

한편 우리 정부는 1996년 7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전을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남북 협력사업자로 승인하였으며, 1997년 8월에는 4,500만달러 규모의 초기 부지준비 공사에 대한 협력사업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국내법적으로도 북한과 경수로 건설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3. KEDO-북한간 후속의정서 협상

가. 협상 경과

경수로 공급 협정에서 KEDO와 북한은 공급 협정의 세부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10여개의 후속의정서를 단계적으로 체결해 나가기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4월부터 뉴욕에서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와 「통행·통신 의정서」 협상이 개시되었다. 동 협상에는 한·미·일 3국 정부 대표 및 관계전문가가 KEDO측 대표로 참가하였고 북측에서는 외교부 및 원자력총국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의정서 협상(1996.4.8~5.22)에서는 국제기구인 KEDO의 영사보호 기능 수행 문제와 KEDO 계약자 인원에 대한 북한의 재판관할권 배제 및 체포·구금 금지 등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경수로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측 건설 인원들의 철저한 신변안전 보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 결과 KEDO 계약자 인원에 대한 광범위한 특권 및 면제를 규정한 영사보호의정서를 5월 22일 타결할 수 있었다.

통행·통신의정서 협상(1996.4.16~6.14)에서도 독자 위성통신망 구축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 타결이 지연되었으나 결국은 우리측 입장이 반영된 문안에 합의하고 6월 14일 가서명하게 되었다. 영사보호, 통행, 통신 등 3개의 정서는 1996년 7월 11일 뉴욕에서 KEDO와 북한이 정식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다.

부지 및 서비스 이용 의정서 협상이 북한 묘향산지역에서의 1차협상(1996.7.20~30)에 이어 뉴욕에서 2차협상(1996.8.22~9.26)이 재개되었다. 동 협상에서는 북한이 제공하는 노무 등에 대한 가격설정 문제로 협상이 상당 기간 공전되었으나, 1996년 9월 18일 발생한 강릉 앞바다에서의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결국 우리측 입장이 대부분 반영된 형태로 협상이 타결(1996.9.26)되었다. 그러나 정식서명은 우리측의 반대로 유보되어 오다가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시인·사과(1996.12.28)로 잠수함 국면이 해소된 후 1997년 1월 8일 뉴욕에서 서명·발효되었다.

또한 뉴욕에서 개최된 「미지급시 조치의정서」 협상(1997.3.18~5.2)에서 는 북한이 경수로 건설비용에 대해 상환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될 벌칙금(Penalty)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경수로 건설공사를 KEDO측이 지연할 경우 북한측이 입게 될 재정적 손실도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는 북한측의 주장에 따라 협상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북한측의 미지급시 벌칙금을 중심으로 하여 「미지급시 조치의정서」가 가서명(1997.5.2)된 후 1997년 6월 24일 정식으로 서명·발효되었다.

KEDO와 북한은 일곱번째 의정서인 「품질보장 및 보증의정서」 협상을 북한의 묘향산지역에서 개최(1997.11.4~11)하였으며 2차 후속협상을 12월 3일부터 뉴욕에서 재개하였다. 동 의정서는 경수로건설 과정에서 KEDO가 수행해야 할 품질보장 활동과 완공된 발전소의 성능보증 조건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4. 부지조사 실시

경수로건설 예정지인 북한의 함경남도 금호지역에 대한 부지조사가 1995년 8월 15일부터 1997년 11월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부지조사는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예비적 성격을 갖는 것이기는 하나 경수로 지원사업이 본격화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3차 부지조사 이후에는 한전이 사업전용역(Pre-Project Service)의 일환으로 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측 전문가가 부지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부지조사는 일차적으로 경수로건설 후보지가 발전소 부지로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발전소의 설계 및 건설의 인허가 취득을 위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게 된다. KEDO는 공급협정에서 북한과 합의한 부지선정기준에 경수로 예정부지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지조사를 실시하고 북한은 부지조사 결과에 따라 KEDO에 부지인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KEDO는 6차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략적인 부지조사보고서를 북한에 제출(1997.2)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북한의 금호지역이 원전건설 예정지로서 적합한 것으로 잠정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KEDO 측 부지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후 1997년 7월 21일에 부지인도증을 KEDO에 발급하였다. KEDO가 북한으로부터 정식으로 부지를 인수받음에 따라 동 일자로 KEDO가 경수로 부지내 모든 질서유지를 책임지게 됨으로써, 우리측 경수로 건설인력들이 안심하고 건설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지조사는 앞으로도 해양, 기상, 환경, 생태계 등 각 분야에 걸쳐 추가적인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5. 부지준비공사 착공

가. 부지준비공사 개요

경수로 공급협정과 기본적인 후속의정서가 타결되고, 경수로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부지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정부는 미·일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1997년중 부지준비공사 착공 방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작업을 추진하였다.

부지준비공사는 부지정지 및 근로자 숙소, 부지내 통행로 등 4,500만달러 정도의 규모로 약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경수로 건설공사는 발주자인 KEDO와 시공자인 한전간의 일괄도급계약(Turn-Key Contract)이 체결되고 난 후 시작되는 것이 정상적이나, KEDO 집행이사국간의 재원분담협상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본 공사 이전에 초기의 부지준비공사만이라도 우선 착공하기로 한 것이다.

나. KEDO-북한 실무협상

우리측의 많은 건설인력과 물자·장비가 경수로 부지 현장에 투입되는

부지준비공사가 실제로 착공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현실상 이에 수반되는 제반절차, 즉 입출국 및 해상수송절차, 공로이동절차, 세관통관절차 등 많은 부분들이 상호 합의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긴급환자 발생시 의료대책, 질서유지대책, 남북간 우편 및 통신연결 등도 선행되어야 한다. 영사보호·통행·통신 등 6개 의정서가 기 발효됨으로써 경수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골격은 마련되었으나 이들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분야별 합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97년 4월부터 KEDO와 북한간 3차(1차: 1997.4.9~4.15, 북한 신포·마전지역, 2차: 1997.5.31~6.7, 북한 묘향산지역, 3차: 1997.6.23~7.2, 뉴욕)에 걸친 전문가 실무협상이 열렸는데, 특히 이 협상에서는 남북한 전문가들이 직접 협상 당사자가 되어 제반문제들을 협의하였다. 1차 실무협상시 KEDO 대표단은 한국해양대학교의 실습선인 한나라호를 이용하여 강원도 동해항과 함경남도 양화항을 왕래하였는데, 한나라호를 이용한 방북은 통행의정서상의 해로를 이용한 첫사례로서, 대규모 우리측 인원의 해로를 통한 첫 방북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세차례의 협상결과 KEDO와 북한은 1997년 7월초 통신 및 우편연결, 입출국 및 해상수송절차, 통관 및 검역절차, 환자의 치료, 후송대책, 북한의 노동력과 물자이용 조건 및 가격 등 19개 분야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19개 분야 합의서상의 제반 절차 규정은 향후 증가하게 될 남북교류협력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부지준비공사 착공

KEDO-북한간 실무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부지준비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 되었다. 먼저 기 합의된 바지선 해로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우리측의 바지선 시험운항(1997.7.15~20)에 뒤이어 선박운항이 있었고, 1997년 7월 24일부터 경수로 사업부지와 남북간의 우편물 서비스가 개시되었으며, 동년 7월 25일에는 한전 및 참여업체의 초기건설인력 70여명과 약 9,000톤 규모의 중장비 및 자재가 건설현장에 투입되었다. 7월 28일에는 KEDO 인원에 대한 영사보호와 KEDO-북한간 업무연락을 맡게 될 KEDO 금호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 분단이후 최초로 우리 정부대표 2명이 미국대표 2명, 일본대표 1명과 함께 북한에 상주하며 근무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금호지역과 한전과의 업무연락을 위한 전용통신망 8회선이 8

월 4일 정식으로 개통되어 전화·팩스 등 통신서비스도 시작되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8월 19일 역사적인 경수로 부지준비공사 착공식이 거행되었다. 착공식 행사에는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 등 한·미·일 정부대표와 보스워스 사무총장 등 KEDO 관계자 그리고 경수로사업의 주계약자인 한전과 참여업체 대표 및 우리 건설인력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북측에서도 원자력총국장, 경수로대상사업국장, 협종 대사 등 8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착공식은 한·미·일 언론 취재단이 착공식 진행모습을 전세계에 중계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부지준비공사 착공은 미-북 제네바 합의 이후 2년 10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네바 합의로부터 시작된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이 이제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 측면에서 볼 때, 분단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협력사업에 남북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금번 착공을 계기로 경수로사업이 단순히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 차원을 넘어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3절 향후 과제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KEDO는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고, 북한측은 그동안 합의한 각종 의무, 즉 특별사찰 수락 등 핵동결 의무 이행, KEDO-북한간 각종 합의서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에도 경수로사업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KEDO-북한간 순조로운 합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경수로 건설비용은 KEDO 집행이사국인 한·미·일이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KEDO는 한전에 용역을 의뢰하여 경수로 사업의 개략사업비(Rough Order of Magnitude : ROM)를 산정케 하였고(1996. 7), 그 결과를 기술자문회사(TSC)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였다.

한·미·일 정부는 KEDO가 검토후 제시한 결과를 기초로 개략사업비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차례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서 개략사업비에 제시된 기본사업비외에 건설기간중 물가상승비 및 각종 불확실성에 대한 예비비를 포함한 총 소요비용을 재산정하도록 한전에 요구하였고, 한전은 1997년 9월에 수정된 신규 예상사업비를 KEDO에 제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KEDO 집행이사국은 1997년 11월 25일 워싱턴에서 고위급협의를 갖고 경수로 예상사업비를 51억 7,850만달러로 확정하였다.

예상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한·미·일 정부는 재원분담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우리의 중심적 역할에 걸맞는 재정부담을 하되 미·일측의 최대한 참여와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재원분담협상이 종료되면 우리측 부담액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우리의 재원분담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KEDO와 북한은 잔여 후속의정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미 6개의 정서를 타결하였으나 향후에도 제네바 합의와 경수로 공급협정의 세부적 이행을 위해 품질보장, 훈련, 인도일정, 핵사고 책임 등 추가적으로 6~7개의 후속의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외에도 주계약자인 한전과 KEDO 간의 주계약 체결 등이 과제로 남아 있지만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의무와 약속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핵관련시설을 동결하고 있고, 사용후 연료봉에 대한 봉인작업도 협조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핵동결 유지에 필요한 각종 의무사항은 물론 우리 건설인력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북측 인력 및 물자의 안정적 공급 등 제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때 경수로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1996년 9월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 1997년 10월 김정일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 훠손 사건 등으로 경수로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대남적화전략과 폐쇄적인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경수로 사업의 원활한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97년 대통령선거에 경수로건설현장에 파견된 우리측 건설인력의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등 부정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목적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 해소 및 저지와

아울러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다.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에서 약속한 남북대화를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 없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개연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제네바 기본합의의 완전이행을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며 북한은 남북대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경수로사업은 10여년간에 걸쳐 남북간 대규모의 인적·물적 교류를 수반하게 된다. 우리의 건설인력이 수시로 북한을 왕래하게 되고 또 현장에서는 우리의 근로자와 북측 근로자들이 함께 작업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 작업과정에서의 상호이해의 증진과 남북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남북한이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도 이러한 방향으로 경수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제6장 남북교류협력

제1절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제2절 남북인적교류

제3절 남북교역

제4절 남북협력사업

제5절 남북협력기금

제6절 남북교류협력의 발전방향

제1절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1. 추진 경위

남북교류협력시대가 개막된 것은 우리정부가 1988년 ‘7·7선언’을 통해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이후이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8.1 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우리법의 테두리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1990년 9월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됨으로써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게 되었다. 특히 1991년 12월 제5차 회담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1992년 9월 제8차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됨으로써 남북간 화해·협력시대의 실천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간의 합의사항들은 북한이 팀스피리트훈련 등을 구실로 1992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던 분야별 남북공동위 가동을 거부함에 따라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영삼정부의 출범이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1993년 3월에 인도적 차원에서 이인모의 방북을 허용하고 「신경제 5개년계획 남북경제교류협력부문계획」을 수립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들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1993년 3월 갑자기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야기된 북한 핵문제가 남북관계 전반을 경색국면으로 전환시켰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경협을 핵문제 해결시까지 보류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림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유보되었던 남북경협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고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하였다.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지난 5년간 1,700여명이 남북을 왕래하는 등 인적 왕래와 접촉이 있었으며, 남북교역이 연간 3억달러에 달하여 우리는 중국, 일본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상대로 부상하고 남북한 직항로도 개설되었으며, 대북투자 실현으로 남북 최초의 합영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5년간 핵문제 등 정치·군사적 긴장으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 신경제 5개년계획 남북경제교류협력부문계획 수립

정부는 1993년 7월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중기계획으로서 「신경제 5개년계획 남북경제교류협력부문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기존의 「제7차 5개년 남북교류협력부문계획」 중 경제분야 계획에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내용 등 남북관계 진전상황과 국내외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보완한 것으로서 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획기간중 남북 「화해·협력단계」 정착과 「남북연합단계」 진입에 대비하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①남북한간 물자교류, ②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 ③과학·기술·환경분야 교류협력, ④남북한간 교통통신망 연결, ⑤경제관련 통계·자료의 교환, ⑥국제무대에서의 남북경제협

력 확대, ⑦남북경제교류협력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 ⑧남북경협 및 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⑨남북경제연구의 체계적 추진 등 9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과제들은 ‘시범사업 실시 및 제도화 단계’,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 단계’, ‘경제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한 경협 본격화 단계’라는 3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남북경제교류협력부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실천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과제들이 북한과 협의하여 추진할 사안들이기 때문에 북한측의 호응도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일이다.

3.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정부는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 핵협상 타결에 따른 대북 경수로 지원과 북한과 관련국간의 관계개선 등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관계를 실질적 협력관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1994년 11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고, 기업인 방북 승인과 협력사업(자) 승인 등 이를 구체화하는 후속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

정부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남북경협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제도를 마련하였다.

우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1994년 11월에는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을 제정하고,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하였으며, 1995년 6월에는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외국환관리의 특례를 정한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 및 고시의 제정과 개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그동안 통일원은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또한, 1997년 6월에는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사업 추진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제2절 남북인적교류

1. 남북왕래

가. 개황

남북인적교류는 남북한의 주민이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왕래’와 남북한 및 제3국 등에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만나거나 교신하는 ‘접촉’으로 대별할 수 있다.

남북왕래는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시행 이후 1997년 11월까지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이 신청 316건(2,814명), 승인 266건(2,579명), 성사 227건(2,340명)이며,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신청 15건(607명), 승인 14건(597명), 성사 12건(575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신청·승인·성사 모든 면에서 남한방문보다 북한방문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 인적 왕래가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1992년까지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북한 핵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과 1994년에는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1995년에 들어 기업인 방북 등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1996년부터는 기업인 이외에도 대북 경수로지원사업 관련 인원의 방북이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1997년에는 남북적십자사간 합의에 의한 대북식량지원 인도요원의 방북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1993년까지는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1994년 이후 1997년 11월까지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북한방문

(1) 기업인 방북

1992년 10월 남포경공업단지 투자실무조사단의 방북 이후 한동안 남북왕래가 없었던 기업인의 방북은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1994.11) 이후 1994년 12월 쌍용그룹 관계자들을 필두로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34개기업 208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1996년 9월 북한 무장잠수함 침투사건이 발생하여 기업인의 방북이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1997년 들어 재개되기 시작하여 11월까지 29개기업 113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1994년 11월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이후 1997년 11월까지 총 55개기업, 321명의 기업인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들 기업인들은 교역과 투자관련 협의를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주)대우의 임원과 기술자들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남포공단의 경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여 장기체류하면서 공장운영 및 제품생산 관련 기술지도 활동을 수행하였다.

방북 기업인의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2개사, 중소기업이 43개사 등이며, 방북기간은 (주)대우의 장기체류자를 제외하고는 방북 활동목적에 따라 4~5일부터 2주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방북 지역별로는 평양·남포 일대와 나진·선봉지역이 가장 많고, 일부 기업의 경우는 강원도·신의주·사리원 등의 지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방북경로는 북한이 판문점을 통한 직접왕래를 꺼리고 있는 관계로 중국 북경에서 평양간의 항공편을 주로 이용하였으나, 중국 도문을 거쳐 북한 남양으로 육로로 방문하는 사례도 많으며, 최근에는 중국 권하에서 북한 원정리쪽으로 방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 사회문화분야 방북

사회문화분야에서의 북한방문은 초기에는 1990년의 남북국악인 서울·평양 공연과 남북통일축구대회, 1991년의 세계청소년축구단일팀 평가전과 남북여성세미나 등 남북공동 참여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1992년부터는 종교인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북한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에는 각계의 종교인 6명이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종교교류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1997년에는 11월까지 종교인, 언론인 등 22명이 방북하여 남북종교교류와 병원설립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3) 대북 경수로지원사업 관련 방북

대북 경수로지원 사업의 진전에 따라 관련 인원의 북한방문은 대폭 확대되고 있다. 1995년에 부지조사 활동이 시작되어 부지조사단 22명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1996년에는 부지조사단 42명과 의정서 협상을 위한 대표단 10명 등 총 54명이 방북하였다.

1997년에는 초기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 실무협상단 64명과 초기현장공사 착공식(8.19) 참가 정부대표단 및 관계자 55명, 시공단 131명, KEDO 현장 사무소 대표 2명과 관련 수송인원 75명, 이외에 부지조사단 48명 등 총 663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초기 부지공사 착공후 건설인력이 장기체류 중이며 향후 공사진척에 따라 체류인원은 점점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방북경로는 통상 항공편으로 중국 북경에서 북한 평양 순안공항을 거쳐 선덕공항에 도착한 다음 차량편으로 금호지구로 이동하는 경로가 이용되고 있으며, 동해안 항구에서 양화항으로 입항하는 해상로도 이용되고 있다.

(4) 「한적」의 대북식량지원 관련 방북

1997년에는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민간의 인도적 대북식량지원을 위해 남북한 적십자사간의 합의에 따라 6월부터 11월말까지 지원식량 인도요원 149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1차 지원에는 인도요원 42명과 수송인원 20명 등 62명이 방문하였고, 8월부터 진행된 2차 지원에는 인도요원 57명과 수송인원 30명 등 87명이 방문하였다.

방북경로는 육로의 경우 중국의 단동, 집안, 도문에서 북한의 신의주, 만포, 남양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해상으로는 남포항, 홍남항으로 입항하였다.

다. 남한방문

북한주민들의 남한방문은 1993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두만강개발계획 관련 통신분야 전문가회의(1.27~1.30)와 자원·산업·환경분야 전문가회의(11.8~11.10)에 각 3명씩 참석한 이후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5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2.27~3.2)에 북한측 인원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판문점을 통과하기

로 예정되었던 당일 북한은 일방적으로 행사불참을 선언하여 무산되었다. 이후에도 서울에서 개최되는 문화·체육행사나 국제회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측의 참가를 꾸준히 초청하였으나 북한측은 응해오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2. 북한주민접촉

가. 개황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지침」 시행 이후 1997년 11월 말까지 신청 7,384건(18,390명), 승인 7,015건(17,262명), 성사 2,553건(7,31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북한주민접촉은 매년 신청과 승인·성사면에서 증가하여 오다가 1996년 9월 북한 무장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일시 감소하였으나 1997년 들어 다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북한주민접촉은 기업인들의 교역·투자상담, 이산가족들의 재북가족과의 서신교환, 학자·종교인들의 제3국 개최 학술회의 참석 등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주민접촉은 남북간 왕래나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북한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폭넓게 허용해 왔다.

나. 경제분야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지침」 제정 이후 1997년 11월까지 경제분야 북한주민접촉은 신청 2,383건, 승인 2,294건, 성사 1,142건에 이르고 있다. 1997년도는 신청 430건, 승인 407건, 성사 273건으로 전년동기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북한은 우리기업과의 경제교류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물자교역 및 경협 협의를 위한 남북주민간 접촉이 중국의 북경·연변, 홍콩 등 제3국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인적접촉이 기반이 되어 북한 현지조사 및 경협 협의를 위한 기업인 방북이 지속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다. 사회문화분야

(1) 학술

1989년 6월 12일 이후 1997년 11월까지 학술분야 북한주민접촉은 신청 382건, 승인 351건, 성사 112건으로 집계되었다. 1997년도에는 신청 30건, 승인 26건, 성사 13건으로 1996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간의 학술교류는 대부분이 중국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해당단체들이 중국 연변 등지의 동포학자·단체들의 북한과의 교류경험과 지리적 근접성을 감안하여 남북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술행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997년에 이루어진 주요 학술행사는 남북학술회의(1997.6, 북경), 제3회 고구려 국제학술대회(1997.7, 동경), 제5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1997.8, 오오사카), 제7차 동북아경제포럼(1997.8, 울란바토르), 제3차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동포학자 학술회의(1997.8, 북경), 제4차 세계청년학생 평화세미나(1997.9, 북경), 남북평화미술전(1997.10, 동경) 등이다.

(2) 체육

1989년 6월 12일 이후 1997년 11월까지 체육분야에서의 북한주민접촉은 신청 126건, 승인 118건, 성사 30건으로 나타났다. 1997년도는 신청 17건, 승인 15건, 성사 8건으로 1996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7년에는 로울러스케이팅, 축구 등 국내 경기단체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를 계기로 남북교류를 모색하였으나 별 성과는 없었다.

다만, 대한산악연맹의 북한등산협회 관계자에 대한 암벽등반교육 및 스포츠클라이밍선수권대회 참관(1997.7, 북경)과 북한 프로권투협회의 세계권투협회(WBA), 범아시아권투협회(PABA) 가입을 주선·성사시키는 남북간 접촉이 이루어졌다.

(3) 문화·예술

1989년 6월 12일 이후 1997년 11월까지의 문화·예술분야 북한주민접촉은 신청 230건, 승인 190건, 성사 42건으로 집계되었다. 1997년도는 신청

18건, 승인 18건, 성사 10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7년도에 신청된 18건을 장르별로 보면 음악 5건, 미술 4건, 영화 2건, 교예 2건, 사진 2건, 기타 3건 등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남북간에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가운데 의사타진 차원의 단순접촉만 일부 이루어졌다.

(4) 관 광

1989년 6월 12일 이후 1997년 11월까지 관광분야에서의 북한주민접촉은 신청 140건, 승인 131건, 성사 35건으로 집계되었다. 1997년도는 신청 11건, 승인 10건, 성사 5건으로 1996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7년 관광분야 주요접촉은 제30차 세계관광기구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위원회 회의 참석 등으로 의사타진 차원의 단순접촉에 머물렀다.

(5) 종 교

1989년 6월 12일 이후 1997년 11월까지 종교분야 북한주민접촉은 신청 244건, 승인 193건, 성사 59건으로 나타났다. 1997년도에는 신청 30건, 승인 25건, 성사 13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가 추세에 있다.

1997년도에는 남북한 개신교계 관계자들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남·북·미 교회협의회(6.17~6.19)에서 접촉한 것을 비롯해서 독일교회의 날 행사(6.17~6.22, 독일 라이프치히) 및 세계개혁교회연맹총회(8.8~8.20, 형가리 드브리첸) 참가 등을 통한 접촉이 있었으며, 개신교계 인사의 방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불교계에서는 북경에서 실무자급의 접촉을 통해 부처님오신날 봉축 남·북 불교도 공동발원문을 합의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남북한 종교지도자 북경회의(5.30~5.31, 북경)와 천주교의 남북천주교인 북경세미나(6.4~6.7, 북경) 개최 등을 통한 남북 종교인간의 접촉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순수한 종교교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정에서도 종교교류를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다. 우리측 종교단체들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순수 종교교류보다는 정치적 의도 및 실리추구를 목적으로 응해 옴으로써 남북

한간 종교교류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 언론 · 출판

1989년 6월 12일 이후 1997년 11월까지 언론 · 출판분야 북한주민접촉은 신청 205건, 승인 166건, 성사 31건으로 나타났다. 1997년은 신청 18건, 승인 13건, 성사 4건으로 제3국을 통한 접촉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신청 18건의 경우 모두 언론분야로서 북한의 자연경관 촬영, 문화유적 답사 및 북한실상 취재를 위한 신청이 대부분이며, 출판분야의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향후 전망

남북간의 인적교류는 민족구성원간에 자유로운 접촉과 왕래를 통하여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민족의 고통을 치유하고, 단절된 민족적 유대와 동질성을 회복 · 발전시킴으로써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통일이 후에도 사회적 · 문화적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1993년 김영삼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적법절차에 따른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허용하고, 이의 성사를 위해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결과 교류사례나 분야가 확대되는 등 민간 급 접촉에서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기업인, 경수로 관련인원 등을 중심으로 1,700여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간의 인적교류가 체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응해 오고 있어, 기대만큼 크게 진전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남북경제인의 제3국 접촉에서는 북한측이 우리 기업인에게 대북투자를 제의해 오면서 방북초청장을 발급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오고 있으며,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 ·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인적교류를 포함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은 점차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또한 초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을 위해 공사 현장에 많은 우리 기술진들이 체류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더욱 많은 우리 기술인력들이 내왕하고 북한인력과 공동으로 작업하게 됨으로써 남북간의 교류협력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

제3절 남북교역

1. 남북간 물자교역

가. 교역규모

남북간의 물자교역은 1988년 ‘7·7선언’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를 취한 이후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치 발표후 첫해인 1989년의 교역량은 1천9백만달러였고 이듬해인 1990년에는 1천3백만달러로 첫 2년간은 2천만달러 이하였다.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동 법률시행령」 등이 제정·시행되어 남북간의 교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1991년에는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서는 규모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1992년에는 1억7천만달러를 상회하는 규모로 커졌고 위탁가공교역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과 1994년에는 북한핵 문제로 인한 어려운 남북관계 사정에도 물자교역은 꾸준히 진행되어 교역량이 2억달러에 근접하였으며, 위탁가공교역도 2천5백만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1994년 11월 정부가 남북간의 시범적 경협과 기술자 방북 등을 포함한 남북경협활성화 조치를 취한 이후 남북간의 교역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2억9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1996년에는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등으로 2억5천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1997년 들어 북한으로부터 철강금속류의 반입증가와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의 진전에 따라 10월까지 교역량은 2억7천6백만달러 수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27.8% 증가하였으며, 연말까지는 3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역이 시작된 1989년 이래 1997년 10월까지 교역실적은 통관기준으로 총 15억1천만달러이며, 이중 반입이 12억3천만달러, 반출이 2억8천만달러이다. 1995년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한 쌀 15만톤 약 2억4천만달러를 포함하면 총 교역량은 17억5천만달러이다.

나. 교역형태 · 품목

(1) 교역형태

교역방식은 북한측에서 아직까지 남북한간의 물자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해외중개상을 통해 협의, 계약, 대금결제를 처리하는 방식과 함께 북한당사자와 직접 협의하고 계약 및 대금결제는 해외중개상을 통하여 방식 등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약재와 농산물 일부품목은 남북간 직접계약을 통하여 반입되고 있다.

반입과 반출의 비율은 초기에는 10:1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96년에는 3:1, 1997년에는 1.7:1로 반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가공교역의 확대에 따른 원부자재의 반출증가와 KEDO가 지원하는 중유, 경수로물자 등의 반출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2) 반입품목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금괴, 아연괴 등 철강금속류를 비롯하여 농림수산물, 광산물 등 주로 1차 산품이 대부분이었으나, 1994년 이후에는 철강금속과 광산물의 반입 비중이 줄어들고 위탁가공 제품인 섬유류의 반입이 증가하면서 2차 산품의 비중이 초기에 비해 높아지는 형태로 품목구조가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반입품목중 철강금속의 비중은 50%선으로 최대교역 품목이다.

1997년도 10월까지 반입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철강금속류 51.8%, 섬유류 24.7%, 농림산물 5.6%, 수산물 7.3%, 화학제품 4.4%, 기계전자 1.8%, 광산물 0.1%, 경수로물자 재반입 1.6%, 기타 2.6%로 전년에 비해서 철강금속류와 수산물의 비중이 조금 높아진 반면 섬유류와 농림산물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다.

(3) 반출품목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최대품목으로 큰 비중을 나타냈으나 1993년부터는 위탁가공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섬유류가 최대품목으로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품목구조가 크게 바뀌었으며, 1995년 이후에는 KEDO의 중유 반출로 화학제품의 비중이 다시 점차 커지고 있다.

1997년에는 10월까지 반출품목의 품목별 구성비율은 섬유류 34.7%, 화학제품 29.2%, 경수로물자 13.4%, 농림수산물 7.6%, 기계전자 3.4%, 철강금속류 0.6%, 기타 11.1%로 전년에 비해 섬유류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화학제품과 농림산물의 비중이 다소 늘어났다. 이러한 품목구성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구매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은 우리의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완제품을 다시 반입하는 교역방식이다. 1991년 코오롱상사가 학생가방을 간접교역방식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1992년 838천달러, 1993년 7,008천달러, 1994년 25,663천달러, 1995년 46,436천달러, 1996년 74,402천달러로 크게 증대되고 있다.

1997년에는 10월까지 교역액이 70,541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2%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역액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이 이처럼 증대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저렴하고 질좋은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탁가공교역 추진을 향후 남북경협의 준비과정으로 보아 국내기업들이 적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측으로서도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투자부담 없이 외화획득이 가능하고, 낙후된 경공업분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간 임금수준 차이 등 상이한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상호보완성이 높은 위탁가공분야는 섬유류, TV 등 가전제품 조립, 자동차용 전기제품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위탁가공교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방·신발·완구·슈트카바 등

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6년부터는 칼라TV, TV스피커, 자동차 배선 등으로 그 품목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라. 과제와 전망

남북한간의 물자교역은 그동안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상응하는 북한측의 공식적인 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의 경우 19억8천만달러로 추정되는 북한 대외무역 총 규모의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4년 이후 남북교역은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에서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왔던 남북교역은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1996년 북한의 원료 및 에너지 공급부족으로 인한 철강금속류의 생산 감소 등에 따라 일시적인 감소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1997년에는 나프타 등 화학제품과 수산물의 반입증가, 위탁가공교역의 증대와 더불어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식량지원, 경수로사업의 진전 등으로 남북간 경제교류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1997년 4월 「남북교역 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자동승인품목과 제한승인품목으로 하던 품목구분을 ‘포괄승인품목’과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변경하고, 외국환은행장의 반출입승인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교역절차를 크게 간소화하였다. 또한 대북경수로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원자력산업 관련 물자의 반출입을 위해 전략물자 반출·입 승인절차를 신설하였다.

남한의 기술·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남북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위탁가공교역은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교역의 약 1/4수준의 규모로 증대되면서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으나, 기술지도상의 애로, 과다한 물류비용 등으로 폭넓게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교역품목의 개발 등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남북교역을 공식화하고 이를 당국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북한당국의 태도변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간접교역의 직교역으로의 전환, 정기적인 해로와 육상수송로의 개설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

가. 개황

남북간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3조 제5항에서 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후속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남북한간에는 공식적인 수송로가 개설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남북관계 사정에 따라 1988년 대북 경제개방조치 이후 1993년 말까지 남북한간의 5억불 상당의 교역물자 수송이 모두 외국선박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남북간의 항로에 내국선사의 참여기반을 조성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족내부의 항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1994년 6월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남북한간에 선박 등 수송장비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외국인 모두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아직까지는 제3국적선에 의한 수송이 대부분이나 1995년 쌀 15만톤 대북지원, 1997년 대한적십자사의 지원물품과 경수로 물자를 우리 국적선이 운송한 사례와 같이 국적선 운항은 물론 남북간 해운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한 제도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 남북간 선박운항

(1) 운항횟수

남북간 수송장비운행 승인제도가 시행된 1994년 7월에서 1997년 10월까지 남북간 수송장비운행은 편도기준으로 1,005회이다. 이중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운행이 690회로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운행 315회보다 약 2.2배가 많다. 남한지역에서는 인천항, 부산항, 북한지역에서는 남포항, 나진항으로 선박운행이 집중되고 있다.

(2) 물동량

1994년 7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남북간의 물동량은 1,623천톤이며, 이중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물동량이 881천톤으로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물동량 742천톤보다 약 1.2배 정도가 많다. 이러한 물동량 추이는 반입위주의 남북 교역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항구별로는 남한지역의 인천항, 울산항, 여수항, 부산항 등과 북한지역의 나진항, 남포항, 청진항 등이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3) 국적선 운항

남북한은 1992년 7월 19일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제3조에서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후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남북간에 교통로는 개설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부분적으로 남북간의 물자수송을 위한 임시 교통로가 개설되고 있다.

남북간 직접 합의에 의한 정기 해로는 개설되지 않았으나,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통행관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통행의정서에 규정된 바지선과 소형선박에 의한 물자 수송로와 KEDO 인원·물자 의 수송로 등 2개의 수송경로를 통해서 우리 국적선이 경수로물자를 수송하고 있다.

이 수송로를 통해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인 한나라호가 동해항에서 신포 지역의 양화항까지 2회에 걸쳐 왕복운항하였고, 바지선인 KOREX CHAMP호와 소형선박인 KOREX PUSAN호가 울산항에서 양화항까지 경수로 초기건설 장비와 물자들을 수송하였다.

한편 1997년 5월 26일 대한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회간에 대북 인도적 지원 식량의 인도·인수 지점을 해로의 경우 남포항과 홍남항으로 한다고 합의한 대로 북한의 남포항과 홍남항을 통해 우리 국적선이 3회에 걸쳐 밀가루, 라면 등 대북 지원물품을 운송하였다.

다. 과제와 전망

남북간의 교역실적은 1989~1997년까지 약 15억달러 상당을 넘어서고 있고 1994년 7월이후 남북한간 물동량은 1,623천톤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남북간 교역물품을 수송할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현재 남북간의 교역물량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물류비용

이 비슷한 거리의 외국으로의 운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남북간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물량의 규모가 작고, 북한의 항구시설 사정에 따른 장기체선 등으로 인해 운송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물류비용은 남북교역 물품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고 있다. 따라서 고물류비용을 절감하여 남북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기항로의 개설은 물론 육로의 개설 등 수송분야의 남북간 협력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남북교역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3. 남북간 교통로 개설

가. 대구/평양 FIR 통과 항로개설 및 관제통신망 구성

1994년 12월 8일 북한의 민용항공총국장 김요웅은 북한이 「국제항공업무 통과협정」을 비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세계 모든 나라의 민간항공기에 영공을 개방하여 통과비행 및 이착륙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이사회 의장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ICAO는 1995년 4월과 1996년 1월 2차례에 걸쳐 관계관을 북한에 파견하여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는 국제항공노선 개설의 일환으로 대구/평양 FIR을 통과하는 항공노선의 개설을 협의하였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의 항공기 운항을 허용하고,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사고시 구조·수색의무에 대해서 동의를 표시하면서도 남북간에 직접 합의는 수용할 수 없으므로 ICAO를 중개로 한 간접 합의방식으로 항로개설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따라 ICAO의 주선으로 1996년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남북한은 우리 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나라의 민간항공기에 대해 차별없는 항로개방, 남북한 항공교통관제소간 직통관제통신망 구성, 항공기운항의 안전조치 등 항로개설에 관한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1997년 3월 26일부터 3일간 열린 2차회의에서 양측은 서울-동해안-평양 FIR-하바로브스크와 평양-선덕-대구 FIR-일본 MIHO 간의 항로를 개설하고, 항공기의 운항허용과 안전운항 보장, 그리고 남북한 관제소간 2개의 관제직통전화 설치 등에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관제통신망 구성방식에 대

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어 1997년 10월 7일부터 3일간 방콕에서 개최된 3차 회의에서 남북한은 대구/평양 항공교통관제소간 관제통신망의 주회선은 판문점을 경유하는 직통유선전화로 하고, 예비회선은 ASIASAT II 인공위성을 이용한 남북 직접 연결방식을 이용키로 합의하고, 양측 수석대표가 「대구/평양 항공교통관제 소간 관제협정」에 서명하였다.

또한 남북한은 대구/평양 FIR 통과항로의 설정, 모든 국가의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차별 운항허용, 항공기의 안전운항 보장 및 수색·구조·사고조사 등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부속의정서 규정에 따른 협조, 분쟁 발생시 해결절차 등 항로의 설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통과 국제항로개설에 관한 양해각서」에 양측 수석대표가 가서명하고, 1997년 10월 27일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1997년 10월 19일 대구/평양 항공교통관제소간에 판문점 경유 관제통신망을 개통하였고, 1998년 2월 말까지 예비회선인 ASIASAT II 인공위성을 이용한 직통전화를 연결하고, 관제통신망의 시험 가동 및 시험비행을 거쳐 1998년 4월 23일부터는 우리 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나라의 민간항공기가 대구/평양 FIR 통과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평양 FIR 통과항로 개설 및 남북간 관제협정의 체결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운행하는 비행기의 항공로를 개설한 것은 아니지만 남북간에 직통 관제통신망이 개설됨으로써 남북한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운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간 항공로 개설에 큰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나. 속초-나진-훈춘간 카훼리항로 개설추진

1993년 2월 한국과 중국은 해운회담에서 속초-방천(훈춘)간 카훼리항로를 개설하고, 한중합작선사를 운항사업자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3년 4월 (주)동북훼리 등 9개 선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사를 동 항로의 국내사업자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두만강의 하상이 높아 동 항로의 이용이 불가능하자 운항선사는 포시에트항이나 자루비노항에 기항하는 문제를 러시아와 협의하였으나, 러시아가 항만시설 투자를 요구하여 항로개설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95년과 1996년 북한의 나진·선봉행정위원회와 중국의 훈춘시가 나진항을 이용하여 여객과 화물을 중계운송한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속초-나진-훈춘간 카훼리항로의 개설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나, 북한이 당국 간 협의를 기피하여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7년 1월 31일 중국은 중국측 출입지점인 권하통상구를 제3국인이 통과할 수 있는 임시국가1급통상구로 지정하고, 카훼리항로 개설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한·중국 3국간 실무회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1997년 11월 13일부터 이를간 북경에서 열린 실무회의에서 남북한은 카훼리항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항로를 이용하는 우리측 여객의 신변안전보장방안과 분쟁해결을 위한 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에 대해 이견을 보임으로써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속초-나진-훈춘 카훼리항로 개설은 남북간 교류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다. 또한 중국이 동북3성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고, 북한도 나진·선봉지대 투자기반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이 우리측 여객에 대한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등의 태도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항로개설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4절 남북협력사업

1. 개황

대북 경제개방 조치 이후 남북간의 교역이 추진되어 성과를 보임에 따라 우리기업들은 북한지역 투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남북고위급회담이 진전을 보이던 1992년 1월에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북한을 방문한 데 이어 9월에는 장치혁 고합그룹 회장이 방문하였으며, 6월에는 북한 정무원 부총리 김달현이 우리쪽을 방문하는 등 남북경협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10월 5일 (주)대우가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 투자대상지역인 남포에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북한 핵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투자를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94년 10월 제네바 미·북한 핵 협상 타결로 핵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추진되지 못하였던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4년 11월 8일 남북 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하였다. 이후 정부는 동 조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4년 12월 1일에는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을, 1995년 6월 28일에는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따라 경제교류와 협력이 꾸준히 증진되어, (주)대우가 1995년 5월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1996년 1월 북한측과 합영회사를 최초로 설립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6년 9월 북한측의 의도적인 선별초청으로 인한 우리측 대표단의 나진·선봉투자설명회 참가가 무산되고 뒤이어 발생한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우리 기업인의 신변안전보장 문제가 제기되어 기업인의 북한방문과 협력사업(자) 승인이 보류되었다.

그러다가 1996년 말 북한측의 잠수함사건에 대한 사과와 4자회담 예비회담,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개최 등을 통해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정부는 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위해 기업인 방북을 허용하고 협력사업(자) 승인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남북경협을 위한 기업인들의 활동이 다시 활기를 띠어 가고 있다.

한편, 사회문화분야의 경우에 있어서는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한 사례가 있다. 남북한 단일팀은 탁구에서 여자팀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고, 축구는 8강에 진입하는 등 우리민족의 저력을 과시한 바 있다. 1992년 이후에는 북한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은 더 이상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문화협력사업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대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추진 현황

가.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우리기업들이 북한지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로부터 사업추진 자격을 부여하는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후 사업에 실제로 착수할 때에는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남북경제협력과정에서 혼선이 일어나거나 남북관계 개선에 저해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서를 세우고 정부와 기업이 상호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이전에는 1992년 10월에 (주)대우의 남포공단 경공업사업에 대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뿐이었으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1995년 6개기업, 1996년 4개기업, 1997년 16개기업 등 총 27개기업이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다. 이중 남북간에 협력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주)대우, (주)태창, (주)녹십자, 한국전력(주), 한국통신(주), 외환은행 등의 6개기업을 제외한 21개기업이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서 북한측과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들 기업들은 북한측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협의서’를 체결하게 되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21개 기업에 대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 현황

남북경제협력사업은 1995년 (주)대우가 남포공단 경공업사업에 대해 승인을 받은 이후 1997년 (주)태창, (주)녹십자, 한국전력(주), 한국통신(주), 외환은행 등에서 5개사업에 대해 승인을 받아 총 6개사업이다. 정부로부터 1995년 5월 17일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주)대우는 북한의 조선삼천리총회사와 함께 1996년 1월 26일 분단이후 최초의 남북합영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를 설립하였다. 민족산업총회사의 총 투자규모는 10,497천달러로 이중 (주)대우측의 투자액은 5,122천달러이며, 양측에서 총 6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두고 있다. 민족산업총회사는 본사를 평양에 두고 남포시 항구구역 신흥동 약 7만4천m² 부지에 셔츠, 블라우스, 쟈켓, 가방 생산공장을 세워 1996년 8월 19일부터 가동을 시작하였다.

(주)태창은 1997년 5월 22일 금강산샘물 개발사업에 대해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1998년초 공장가동을 목표로 설비발주 및 합영회사 설립

을 위한 준비중에 있고, (주)녹십자는 1997년 11월 14일 유로키나제(혈전증 치료제) 생산사업에 대해 사업승인을 받아 평양에 합작회사 설립 및 설비 투자를 위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은 경수로 지원사업을 위하여 1997년 8월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외환은행이 경수로 사업 부지내 은행점포 개설을 위한 사업승인을 1997년 11월에 받았다.

1997년 11월말 현재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경협

정부는 남북간의 직접적인 경제협력사업과 함께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지역협력사업을 통해서도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주관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이다. 여기에는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일본, 핀란드, 캐나다 등이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 두만강개발계획의 목표는 두만강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운송 중심지 및 가공·제조업 중심지로 개발하여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협력의 거점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개발대상 지역은 두만강유역을 중심으로 개발 지역의 범위에 따라 3개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두만강경제구역(TREZ: Tumen River Economic Zone)은 나진-훈춘-포시 에트로 연결되는 소삼각 지역($1,000\text{km}^2$)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두만강경제개발지역(TREDA: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은 청진-연길-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되는 대삼각지역($10,000\text{km}^2$)을 대상으로 하며, 동북아지역개발지구(NEARDA: North East Asia Regional Development Area)는 두만강지역 개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북아 내륙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만강개발계획은 점진적 조화방식을 개발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현실성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제도의 개선 및 조화를 통한 바람직한 교역 및 투자환경을 장기간에 걸쳐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사업추진 방식은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투자 전단계와 사업의 본격 시행단계의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비상설기구로 계획관리위원회(PMC: Program Management Committee)를 구성·운영하고, 분야별로

실무그룹(WG: Working Group)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1995년 12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6차 PMC 회의에서 「두만강경제 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협의위원회 설립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두만강개발계획은 2단계인 5개국위원회 체제로 정비되었다.

의사결정기구로서 5개국위원회(Commission)와 접경3개국위원회(Committee)를 두고, 실행계획 추진협의를 위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회의 및 두만강개발계획 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게 되었다.

정부는 초기부터 두만강개발계획에 회원국으로 각종 회의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을뿐 아니라, 1996년 4월에는 한·UNDP 신탁기금 100만달러를 출연하였으며 1997년 9월에는 이 기금에서 북한 등 회원국의 투자촉진·사업 지원센터 지원, 두만강유역 공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5개 사업에 80만달러를 지원하였다.

3. 향후 전망

정부는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형성시켜 나가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면서 당국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분야의 경우 남북 당국간에는 아직까지 투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나 1994년 11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취하여 시범적 경협에 대해서는 대북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 11월 이후 48개기업 285명의 기업인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27개기업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을 하였으며, 이중 6개기업이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추진중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해 오면 남북 농업협력, 나진·선봉 투자, 남북교역 확대, 한국 관광객들의 북한방문 허용 용의를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거부 태도를 유지하면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제도적 지원장치의 마련에 응해오고 있지 않는 등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많은 실정이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북한은 개혁보다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의 부분개방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경제회생을 도모하려는 의도 하에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당국차원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남한기업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남북경협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기는 어려우며,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질서있고 신중하게 경협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간 정치·군사적 긴장상황이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서방기업의 대북 투자를 저해하는 최대의 장애요인인 만큼 단순교역을 넘어선 대북투자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신뢰에 기초한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조성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4자회담의 개최와 성공이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으며 북한이 4자회담에 성실히 임한다면 북한은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신뢰 그리고 경제적 실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오랜 분단으로 인한 불신과 이질감을 해소하고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첨경이라는 인식하에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북한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아직까지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앞으로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북한측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정부는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진전상황에 따라 남북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반응과 태도를 고려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계속하여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제5절 남북협력기금

1.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

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의거하여 1990년에 설치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통일원장관이 운용·관리를 관장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는 남북간 주민왕래 지원,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 지원,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융자,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이다.

1995년부터는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재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함으로써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어 통일정책 추진을 활성화하는 데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가. 조 성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정부출연금이며, 일부 민간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향후 대규모 수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기금·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조성할 수도 있다. 여유자금은 국채·공채의 매입, 재정융자 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 원을 조성한 이래 1997년 11월까지 정부출연금 4,850억 원, 민간출연금 4억 9,900만 원, 운용수익금 758 억 5,300만 원 등 총 5,613억 5,200만 원이 조성되었다.

나. 집 행

초기에는 축구·탁구 등 체육분야 국제대회 단일팀 출전지원과 쌀 직교역의 손실보조 등 남북 공동사업 지원에 사용되었으나, 북한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 1994년에는 집행이 없었다. 그러다가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이 심화되어 북한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한

1995년부터는 북한에 대한 쌀 15만톤 무상지원 및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형태 등으로 남북협력기금이 사용되고 있다.

1997년 11월까지의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은 대북 쌀 15만톤 무상지원비용 1,854억원 등 12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총 2,136억 원을 사용하였다.

다. 여유자금 운용

여유자금은 국채·공채의 매입,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 1997년 11월 말 현재 3,462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1,606억원은 재정경제원의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856억원은 시중 금융기관에 각각 예치하고 있다.

제6절 남북교류협력의 발전방향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면서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통해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추진에 있어 남북교류협력은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시켜 북한체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면서, 통일후 발생할지도 모를 남북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여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을 이루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정부는 그간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과거의 적대적 대결상태로부터 화해협력의 단계로 진입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수호적 부분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목표를 여전히 현존체제의 생존과 유지에 두고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개혁·개방이 가져올 체제동요를 우려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실리적·선별적 남북교류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통일전선전술적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가능한 민간급 접촉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당국간 제도적 장치 마련은 외면하고 우리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교류협력정책은 교류협력이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경조화의 입장에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당국 배제입장을 견지하면서 대남적대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한 정치·군사 등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남북간에는 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남북교류협력은 여전히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추진되고 있어 남북한 당국간 합의에 의한 안정적인 교류협력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세계각국이 정치 이념을 떠나 경제적 실리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상황에서 남북한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후 세계무대의 당당한 일원으로 나서는 것이 우리민족의 소망이다.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없이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교류협력 상황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결국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려는 우리민족 전체의 열망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남북교류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간 합의에 의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간 대화에 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분야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당국간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도적 장치 마련 이전이라도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 7 장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제1절 대북지원

제2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3절 이산가족문제

제4절 북한인권 개선 추진

제1절 대북지원

1. 북한식량문제의 본질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문제로 매년 200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식량난은 집단농장제도로 인한 노동의욕 저하,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비료·농약 부족, 수송체계 마비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년간 계속된 수해는 식량사정을 악화시킨 요인이다. 북한 식량난의 근본원인은 아닌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100만명 이상의 정규군을 유지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금수산기념궁전 건설 등 정치선전에 막대한 자원을 낭비함으로써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켰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문제는 외부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식량부족 사태를 가져온 구조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북한당국의 농업부문의 개혁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개선하는 자구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북한이 당장 필요로 하는 연간 부족량 200만톤 정도는 그들이 매년 투입하고 있는 GNP(1995년 223억달러)의 25%에 달하는

군사비 56억달러의 5~10%만 줄여도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는 중국이나 동구국가들이 농업부문 개혁을 실시한 후 2~3년만에 식량문제를 해결했던 것과 같이 농업개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2. 대북지원 기본방향

우리와 국제사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식량문제의 본질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유도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북한식량문제의 본질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첫째,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적십자간 합의에 따라 한적을 통해서 질서있게 추진해 나가며

둘째, 정부차원의 지원은 4자회담 등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차원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셋째, 국제적 차원에서도 UN회원국의 일원으로서 UN기구의 대북지원에 대해 우리의 경제력 등에 상응한 규모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지원물품을 군용으로 전용하지 않는다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군사비 감축 등 식량난 해소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식량난이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농업부문 개혁 등 체계적이고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 식량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97년 7월 전국의 20세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대북지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무조건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18.9%, 남북관계 현

실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72.3%,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8.7% 등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진전상황과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북한주민들에게, 그리고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려해서 질서있게 대북지원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력을 모아 나가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조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정부는 동포애와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적대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우선 아무런 전제조건없는 대북 곡물제공 용의 표명(1995.5.26, 통일부총리 대북성명)에 따라 개최된 남북간 북경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1995년 6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톤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당시 쌀 15만톤 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어 정부는 북한 식량난이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본격 대두된 이후인 1996년 4월 16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남북간 긴장완화와 상호 신뢰구축 차원에서 포괄적인 대북지원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1996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간 협력에 관한 입장을 밝히면서 4자회담 제의시 표명한 바 있는 북한 식량문제 지원에 대해 “동포애로써 도와왔고 국제적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며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기여할 용의가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장비 대여 등을 통해 수해농지 복구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지원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대북지원 의지는 1997년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1997년도 광복절 경축사는 첫째, 북한 식량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간 실질협력이 필요하며 둘째, ‘민족발전공동계획’을 남북대화를 통해 협의·추진하고, 셋째,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대한 협력을 제공하며, 넷째, 북한당국은 변화를

통해 자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대북지원의 4대방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의지표명과 함께 정부는 유엔기구를 통한 긴급구호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996년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 국산분유 203톤과 아동용혼합곡물(CSB) 등 300만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하고, 같은 해 9월 8일 수해로 파괴된 탈수방지약 제조공장 복구비용 34만달러를 UNICEF를 통해 지원하였다.

1997년에도 600만달러 상당의 아동용 혼합곡물 지원(1997.2), 1,000만달러 상당의 중국산 옥수수 5만톤과 국산분유 300톤 지원(1997.5)에 이어 의약품 및 영농자재 지원(1997.8) 등 UN기구를 통해 2,737만달러 상당의 식량 및 의료품, 영농자재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국제적 구호 전문단체인 UN기구에 현금 및 현물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세이하 아동과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해 지원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함께 정부는 1997년 8월에 개최된 남북한 및 미·중이 참가하는 4자회담 예비회담을 통해 북한 식량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남북한 농업협력방안 등 본격적인 대북지원 방안을 북측에 제시해 놓고 있다. 4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정부는 나진·선봉지역 투자, 남북교역을 통한 물자공급, 관광객의 방북허용 등 단기간내에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에 가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된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중·장기적인 남북협력방안을 북한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관계 현실상 지원식량의 분배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군사적 전용방지 등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취해 나가고 있다. 분배투명성 문제는 WFP,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의 노력으로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으나 북한은 여전히 지원된 식량의 분배결과 확인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분배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요원의 북한내 자유로운 이동의 통제, 북한의 열악한 교통문제, 모니터요원중 한국어 구사요원의 방북제한 등은 분배결과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분배투명성 보장 문제를 계속적으로 북한에 촉구해 나가는

한편, WFP, 국제적십자사 등에 모니터링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북한에 지원된 식량의 분배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4.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가. 추진경과

북한 식량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노력과 함께, 민간 차원에서는 1995년 9월 14일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의 대북지원 허용조치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인도적, 긴급구호 차원의 식량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996년 9월 북한의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한때 중단되기도 했으나, 1996년 12월 북한의 공식사과 이후 재개되었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계속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2년 연속 수해로 인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1997년 3월 31일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쌀을 비롯한 대북지원 품목 확대와 경제단체를 통한 기업체의 대북지원 참여를 허용하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한편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기탁성금이 증대되고, 지정기탁 등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1997년 4월 18일 대한적십자사는 대북 지원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접촉을 제의하였으며, 남북적십자는 1997년 5월 북경에서 2차에 걸친 대표접촉을 개최하여 5월 26일 「남북적십자간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세부내용은 「제8장 제4절 대북구호물자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참조)를 채택하였다. 이로써 그간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간 직접전달 방식으로 전환되고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남북적십자간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간 구호물자 직접 전달, 수송경로 및 대상지역 확대, 지원주체 명기 및 지정 기탁 등 그동안 국내 민간단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활성화와 함께 남북간 상호신뢰 조성 및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 1997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을 통해서는, 1차지원에 이은 2차지원 문제를 협의하고, 7월 25일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세부내용은 「제8장 제4절 대북구호물자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참조)를 채택하였다. 남북적십자간 2차분 지원합의는 그간 1차분 지원과정에서 제기된 구호물자 검수방식, 분배과정 입회 및 분배결과 통보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남북간 구호물자 직접전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창구를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하였다. 이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는 쌍방 적십자사를 통해 협의·해결해온 그간의 관례 및 남북합의서의 합의사항에도 부합된다는 측면과 적십자사가 국제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가장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가장 효과적으로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 남북관계의 상황에서 대북지원 창구를 개방할 경우 민간단체들간 무질서한 경쟁적 대북지원을 유발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였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지원에 대해 일부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직접전달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국내 민간단체들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었으며, 그 결과 남북적십자간 회담이 5년여만에 재개되어 남북간 직접전달을 실현할 수 있었다.

나. 지원현황

1995년부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간 직접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1995년 11월부터 1997년 5월까지는 19차례에 걸쳐 39억 7천만원(496만달러) 상당의 구호물자를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해 지원하였다.

1997년 5월 26일 남북적십자간 직접전달 합의이후에는 1차분으로 6월부터 7월말까지 옥수수기준 5만 3천 800여톤의 식량을 신의주, 만포, 남양과 남포항, 홍남항을 통해 전달했으며, 이어 지난 7월 25일 남북적십자간 2차

분 지원합의에 따라 8월부터 10월말까지 옥수수 기준 총 5만 2천 800여톤의 구호물자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11월이후 지금까지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지원과 남북간 직접전달을 포함하여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총 195억 7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한적을 통한 대북지원에 참여한 민간단체는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총 130여개 단체에 이르며, 1997년 5월 남북간 구호물자 직접전달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2차례의 대북지원의 경우 1차지원시 9개 단체와 2차지원시 25개 단체 등 총 34개 민간단체가 참여하였다. 또한 남북적십자간 합의에 따라 우리측 민간단체가 지정한 구호물자 분배지역(단체)은 1차 지원의 경우 북한의 9개 시·도 및 4개 단체였으며, 2차 지원시는 15개 시·도 및 13개 단체로, 북한의 전지역에 우리국민의 동포애를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대북 구호물자는 중국산 옥수수와 밀가루·라면·감자 등 국내산 물품을 구입·지원하였다. 전달경로는 육로의 경우 신의주·만포·남양 등 중국과의 국경지역을 통해 철도로 운송하였으며, 해로의 경우 흥남·남포를 통해 선박으로 운송하였다. 다만 우리측은 판문점을 통한 전달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이루어지지 못했다. 중국산 옥수수의 구입과정에서 초기에는 중국 현지시장사정에 따른 옥수수 정량부족 및 품질불량의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우리측은 구호물자 검수팀을 파견,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옥수수의 수송에 있어서도 화차배정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측과 합의한 기간내에 구호물자 전달을 완료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5.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1995년 8월 23일 북한이 최초로 유엔에 수해긴급지원 요청을 한 이후,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다. 유엔인도지원국(UNDHA)은 1995년 9월이후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WFP 등 유엔기구의 대북지원을 종합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한 바 있으며, 이러한 호소에 따른 국제사회의 기여를 토대로 WFP, FAO, UNICEF, WHO, UNDP 등의 유엔기구가 전문분야별로 식량 및 의료품 등을 북한에 지원해 오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십자사(IFRC)와 국제선명회(WVI), 카리타스 등 비정부간

기구(NGO)의 대북지원과 함께 중국, 일본 등 개별국가차원의 대북지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특히 국제NGO들은 1997년 후반기 들어 식량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의료지원 및 농업개발 지원 등으로 대북지원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1995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총 3억 7,820만달러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2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 최근 탈북현상의 특징

가. 수적 증가

북한주민의 북한이탈은 분단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1993년 이전까지는 그 수가 연평균 10명 이내였다. 그러나 김일성이 사망하던 해인 1994년을 기점으로 북한이탈주민이 50명 내외로 크게 증가하였고, 1997년에는 12월 10일 현재 68명이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1949년 이후 총 848명이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그중 667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나. 북한이탈 양상의 변화

최근의 북한이탈 현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의 체제이탈이 전계층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종전에는 군인, 남파간첩, 동구유학생 등 특수신분이 탈북자의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벌목공, 외교관, 해외상사 주재원, 교수, 정보원, 고위당간부 등 탈북자의 신분이 다양화되고 있다.

둘째,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웃과 연계하여 탈북하는 집단탈북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90년 이전에는 김만철일가 단 1건뿐이었으나 1990년 이후에는 입국자 250명 중 21가족 80명이 가족을 동반한 집단탈북이었다.

셋째, 북한이탈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다. 종전의 군사분계선 중심에서 탈피하여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가는 물론 제3국, 해상 등을 통한 탈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주민의 이탈동기가 다양해지고 있다. 종전에는 출신성분 차별에 대한 불만, 북한체제에 대한 염증 등 개인적 동기 및 정치적 동기로 탈북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식량 난, 생활고 등 경제적 요인이 북한이탈의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북한이탈 현상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북한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는 한 북한주민의 체제이탈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에 대한 국내수용 및 지원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667명으로 직업별로는 공무원(국영기업 포함), 은행원, 회사원 등 봉급생활자가 약 43%, 상업 등 자유업 종사자가 12%, 노동 및 무직자(가정주부·학생 포함)가 45%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소득현황을 보면 월수입이 100만원 이상인 자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 입국한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으나, 일부는 한국사회에 대한 기초지식의 부족,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충격, 경제적 궁핍, 언어소통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우리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극소수이긴 하나 사회일탈 현상마저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3.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북한이탈주민의 관리는 인도적 측면과 통일정책의 전반적 구도하에서 접근함으로써 통일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 전원수용, 유인억제, 민주시민으로 양성, 자활능력배양 등 4대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이에 입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동포애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입국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가능한 전원 수용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1997년 현재 약 1,5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관련국과의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조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둘째, 포용하되 유인하지 않는다. 우리의 대북정책기조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다. 북한이탈을 조장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통일에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북한이탈주민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북한주민의 체제이탈을 유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셋째,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속에서 획득한 경험은 통일후 이질화된 남북주민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유익하게 활용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시적 물적 지원보다는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에 역점을 둔다.

이러한 기본입장 아래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라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대체하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1996년 국회를 통과하여 1997년 1월 13일 공포되고, 7월 14일 발효되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정의 의의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령들이 북한이탈주민법의 체계속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향후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북한이탈주민 정책추진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다.

총 33개조의 조문과 13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법은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과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정착지원 체계

가. 입국 및 보호관리

(1) 신변보호 및 보호결정

북한주민의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통보하며,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보호여부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일원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통일원장관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에 입국하여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2) 시설보호

일반적으로 통일원장관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보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보호대상자들도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필요한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일원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정착지원시설 건립

현재 정부는 1999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우선 100명 수용규모의 정착지원시설 건립을 준비중이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설은 단순

한 숙소의 개념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동 정착지원시설 건립전까지는 통일교육원 등 기존의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활용하여 소정의 사회적응교육과 희망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 초기 신분안정 및 생계 보조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지원시설 보호기간중 취직을 하게되며, 정부는 이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1997년 7월 14일 법시행 이후 49명이 취직과 주민등록 발급을 받았으며, 이들에 대해 1인 평균 700만원의 정착금과 840만원의 주거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정부에 제공한 재화나 정보에 대한 대가로 11명이 보로금 혜택을 받았다.

다. 자활능력 제고

(1) 학력 및 자격인정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과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하게 적응·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법 시행이후 20명이 학력인정을 받았고, 9명에 대하여는 자격인정절차가 진행중이다.

(2)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실시 및 취업알선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 걸친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동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7년 5월 2주간에 걸쳐 통일교육원에서 실험교육이 실시되었고, 정식교육도 이미 두차례(1997.8~9, 11~12) 실시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활능력을 제고하고, 이들이 우리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취업이 중요하므로, 희망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라. 사회배출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을 마치고 사회로 배출되면 취학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 편입학 지원과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소정의 자격을 갖춘 경우 군인·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될 수도 있다. 법 시행이후 18명의 취업희망자 가운데 5명은 취업을 알선받았고, 나머지 13명에 대하여는 취업알선 절차가 진행중이다. 또한 특별임용은 신청자 2명 중 1명이 임용되었고, 1명은 절차가 진행중이다. 한편, 법시행 이전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80명이 학자금 보조혜택 등 교육지원을 받고 있다.

(1) 거주지 편입후 보호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로 전입하여 스스로 생활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의 해소와 지역사회에의 순조로운 적응을 위해 거주지보호 및 지원을 2년간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착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며, 통일원장관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원조치를 행하게 된다. 법 시행이후 45명이 의료보호 대상자에 편입되었고, 생계곤란자 27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되었다.

(2) 정부·민간의 협력

통일원 등 1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기구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1997.7.14 발족)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여부 결정, 보호기간의 단축·연장에 관한 사항, 보호의 중지·종료 및 보호·지원 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정착금·보로금·주거지원금의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대책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거주지보호, 신변보호 등 구체적 사안을 협의함으로써 대책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책협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순조롭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외에도 민간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한바, 이러한 민간지

원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1997년 8월 18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사회·종교·언론·경제계 등 각계 지도급 인사가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동 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 및 직업상담, 한가족 결연 등 지역사회 편입지원과 취업 또는 재취업 지원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게 된다.

제3절 이산가족문제

1. 정부차원의 해결 노력

가. 당국간 및 적십자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

우리나라의 이산가족문제는 1945년 8·15해방과 함께 닥친 38선에 의한 분단과 6·25사변에 의한 동족상잔의 결과, 남북한이 단절된 채로 살아오게 된 역사적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50여년간 남북한간의 첨예한 대치 상태로 인해 이산가족들이 겪고 있는 인간적 고통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이 가혹한 것으로 반세기가 지났어도 가족의 생사조차 모르거나 마음놓고 편지 한 장 주고받지 못하고 비원의 한을 품은 채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이 서로 안부를 전하고 만나며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에 관한 문제로서 남북한의 정치·군사 현안과는 별도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산가족의 재회는 인도적 문제일 뿐 아니라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필수적 과정이기 때문에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의 제의로 8월 20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 회의실에서 첫 회담을 시작한 이래 20여년간 70여회(본회담 10회, 예비·실무회담 60여회)의 회담을 해 왔다. 그러나 1985년에 한차례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9.20~23, 각 151명)만을 성사시켰을 뿐 교착과 중단을 거듭해 왔다(이산가족 상봉수는 우리측이 35가구, 북한측이 30가구임).

회담에서 우리측은 인도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가족·친지의 생사와 주소를 알리는 문제, 서신거래, 상봉, 재결합 등 양측이 합의한 의제 5개항의 추

진에 노력하였으나 북한측은 ‘법률적·사회적 장애제거와 환경개선’이라는 선결조건 주장을 계속해 회담이 교착되었으며, 제2차 고향방문단 교환을 위해 개최된 제6차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1989.11.21)에서 동년 12월 8일 총규모 571명(고향방문 각 300명)의 교환에 합의하였으나, 북한측은 공연내용을 문제삼아 무산시켰다.

한편 정부는 1990년 7월 20일 이산가족 상봉과 민족자유왕래 실현을 위해 8월 13일~17일을 ‘8.15 민족대교류기간’으로 선포하고 동 기간만이라도 북한측에 교류와 개방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8월 4일~8월 8일 간 방북신청을 접수, 총 61,355명의 방북 희망자 명단을 북한측에 전달하려 하였으나 북한의 접수거부로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1992년 7월 ‘7·7선언’ 4돌을 맞아 국무총리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통해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 상봉 및 왕래, 자유귀환·정착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 했으나 북한측의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주체는 책임있는 당국이기 때문에 1990년 9월부터 남북고위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을 추진하면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하여 제5차 회담(1991.12.10~13)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강구키로 합의(제18조)하였으며, 제8차 고위급회담 (1992.9.15~18)에서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 제3장에서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관해 합의하였다. 그후 우리측은 가족방문단의 정례교환, 판문점 및 휴전선에서의 면회소와 우편물 교환소 설치 등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계속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의 소극적 자세로 아직까지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1992.5.5~5.8)에서는 첫 시범사업으로 8·15를 기해 노부모 방문단을 교환(각기 100명)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측이 실무절차 협의과정에서 전제조건을 제시하여 무산되었다.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후 1993년 3월 19일 우리정부가 이인모를 아무런 조건없이 방북을 허용한 후에도 북한은 이렇다 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남북간에 기합의된 이산가족문제를 협의·실천하기 위한 당국간 및 적십자회담의 재개를 30여회의 성명과 대북전통문 등을 통해 기회있을 때마다 촉구하였음에도 성의있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주요한 제의로는 당시 남북간의 현안인 핵문제와는 별도 추진을 위해 1993년 3월 26일 통일부총리와 1993년 5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이 이산가족

교류를 위해 판문점 우편물교환소와 면회소 설치를 촉구했었으며, 1995년 2월 3일에는 통일부총리 대북성명을 통해 이산가족들이 필요한 생활물자를 주고받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그간 중단되었던 남북적십자회담이 1997년 5월부터 민간차원의 대북식량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북경에서 재개되어 이산가족 문제도 우리측이 거론하였으나 북한측에서 별도 문제임을 이유로 거부하여 진전이 없는 상황에 있다.

정부는 하루속히 당국간 및 적십자간의 회담을 재개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에 주력해 나가고, 남북통신·통행 협정 체결을 통해 자유로운 서신교류를 위한 우편물교환소 설치와 가족상봉을 위한 한반도내 면회소를 설치하여 자유왕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이산가족간의 교류를 제한하고 있는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이산가족들이 겪고 있는 인간적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진정으로 우리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바란다면 하루속히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나. 재북가족과의 접촉절차 마련 및 민원 접수창구 확대

남북한간의 합의에 의한 교류와 협력이 어렵게 되자 정부는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여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제도적으로 보장·지원하고 있다. 재북가족을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는 20일전까지 통일원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되고, 신청은 우편신청이나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정부는 이산가족의 접촉신청에 대하여는 정치·군사문제와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승인·지원해 왔다.

접촉신청이 접수된 후 20일이내에 처리결과가 문서로 신청인에 통지되며 승인유효기간은 통상 2년이기 때문에 재승인을 받아 계속 접촉을 추진할 수 있다. 재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하면 된다. 이산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재북가족과 접촉(통신, 제3국 상봉 등)한 경우는 접촉후 7일이내에 통일원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면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 이산가족들이 통일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불편을

없애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3년 7월 1일부터 대한적십자사 본사 및 13개 시·도 지사에서, 1994년 8월 1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34 개 시·군·구 협의회에서, 그리고 1997년 4월부터는 이북5도위원회 민원실 및 14개 시·도 사무소에서도 관련서류를 비치해 놓고 민원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1997년 11월 현재 지방의 민원접수 창구를 통해 560여건의 신청을 받아 승인한 바 있고, 앞으로도 접수창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2. 이산가족 당사자 노력의 지원

가.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및 가족상봉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간 및 적십자 차원의 남북간 접촉이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의 틀내에서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직접 제3국을 통해 재북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안부서신을 교환하며, 제3국에서 상봉하는 접촉을 지원함으로써 교류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북한당국이 해외동포와의 교류만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산가족당사자들의 책임과 부담하에 제3국을 통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나 재북가족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어렵고, 제3국에서의 상봉과정에 관련국의 법 적용 문제가 따르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3,262가족이 승인을 받았고 이중 999가족이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4천여통의 서신을 접수하였고, 153가족이 제3국에서 상봉하였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북한당국이 남북간 이산가족의 교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들이 재북가족과 접촉하는 방법은 ①친척·친지 등 해외동포의 방북을 이용한 가족의 주소·생사 확인 및 교류, ②이산가족의 교류를 주선하는 민간단체 이용, ③국내외에서의 중국 조선족 등 중개인의 도움, ④국제행사 참가를 통한 교류 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제3국을 통한 교류의 중개지역은 초기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이 대부분이었으나 한·중 수교 이후는 중국을 통한 교류가 급증하여 61%에 이르며 더욱이 제3국 상봉은 현지 동포들의 도움에 의해 거의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신을 교환하고 있는 남한가족을 원적지별로 구분해 보면 함경도가 363가족(37%)으로 가장 많으며, 남한에서 출생한 이산가족도 183가족이 있다. 한편 신청인의 현거주지별 현황은 서울이 635가족(64%)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기, 부산 등으로서 이산가족 교류자중 84%가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7년에 교류를 신청한 721건에 대해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60대가 281명, 70세이상이 321명으로 60세이상자가 84%를 차지하고 있다. 재북가족 관계에서는 형제·자매가 369명(51%)으로 가장 많았고, 부부·부자관계가 267명(37%), 기타 조카·4촌·고모·이모 등의 관계였다.

정부는 이러한 제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진되는 교류가 마음놓고 공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남북간의 협의에 의한 판문점이나 휴전선에서의 우편물 교환소와 면회소 설치·운영을 통해 가족상봉도 하고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

나. 민간단체의 활동 및 국제사회를 통한 노력

정부의 다각적 노력과 함께 국내의 민간단체 및 언론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국내외의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계속 전개해 왔으나 남북이산가족교류에 대한 활동은 남북관계의 특성상 제한되었으며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다.

아울러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가족재회를 위한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1982년 12월 30일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중에 있으며 ‘이산가족상봉추진회’ 등의 이산가족교류 민간주선단체 및 해외동포들이 국내외에서 남북가족찾아주기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남북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활동중인 비정부간기구(NGO)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1천만재추위’에서는 ‘남북이산가족재회촉구 범세계서명운동’을 1993년부터 전개, 153개국에서 역대 노벨상 수상자 32명 등 21,202,192명이 서명한 명부를 유엔인권기구 및 국제적십자사에 전달하여 남북이산가족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바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계기가 되어 1997년 8월 제49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는 북한당국에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최초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제4절 북한인권 개선 추진

1. 북한의 인권정책과 실태

가. 북한의 인권정책

북한에서의 인권은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 원칙과 계급주의에 기초하여 천부적이며 절대적인 권리가 아닌 불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은 인권을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곧 사람의 자주적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정치용어사전」은 인권이란 “인민이 가져야 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며 “계급적 원쑤들에게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인권이 “제국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반동적, 반인민적 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이며 기만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자유민주세계의 북한인권문제 제기를 사회주의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평화적 이행전략’의 하나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권문제가 세계적인 주목을 끄는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대외 인권외교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서방세계 및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2년 평양에 ‘조선인권연구협회’를 설립하고, 이 기구를 통해 대외적인 인권공세 차원에서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없음을 거듭 천명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하여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데 대하여 이를 비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탈냉전시대에 들어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고립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비판여론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1991년과 1995년 국제사면위원회의 방북조사를 허용하고,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활발한 인권외교를 벌이고 있다.

나. 북한의 인권실태

(1) 시민적 · 정치적 권리

북한은 전인민을 핵심 · 동요 · 적대계층 등 3계층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51개 부류로 세분하여, 의식주 생활은 물론 진학, 직장선택 등에 있어서도 성분별로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도 헌법상으로만 보장할 뿐 당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거주 · 이전의 자유도 엄격히 통제된다.

(2)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북한은 현재 식량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북한 전역이 삼림의 황폐화, 공기 · 수질 · 토양의 오염, 동 · 식물의 남획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파괴가 심각한 실정이며, 대만의 핵폐기 물 수입시도 등으로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3) 공개처형

1997년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의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1970년 이후 1992년까지 최소한 23명을 공개처형하였다. 대부분의 증언자들이 최소한 1건 이상의 공개처형을 목격한 점으로 보아 외부에 알려진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정치범수용소

현재 북한에는 10여개소의 수용소에 20여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실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는 모든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상태에서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다.

(5)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실태

식량난 및 경제난 악화, 사회통제 이완 등으로 북한주민들의 중국·러시아 등으로의 탈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지국 및 북한 공안요원에 의한 체포 및 강제송환, 불법처형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도 1996년 9월 발표한 「재러시아 북한난민 보고서」에서 탈북자에 대한 즉결처형 및 송환후 처형에 대한 실태를 발표하여 탈북자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6) 납북억류자 및 국군포로

북한은 1955년 이후 현재까지 3,743명을 납북하여 이 중 447명을 송환하지 않고 있다. 납북억류자 447명은 어부가 407명으로 가장 많으며, KAL기 승무원 및 승객이 12명, 해군 I-2정 승무원이 20명이고 기타 8명이다. 강제 납북된 사람들 중 일부는 KAL기 승무원이었던 성경희, 정경숙과 같이 대남방송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이용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납북억류자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사실은 1994년 7월 30일 국제사면위원회 특별보고서 「북한정치범에 관한 새로운 정보」에서도 확인되었다.

납북억류자 외에도 국방부 실사(1993.7.15~1994.10.30)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19,392명으로 추정되는 6·25 국군포로를 송환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미송환 국군포로의 존재는 조창호, 동용섭씨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1977년과 1978년 5명의 고등학생을 납치하여 이들을 대남공작요원들의 ‘이남화교육’ 교관으로 활용하고 있음도 밝혀졌다.

(7) 북송교포

재일 한국인의 북송은 1959년 8월 일·북적십자간 협정에 의거하여 1959년 12월부터 1984년 7월까지 187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기간중 93,340여 명이 북송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본인 처가 6,630여명(일본국적자는 1,830명)이었다. 북한은 남북이산가족과 마찬가지로 북송교포 등에 대해서도 고향방문을 허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송교포와 ‘일본인 처’의 인권문제는 북·일 수교협상 및 대북식량지원과 맞물려 1997년 11월 일본인 처 15명의 고향방문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시 국

제적 관심을 끌고 있다.

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전개

가. 북한인권 문제의 접근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일은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후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고,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구체적 실태파악이 곤란한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인권문제는 한 국가·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관심사항이며, 국제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인권문제가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

(1)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과거 우리는 남북관계의 대결성과 북한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990년 국제인권규약 가입을 계기로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오고 있다. 1995년 9월 28일 공노명 외무부 장관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했고, 1997년 9월 29일 유종하 외무부 장관도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거론하였다.

또한 1994년 12월 통일원 산하의 연구기관인 민족통일연구원내에 ‘북한인권 정보자료센터’를 설치하여 북한인권 관련 정보·자료의 체계화를 기하고, 1996년 12월 17일에는 통일원내에 인도지원국을 신설하여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정부조직도 정비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억류자 및 국군포로 문제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현황파악 등 실태조사를 거쳐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으며, 북한환경문제도 인권문제 차

원에서 접근하여 대만의 핵폐기물 수입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해 오고 있다.

(2) 국내 인권단체의 활동

오늘날 국제사회에서의 인권문제는 NGO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민간단체의 활동은 미약한 수준이다. 국내에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단체는 1994년 12월 설립된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와 1997년 8월 설립된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의 미약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인권과 관련된 국내 민간단체들은 국제NGO 와의 연대를 통한 북한인권문제의 국제적 공론화와 국내 인식기반의 확충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자료의 협조 등을 통한 정보교류체계의 구축 등 이들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는 1990년 2월 제46차 유엔 인권위원회 이래 매년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1994년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대표 및 호주·노르웨이·스웨덴 등이 북한 당국에 대해 국제적 인권실상 조사활동에 대한 문호 개방과 국제인권법규의 준수를 촉구하였고, 제51차 회의와 제53차 회의에서도 북한인권문제가 거론되었다. 1994년 제29차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총회(APPU)와 1995년 국제언론인협회(IPI)에서도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또한 1997년 8월 21일 제49차 유엔인권소위원회(공식명칭은 차별방지·소수민보호 소위원회)에서는 국제인권기구에서 최초로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8월 23일 국제인권규약 B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탈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통보하였다. 대북 결의안 내용은 옆의 표와 같다.

이와 함께 비정부간기구(NGO)에 의한 북한인권개선 노력도 전개되었다. NGO에 의해 북한인권 상황이 처음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은 1973년부터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에 의해서이지만, 그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며, 1988년 아시아 워치(Asia Watch)와 미네소타 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처음으로 발간되면서부터였다. 그 이후에도 해리티지 재단, 국제사면위원회, 케네디 인권센터, 국제인권협회 등의 NGO 인권보고서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개선을 촉구해 오고 있다.

3. 향후 추진방향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없이는 남북한을 하나로 엮는 민족공동체의 형성은 불가능하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일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국내적 노력과 병행하여 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는 남북대화 등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고려해 나가는 한편, 북한인권에 관한 국내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국내 민간단체와 국제NGO간 연대를 강화해 나가면서, 국제인권기구들이 북한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개선을 촉구해 나가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은 북한의 개혁·개방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북한동포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추진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제 8 장

남북대화

제1절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제2절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제3절 남북간 북경회담

제4절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대표 접촉

제1절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1. 배 경

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 제의와 북한측의 반응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우리정부는 당시 국제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던 북한의 핵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과 화해·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에서 북한 핵문제의 최우선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정부는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협력 발생 시한인 1993년 6월 12일이 얼마남지 않았던 5월 20일,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인성 국무총리 명의의 서한을 북한측에 보내 “민족적 차원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이같은 대북 제의는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대북제의로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5월 25일 강성산 정무원 총리 명의의 대남 서한을 보내, 우리측이 제의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통일문제 해결을 위하여 쌍방 정상들이 만나는 문제와 남북사이의 현안문제들을 타결하기 위한 최고위급의 중대한 뜻을 전달하는 특사를 교환하자”고 역제의하였다. 북한측의 이같은 역제의는 북한 핵문제 논의를 피하고 특사교환과 같은 정치적 협상방식을 통해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탐색하는 한편, 북한측이 1993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과 ‘4대요구사항’ 등을 중심으로 남북간 현안문제를 논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북한측의 공개적 특사교환 제의는 이례적이었으며, 특히 특사를 ‘통일을 담당하는 부총리급’으로 일방적으로 지명하여 제의한 것은 관례에 벗어난 것이었다.

우리정부는 북한측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5월 29일 대북 전화통지문을 보내 “핵문제 해결 및 이에 수반되는 그 밖의 남북간 현안문제와 북한측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실무적 차원에서 협의하기 위하여 6월 5일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갖자”고 다시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5월 31일 대남전통문을 통해 “책임적이고 권위있는 특사들의 교환방문이 이루어지면 쌍방 정상들이 만나는 문제와 북남사이의 현안 문제들을 타결하기 위한 최고위급의 중대한 뜻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쌍방이 이미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를 토의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북한측은 특사들의 교환방문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이 아닌 쌍방 실무자접촉을 가질 것을 다시 제의하였다.

이후 6월 2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남북간에는 8차례 전화통지문을 교환하였으나 당국간 실무대표접촉 재개에 대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못하였다.

우리측이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특사교환 과정에서가 아니라 실무대표접촉에서 협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는 북한측이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 문제를 앞세움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핵문제의 협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미국과 북한은 1993년 6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주유엔 미국대표부에서 제1단계 고위급접촉(미국측 대표: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 북한측 대표: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을 갖고 북한의 NPT 탈퇴 효력의 임시정지와 미·북간 대화 계속을 골자로 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발표하였다.

같은 배경에서 우리 정부는 6월 22일 대북전통문을 통해 “실무대표접촉에서 핵문제에 관한 기초적 협의와 함께 특사교환 문제도 협의한다”는 한결 포용적이고 신축성있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무대표접촉 개최를 다시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6월 26일 정무원 총리 담화를 통해, 남측의 부당한 태도로 말미암아 특사교환 제안이 실현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실무대표접촉을 거부하였다.

나. 핵문제 우선해결을 위한 남북특사교환 제의

북한측은 1993년 9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여 특사교환 방식에 변화된 제의를 하였다. 그것은 특사를 ‘쌍방 최고책임자가 임명하는 임의의 급’으로 하며, 의제에 있어서 비핵화문제 및 긴장완화와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대책 문제를 우선적으로 명시한 것이었다.

우리정부는 이같은 북한측의 입장 표명을 그들의 자세변화로 간주하고, 북한측이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한다면 회담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새로운 특사교환 방식을 북한측에 제의하기로 하였다. 즉 9월 2일 국무총리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보내,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고 그 밖의 남북간 협의문제들을 함께 다루기 위하여 쌍방 최고책임자가 임명하는 특사를 교환하자”고 제의하고 “특사교환의 실무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각기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실무대표접촉을 9월 7일 갖자”고 제의하였다.

우리측의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제의에 대해 북한측은 9월 6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측이 핵전쟁 연습을 하지 않고 국제공조체제를 추구하지 않는데 대한 납득할 만한 태도를 9월 8일까지 표시해야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이 9월 10일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우리정부는 9월 8일 대북전통문을 보내 남북간의 대화에 어떠한 전제 조건도 붙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측에게 실무대표접촉에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9월 10일에 실무대표접촉을 위해 우리측 대표 3명을 판문점에 내보낼 것임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쌍방 특사교환에서 핵문제를 포함한 현안문제들이 순조

롭게 해결되자면 비핵화의 실현과 배치되는 핵전쟁 연습을 중지해야 하며, 또한 동족사이에 핵문제를 해결하자면 핵문제를 가지고 외세와 결탁해서 대화 상대방을 모해하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다시금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우리측에게 9월 20일까지 전제조건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하길 바란다면서 그런 기초위에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이 열릴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의 전망을 어둡게 하였다.

그러나 10월 2일, 북한측은 돌연 강성산 정무원총리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에 대한 답변을 실무접촉에 나와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실무대표접촉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접촉일자를 10월 5일로 수정 제의해 왔다.

2. 진행 경과

가. 특사교환을 위한 제1~3차 실무대표접촉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갖자는 우리측의 제의(1993.9.2)에 대해 북한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실무대표접촉이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측 실무대표는 송영대 통일원 차관을 수석대표로 김일무 총리실 심의관, 장재룡 외무부 미주국장 등 3명이었으며, 북한측은 박영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최승천·최성익 부장이 대표로 나왔다.

3차례에 걸친 실무대표 접촉(10.5~10.25)에서 우리측은 남북사이의 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면서 특사의 임무, 특사교환 방법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특사교환을 위한 절차문제를 마무리지어 빠른 시일 내에 특사교환을 실현시키자고 강조하였다.

우리측이 제시한 「남북사이의 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북한측은 특사의 임무로서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문제, 긴장완화와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대책 강구문제, 전민족대단결 도모문제, 그밖의 현안문제, 남북최고위급이 만나는 문제 등을 명시한 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초안)을 제시하면서도, 특사교환을 위해서는 ‘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 2개 조건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

써 특사교환을 위한 절차문제 토의를 거부하였다.

제4차 실무대표접촉을 하루 앞둔 1993년 11월 3일 북한측 대표단장 박영수는 돌연 대남전통문을 보내, 제4차 접촉을 예정대로 가질 수 없다고 통보함으로써 실무대표접촉을 중단시켰다.

북한측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우발적 도발대비 문제도 협의될 예정이라는 우리측 국방장관의 발언을 “군사적 대결을 공연한 것”이라고 왜곡·비난하면서 남북 실무대표접촉 개최거부의 구실로 내세웠으나, 실제적인 이유는 11월 1일 제48차 유엔총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과 11월 3일~4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1994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유보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특사교환을 위한 제4~8차 실무대표접촉

제3차 실무대표접촉 중단 이후 북한측은 남북대화는 외면한 채 미국과의 대화에만 전념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가운데 1994년 2월 25일 미·북 뉴욕접촉에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북한측은 미·북 합의문에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재개’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간 특사교환이 필요하다는 한·미 양국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1994년 2월 28일 송영대 실무대표접촉 수석 대표의 대북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최고당국자의 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대표접촉의 재개를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정부가 제4차 실무대표접촉 재개를 제의하게 된 것은 북한의 IAEA 사찰수용을 계기로, 그동안 조성되고 있었던 한반도 긴장상황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측의 제4차 실무대표접촉 재개 제의에 대해 북한측은 1994년 3월 1일 실무대표접촉 북측 대표단장 박영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그동안 우리측이 요구해 온 핵전쟁연습 중지 및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을 남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접촉일자를 1994년 3월 3일로 수정 제의하여 왔다.

그리하여 제4차 실무대표접촉이 1994년 3월 3일 판문점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양측의 대표단은 1차때와 동일하였다.

그동안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이 4개월여간 중단상태에 있었

지만 남북 쌍방은 그동안 3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특사교환 절차문제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절차문제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이 접근되어 있으므로 북한측이 회담외적인 문제만 제기하지 않는다면 특사교환 문제는 쉽게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첫발언을 통해 실무대표접촉이 4개월여간 중단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특사교환 절차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새로운 입장표시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제3차 접촉에서 주장하던 이른바 핵전쟁연습 중지와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 2개 요구조건을 또다시 거론하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신형무기 반입중지 및 김영삼 대통령이 핵무기를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고 한 발언 취소 등 새로운 2개 요구조건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이같은 북한측의 태도로 특사교환과 관련된 실무절차문제가 토의되지 못한 채 제4차 실무대표접촉은 종결되었다.

제5차 실무대표접촉(1994.3.9)에서 우리측은 첫 발언을 통해, 쌍방은 이미 최고당국자의 뜻에 따라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간의 주요 현안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특사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것은 한시도 지체 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우리측은 실무대표접촉의 성격에 맞지도 않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북한측의 이른바 ‘4개 요구조건’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실무절차 합의서(안)의 채택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지난 제4차 접촉에서 내놓은 4개 요구조건의 선결을 재강조하면서도 절차문제에 있어서 특사의 임무, 특사교환순서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새로운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특사의 임무문제에 있어서 제3차 접촉에서 제시한 5개 문제 이외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방도를 확정하는 문제, 민족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문제’ 등 2개항을 새로이 추가한 7개항을 제시하였다. 토의과정에서, 쌍방은 회의 진행순서에 의견만 제시하여 이날 접촉도 성과없이 종료되었다.

제6차 실무대표접촉(1994.3.12)에서 우리측은 “5차례의 접촉을 진행한 결과 합의서의 형식에는 쌍방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내용면에서도 특사의 임무, 특사의 방문 순차 및 교환날짜 등을 제외하고는 쌍방의 안이 유사하므로 이같은 쟁점을 집중 토의하여 절차문제를 마무리 짓자”고 촉구하였다.

그런데 북한측은 4개 요구조건과 관련하여, “남측이 1994 팀스피리트 협정 및 국제공조체제 문제에 대해 민족적 차원에서 노력을 더 경주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최근 남측 최고당국자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을 4개 요구사항의 타당성에 대한 이해의 표시로 보고 이에 유의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4개 요구조건을 철회할 것을 시사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엉뚱하게도 “남과 북이 특사교환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안에 특사를 교환하기로 완전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담아 공동보도문 형식을 통해内外에 발표 할 것을 새롭게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특사교환 의지와 그 필요성은 그동안 쌍방의 전통문 교환과 여러차례의 접촉을 통해 이미 거듭 확인된 바이므로 공동보도문은 불필요하며, 합의서를 즉각 타결하면 특사교환 의지도 확인되고 특사교환에도 완전 합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사교환 절차문제와 관련, 쌍방은 합의서(안)을 비교하면서 토의를 진행한 결과 총 28개항 중 특사의 임무, 특사의 방문순차 및 교환날짜, 체류일정을 제외한 25개항을 합의한 것으로 의견일치를 본 후 특사의 임무에 대한 쌍방입장을 개진하였으나 ‘특사의 임무’ 등 본질문제 3개항에는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였다.

제6차 접촉에서 북한측이 4개 요구조건을 사실상 철회하고 쌍방간 특사교환 실현의지에 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는 공동보도문 발표를 제의한 것은内外의 여론을 의식하고 예정된 일자(3.21)에 미·북 3단계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다. 결국 이날의 제6차 실무대표접촉도 북한측이 ‘모양 갖추기’ 식의 회담태도로 일관함으로써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되었다.

제7차 실무대표접촉(1994.3.16)에서 우리측은 특사교환 절차에 관한 쌍방 미합의사항인 특사의 임무, 특사의 방문순차 및 교환날짜 등에 대해 절충안을 제시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쌍방이 특사교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특사교환을 조속한 시일안에 실현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공동보도문 채택을 다시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제시한 절충안을 중심으로 절차문제 타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북한측이 특사임무 7개항과 공동보도문 발표를 계속 고집함으로써 절차문제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회담은 종료되었다.

제8차 실무대표접촉(1994.3.19)에서 우리측은 실무대표접촉이 공전되고 있는 것은 북한측이 4개 요구조건과 공동보도문과 같은 부당한 사항을 제기하고, 특사의 임무를 세분화하여 절차문제 토의를 복잡하게 하는 등 그동안 의도적으로 조성한 장애요인 때문임을 지적하고, 실무대표접촉 본연의 임무인 절차문제 토의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측이 특사교환을 통해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오히려 ①4개 요구조건에 대한 명백한 태도를 표명할 것, ②특사교환을 미·북 3단계회담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 ③대결입장을 포기할 것 등에 대한 우리측의 태도 표명을 거듭 주장함으로써 절차문제 토의는 진전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한측이 회담 외적문제를 제기하고 실무절차 토의를 의도적으로 지연·기피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특사교환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①우리 최고 당국자에 대한 비방·중상을 즉각 중지할 것, ②우리 국민들에 대한 반정부 투쟁선동을 즉각 중지할 것, ③특사교환에서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한다는 태도를 명백히 할 것을 ‘긴급제안’ 형식으로 북한측에 요구하였다.

다. 북한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과 접촉 결렬

북한측은 우리측의 이러한 요구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돌연 우리 정부가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반입 발표 등을 한 것은 ‘대화포기 선언’, ‘특사교환 포기 선언’, ‘전면대결 선언’, ‘전쟁선언’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박영수 대표단장은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불바다로 될 것이다”라는 전쟁위협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북한측의 ‘서울 불바다’ 등 전쟁위협 발언과 함께 회담 분위기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북한측이 차기 접촉일자의 결정마저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퇴장함으로써 8차례 진행되어 오던 실무대표접촉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북한측의 태도는 1994년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된 영변의 7개 신고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정에서 북한측이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하였음이 밝혀지고, 이에 따라 미·북 제3단계 회담의 성사까지 불투명해지자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을 의도적으로 결렬시키고자 기도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제2절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1. 배경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취임사와 1994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일성 주석과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NPT 탈퇴 선언, 중요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거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개발 의혹을 야기시키고 있었다. 국제사회에서 NPT를 주도하고 있던 미국은 이같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우려하면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개발 의혹을 야기한다면 유엔을 통한 제재조치 등 강력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국제사회의 조치에 북한이 ‘전쟁불사’ 발언을 함으로써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기감마저 감돌았다.

이같은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한 후 1994년 6월 18일 서울로 와서 김영삼 대통령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은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지자고 한 제의에 대해 김일성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정상회담에 호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겠다”고 천명하였다.

2. 진행 경과

가. 부총리급 예비접촉 : 합의서 타결

정부는 1994년 6월 20일 이영덕 국무총리 명의로 북한 강성산 정무원 총리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부총리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예비접촉을 6월 28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6월 22일 강성산 정무원 총리 명의로, 우리측의 제의를 환영하며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1994년 6월 28일 판문점에서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이 접촉에는 우리측에서 이홍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정종육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윤여준 국무총리 특별보좌관이, 북한측에서는 김용순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안병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백남준 정무원 책임참사가 대표로 참석하였다.

접촉은 쌍방 첫발언에 이어 「예비접촉 합의서」 제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접촉에서 양측은 합의서에 서명하기까지에는 전체회의 2차례, 수석대표간 단독접촉 2차례, 합의서 문안 정리를 위한 대표접촉 1차례 등 회의 속개와 휴회를 반복하면서 남북회담사상 가장 긴 13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날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홍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금일 접촉은 양측 최고당국자간에 아무런 조건없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원칙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 대표는 “김일성 주석이 김영삼 대통령을 이미 초청한 바 있고, 김대통령도 평양방문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므로 회담은 평양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회담 시기가 8·15가 끼어 있는 8월 중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4개 항목으로 정리해 온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합의서(초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이 합의서 초안에서 “쌍방은 1994년 7월 1일부터 회담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행동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애매한 내용의 항목을 끈질기게 주장하여 회담분위기를 긴장시켰다.

쌍방은 제시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토의에 들어가 상호 남북정상회담의 실현 의지를 확인하고 장소, 시기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회담개최 시기가 결정되고 상호주의 원칙에 합의한다면 장소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신축적인 입장을 제시한 반면, 북한측은 개최시기를 8월 15일로 고집하면서 남북회담에서 관례적으로 적용해 온 상호주의 원칙문제에 관해서는 “회담을 정례화할 것도 아니며 남북관계가 특수관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환 방문이라는 상호주의원칙을 적용하는 국제관례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이러한 회담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석대표 단독접촉을 제의하였는 바 북한측이 이에 응해 나옴으로써 쌍방 수석대표 사이에 토의의 장이 마련되었고 회담은 급진전을 이루어 기본적 사항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어서 문안정리를 위한 별도의 대표접촉을 가졌으나 북한측은 체류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회담분위기 조성문제를 합의서내의 별도 조항에 삽입해야 할 것을 주장하여 대표접촉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쌍방은 수석대표간의 접촉을 다시 재개키로 하고 문안정리를 위한 대표접촉을 끝냈다.

이어 속개된 쌍방 수석대표간 단독접촉에서 쌍방 수석대표들은 정상회담 장소 및 시기문제, 차기 정상회담 개최문제, 분위기 조성문제, 실무절차 토의를 위한 대표접촉문제 등에 합의를 이루었고 마침내 합의서 문안 작성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어 합의서 문안 작성을 위한 대표접촉을 가진 후 전체 대표가 참석하는 두번째 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가 마련되었으며, 이로써 무려 13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회담은 종결되게 되었다.

이날 예비접촉에서 북한측이 ‘단 한차례 평양 개최’ 만을 시종 주장한 데 대해, 우리측은 이번 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데 동의하는 만큼 “다음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북한측이 다음 회담을 쌍방 정상의 뜻에 따라 정하기로 하자고 변화된 입장을 보임으로써 우리측은 이를 수용하였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는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있는 일로서 북한 핵문제를 비롯, 남북관계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内外의 기대를 모았다. 다음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 전문이다.

나.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제1차 대표접촉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에서 합의한 데 따라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접촉이 1994년 7월 1일 판문점에서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우리측 대표로는 윤여준 국무총리 특별보좌관과 구본태 통일원 통일정책실장, 엄익준 국무총리 보좌관이, 북한측에서는 백남준 정무원 책임참사와 최승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최성익 부장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서로 제시한 합의서(안)을 비교·검토한 후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다. 토의에서 북한측은 정상회담의 횟수와 배석 인원수, 선발대 파견, 체류일정 통보, TV 방송중계장비 반입문제 등에서 우리측의 제의를 거부하며 자기측의 주장을 고집하였다. 특히 북한측은 부총리급 예비접촉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에 나열한 절차사항을 단순하게 정리하려는 입장이었고, 우리측은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절차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자는 입장이었으므로 토의의 진전이 어려웠다.

다.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제2차 대표접촉 : 합의서 타결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제2차 실무대표접촉은 1994년 7월 2일에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회담형식, 체류일정, 통보일자 문제, 왕래절차 등에서 북한측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을 제시하였고, 북한측도 우리측 절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우리측 안에 근접한 절충안을 제시하여 토의 전망을 밝게 하였다.

우리측은 쟁점이 되고 있는 선발대 파견문제와 관련하여, 1차 선발대는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 동안 25명을 파견하며, 2차 선발대는 방문 6일전인 7월 19일 파견하되 인원은 50명으로 하자고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1차 선발대의 명칭을 ‘실무접촉’으로 하고 파견기간은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3박 4일, 인원은 10명으로 하며, 2차 선발대는 방문 5일전 즉 7월 20일 파견하되 규모는 10명으로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쌍방은 절충을 거쳐 현장답사와 실무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기 17명이 참가하는 실무자 접촉을 7월 13일에서 16일까지 평양에서 가지며, 대표단 방문 3일전에 25명의 선발대를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경호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우리측 경호요원의 활동과 쌍방 합동경호문제, 경호장비 휴대문제 등을 실무자 접촉시 담당자들이 협의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고, 우리측은 평양 현지에서 실무자간의 접촉도 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경호와 통신분야 ‘실무책임자급 접촉’을 판문점에서 갖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양측은 통신관계 실무자 접촉을 7월 7일, 경호관계 실무자 접촉을 7월 8일 ‘판문점’에서 각각 가질 것에 합의하였다.

TV 중계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중계차량, 발전차량, 장비운반차량

등의 반입과 20명의 방송기술 요원의 활동을 보장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측은 북측의 중계차량 및 장비를 포함, 위성중계에 필요한 일체의 편의를 생중계에 비견될 정도로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여 합의를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해서 정상회담의 실무절차는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합의를 보았다.

남북이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라. 통신 및 경호 실무자접촉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1997년 7월 7일 판문점에서 남북 통신관계 실무자접촉이, 7월 8일 남북 경호관계 실무자접촉이 각각 남북 3명씩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실무자접촉에서는 TV 실황중계, 남북직통전화 이용, 휴대용 위성통신 전화 이용 등의 통신문제와 대통령 평양 체류 기간중의 경호범위, 경호방법 등 경호문제 대부분에 합의를 보았으며 미합의 사항은 7월 13일부터 열리는 실무자 접촉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3. 김일성 사망과 정상회담의 무기 연기

실무절차의 합의에 따라 1994년 7월 9일 우리측은 평양 실무접촉(7.13~16 예정)에 참가할 인원의 명단을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넘겨주었고, 북한측은 총리 명의로 된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우리측 연락관에게 전달해 왔다.

그러나 같은 날인 7월 9일 북한측은 라디오 및 TV 특별방송을 통하여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 02시에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은 심근경색과 심장쇼크의 악화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1994년 7월 11일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김용순의 명의로 우리측 이홍구 부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북한측의 유고로 “예정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통지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은 무기한 연기되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다만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그 시기와 절차에 대해 새로운 협의를 거쳐 정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다.

제3절 남북간 북경회담

1. 배경

북한의 식량난 등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3월 7일 베를린 방문 중 가진 독일 외교3단체 초청연설에서 “북한에 곡물을 비롯한 필요한 원료와 물자를 장기 저리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으며, 5월 15일 제44차 국제언론인협회(IPI) 서울총회 개막 연설 시에도 대북 곡물 제공 의사를 거듭 밝혔다.

1995년 5월 26일 일본을 방문한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리성록 위원장은 와타나베 전 부총리 등 연립여당의 방북단 대표들과 회담 시 북한의 식량난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일본이 보유중인 쌀 잉여분을 일정량, 일정기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한국쌀도 “전제조건이 없으면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날 나옹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의 발표문을 통해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현실적인 곤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민족 복리차원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 없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북한측은 그들의 공식입장 표명을 계속 미루어 오던 중, 6월 9일 우리측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북한측의 조선삼천리총회사가 6월 13일 중국 북경에서 만나 이 문제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제의해 왔다.

정부는 KOTRA로 하여금 ‘선 당국간회담, 후 민간상사간 접촉’ 방침을 북한측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북한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6월 17일 우리측의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과 북한측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전금철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간 북경회담이 성사되기에 이르렀다.

2. 진행 경과

가. 제1차 남북간 북경회담 : 합의서 타결

북한에 대한 쌀지원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쌍방 당국 대표단간의 제1차 북경회담은 사안의 민감성 및 협상사실 노출을 극력 기피하는 북한측 입장 등을 감안, 1995년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북경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제1차 남북간 북경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을 수석 대표로 하여, 김용환 국무총리 보좌관, 추준석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 김형기 통일원 제1정책관 등이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북한측에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전금철을 단장으로 하여, 김봉익 조선삼천리총회사 총사장, 김영진·리성덕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참사 등이 대표로 나왔다. 우리측 이석채 수석대표는 “어려울 때 서로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순수한 동포애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쌀거래 문제를 성사시키려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본 회담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교역관련 상사들간에 기술적·실무적 문제들을 실현시키도록 하며, 쌍방 당국이 실행을 보장하는 문제들을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 대표단장 전금철은 “쌍방이 쌀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① 사상·제도적 차이를 떠나 민족이익 최우선 및 민족대단결 원칙에서 해결, ② 아무런 조건없는 순수한 정신·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③ 속결 원칙으로 집중 토의를 통해 단시일내 결속, ④ 쌀문제에 충실하며 다른 문제와 혼성·혼탕 금지” 등을 내세우면서 먼저 총량 규모부터 협의할 것을 주장했다.

우리측은 북한동포의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대한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면서 1차분 쌀지원 규모를 5만톤으로 제시하고, 추가지원 문제는 국가예산의 뒷받침 및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향후 쌍방 당국간에 경협에 대한 보다 폭넓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한측은 총규모 5만톤에는 난색을 표명하면서 우리측이 전체 총량 규모는 언급치 않더라도 1차 지원량만이라도 늘려 줄 것을 요청하고 쌀 제공관련 거래조건·계약회사·수송문제·포장단위·하역항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 특히 거래조건과 관련, 북한측은 사실상 무상쪽에 더 비

중을 두고 타결되기를 기대하면서도 일부 물량은 20년 거치·5년 상환 등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우리측은 쌍방이 대외적으로 명분을 살리면서 실질적으로 북측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한편, 쌀수송선의 국적 표시문제와 관련, 우리측의 쌀 수송선박이 북한 항구에 입항시 쌍방의 국기를 모두 게양치 않도록 구두 양해사항으로 합의하였다.

제1차 북경회담에서 쌍방간에 합의 도출이 어려웠던 최대의 쟁점 사항은 쌀지원 총량문제였다. 우리측은 총량 규모부터 먼저 정하자는 북한측 주장에 대해 1차로 쌀 5만톤을 제공하고 추가로 증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대응하였으나, 북한측은 1단계로 10월 말까지 쌀 20만톤 제공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또한 합의서의 서명자 직함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필히 쌍방의 당국자가 서명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우리측 명의는 대한민국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하고 북한측 명의는 전금철의 당 직함을 사용토록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북한측은 처음에는 당·정 직함 사용을 완강히 거부하다가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위원회 위임에 의하여 조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전금철’로 한다는 데 합의를 이루었다.

우리측은 북한측의 식량사정이 다급하다는 점 등을 감안, 동포애 차원에서 북한측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토록 한다는 결단에 따라 ①북측에 1차로 쌀 15만톤 전량 무상제공, ②우리측 선박으로 청진·나진항에 인도, ③쌀의 원산지 불표기, ④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민간상사로서 우리측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와 북한측의 조선삼천리총회사를 지정, ⑤1995년 7월 중순에 제2차 회담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 쌀지원에 관한 합의’를 성사시켰다. 쌍방 대표단은 6월 21일 대북 곡물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우리측은 이날 서울에서 통일부총리가 동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하였다.

남북 당국간에 협상을 통해 대북 쌀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1994년 이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극도로 심각해진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북녘 동포들을 동포애적 차원에서 도와주려는 우리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북 쌀지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었

다.

나. 제2차 남북간 북경회담

제1차 북경회담 이후, 우리측 쌀 수송선 ‘씨 아펙스호’에 북한측의 인공기 강제 게양 사건, 북한측에 피랍된 우리측 ‘우성호’ 선원의 억류 장기화 등 남북관계의 악재가 연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차 북경회담이 1995년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우리측 대표단에는 유광석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 제3심의관이 대표로 새로 참가하였으며, 북한측도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림태덕이 대표단에 추가로 합류하였다.

이석채 수석대표는 1차회담 합의 이후 우리측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는데 북한측은 현안문제 해결에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는데 유감을 표명하고, 쌀 추가지원은 고사하고 1차분 15만톤의 잔여분 인도마저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우리측은 이같은 상황타개를 위해 북한측이 조속한 시일내에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측 식량문제의 장기적·안정적 해결을 위해 농업·경공업·에너지 분야에서 남북 쌍방이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 전금철 단장은 남북간의 쌀 협력이 동족간에 상부상조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고 우리측의 합의사항 이행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쌀 협력문제 논의에 다른 문제들을 혼탕시키지 말 것”, “남측의 쌀 제공량이 다른 나라보다 적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우리측이 쌀 추가제공 규모 및 제공 시기를 제시해 주어야 ‘여타 현안 문제’ 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인공기 강제 게양사건과 관련하여 청진항에서의 북한측 관계자들의 과잉행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 북한측이 인도적·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측에 의해 피랍되어 북한내에 억류되어 있는 우성호 선원을 최단 시일내에 송환해야 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남북경협 문제는 ‘여타 문제’ 가 아니라 북한측의 쌀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지원 방안임을 설명하였다.

북한측은 인공기 사건은 결코 북한측의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과 우성호

선원 송환 문제도 북측의 관계당국과 수차 협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해명하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는 쌀 문제만 논의하고 다른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임을 반복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쌀 지원문제를 중심으로 먼저 추가제공 규모에 대한 토의를 진행해야 이와 관련되는 경협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제2차 북경회담은 아무런 진전없이 끝나고 말았다.

다. 삼선비너스호 억류사건 관련 실무접촉

1995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북한에 보내기로 한 쌀 15만톤에 대한 수송 작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북한측은 7월 31일 포항항을 출발, 8월 2일 청진항에 도착한 우리측의 쌀 수송선 ‘삼선 비너스호’ 1등 항해사가 사진 몇장 찍은 것을 정탐행위로 몰아 선박과 선원들을 청진항에 억류시키는 한편, 8월 10일 개최 예정이던 제3차 북경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김형기 대표와 유광석 대표를 북경에 파견하여 북한측에 대하여 동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제3차 북경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표 접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쌍방 대표간 직접접촉을 거부함에 따라 우리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정부대표의 지휘를 받으면서 북한측 조선삼천리총회사와 접촉, 협의를 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의 ‘정탐행위 시인’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나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선원들의 신변안전 및 조속 귀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북한측의 요구사항을 절충하여 ‘재발방지 대책강구, 선원·선박의 조속송환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전문을 8월 12일 북한측에 전달함으로써 삼선비너스호 선박과 선원 전원의 신변안전 및 조속 귀환에 합의하였으며, 9월 하순경 제3차 북경회담을 재개한다는 데에도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라. 제3차 남북간 북경회담

1995년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된 제3차 회담에는 우리측 대표단 중 일부가 교체되어, 이석채 수석대표를 비롯하여 정세현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구본태 통일원 통일정책실장, 김용환 국무총리 보좌관, 유광석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 심의관, 신언상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운영2부장 대표가 회담에 참가하였으며, 북한측은 2차 회담때와 변동이 없었다.

우리측의 이석채 수석대표는 “우리의 대북 쌀지원을 계기로 남북간 상호 신뢰회복 및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2차 회담시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북측 대표단의 약속을 믿고 국내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쌀 수송을 계속하였으나, 남·북관계는 쌀 제공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북한측을 강도높게 비난하였다. 특히 이 수석 대표는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가운데 남북대화의 정상화, 남북협력 사업의 보완조치 마련 등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북한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촉구하였다. 첫째, 북한측은 우성호 송환, 대남 비방·중상 중지 등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을 이행치 않은 것은 물론, 안승운 목사 납치사건, 김용순 당비서의 쌀제공 비하 발언 등 협력 분위기를 해치는 사건들을 야기시킨 데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둘째, 회담장소 문제와 관련, 제3국에서 남북의 당국대표가 만나 상호 협력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앞으로 회담은 한반도내의 서울·평양 또는 판문점에서 개최되도록 해야 하며, 쌍방의 대표가 당국의 신임장을 교환하는 등 대표자격을 보다 확실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당국간 대화의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향후 협력사업의 보완장치 마련을 위해 이번 쌀 수송과정에서 돌출된 사건과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북한측이 이미 약속한 바 있는 선박-선사간 통신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삼선비너스호 사건을 교훈삼아 향후 남북간 왕래인원의 신변안전보장 장치를 보다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

우리측은 상기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북한측의 상응조치가 없을 경우 우리정부가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우리측의 악화된 국민정서상 한치도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특히 우성호 선원 송환은 북한측의 의무임을 강조, 이번 회담중 반드시 송환하거나 아니면 송환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측은 우성호의 범법행위 자체는 사실이며 북측법에 의해 단속되는 것은 당연하나 송환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부상자들의 치료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본 대표단의 기본사명은 쌀협력의 문제인 만큼 여타

현안문제는 다른 회담의 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우리측이 제기한 회담장소를 국내로 옮기는 문제와 관련, 북한측은 남북간 북경회담이 현 남북관계의 여건상 쌀지원이라는 특수문제로, 특수시기에 나온, 특수접촉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동 문제가 단시일내에 결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과 북측 대표단이 이에 관한 아무런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과제로 안고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의 수재에 대한 지원문제도 거론되었으나 북측 전금철 대표는 ‘조선큰물피해복구대책위원회’의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북측 수해 상황을 설명하고 남측이 지원해주면 받겠다고 하면서도 굳이 공식요청의 형식은 피하려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우리측이 수재지원도 당국간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함에 따라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

3차 남북간 북경회담은 쌀 추가지원 규모에 대한 우선적 협의를 주장하는 북측 입장과 우성호 선원의 송환 및 회담장소를 한반도 내로 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이 대치하는 가운데, 별다른 합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북한측은 1995년 12월 22일 “우성호 선원들을 돌려 보내겠다”고 발표하고 4일 뒤인 12월 26일 판문점을 통해 선원 5명과 나포당시 사망자 2명과 병사자 1명 등 3명의 시신을 우리측에 송환하였다.

그러나 3차례 진행된 남북간 북경회담은 회담장소 등에 대한 입장이 좁혀지지 못한 채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제4절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대표 접촉

1. 배 경

정부는 북한의 식량사정을 감안하여 1994년 3월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동포에 대한 식량지원 용의 표명을 해왔으며, 1995년 7월에는 북경회담을 통해 쌀 15만톤을 직접 지원하였다.

1995년 8월 북한은 이례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홍수가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유엔에 긴급 구호 요청을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1995

년 9월 이후 정부차원에서 WFP, 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총 1,648만 달러 상당의 대북식량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차원에서의 대북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단일창구로 하여 북한동포 돋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사정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이에 정부는 1997년 3월 31일, 대북지원 품목과 참여 범위 확대조치를 내려 민간차원의 대북한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였다.

그런데 쌀 15만톤의 직접 전달 이후 약 2년여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민간 단체들의 지원활동을 모아 북한에 전달해 온 지원물품들은 남북간에 직접 전달되지 못하고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해 북한측에 간접 전달되고 있었다. 간접 전달방식은 남북간 직접 전달의 경우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대한적십자사는 어려움에 처한 북한동포들을 위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직접전달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1997년 4월 18일 강영훈 총재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한적십자회 이성호 위원장 대리에게 보내, 4월 29일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간 대표접촉을 갖고,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해 북한측에 보내고 있는 지원물품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한 절차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한적의 제의에 대해 북한적십자회는 바로 다음날인 4월 19일 전화통지문을 보내, 접촉장소는 중국 북경으로, 접촉날짜는 5월 3일로 하자고 수정 제의해 왔다.

우리측은 남북적십자인들이 만나는 장소를 굳이 남의 나라로 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표접촉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소문제를 포함하여, 회의진행절차에 관한 실무문제를 판문점에서 실무요원이 만나 협의할 것을 4월 24일 다시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접촉장소를 북경으로 계속 고집하면서, 판문점 접촉을 기피하였다.

우리측은 접촉장소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시일을 지체하는 것은 끊주리는 북한동포를 생각할 때 인도적인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 북한측의 입장을 수용하여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 3명과 수행원 3명을 중국 북경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진행 경과

가. 제1차 접촉

대북구호물자 지원절차 마련을 위한 남북적십자간 제1차 대표접촉은 1997년 5월 3일과 5일 이틀 동안 중국 북경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이병웅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조명균·김장균 대한적십자사 긴급구호대책본부 운영위원들이, 북한측은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서기장 백용호를 대표단장으로 정영춘·김성림 북한적십자회 큰물피해복구위원회 위원들이 대표로 참가하였다. 우리측 이병웅 수석대표는 “북한에 대한 보다 많은 민간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1997년 3월 31일 지원품목과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동포들의 식량사정이 긴박한 만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갖추기 위해 남북적십자사간에 직접전달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송방법, 인도·인수장소 등 지원절차 문제에 관한 우리측 의견을 북한측에게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에게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지원 식량과 물품들을 전달받아 북한지역내에 분배하고 있는 과정과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지원식량과 물품의 직접전달 지원절차문제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인 지원물량과 지원시기 등을 우리측이 먼저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의 대북구호물자 지원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나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한번에 보내는 형태가 아니라, 민간단체들의 성금과 물품들이 모아지는 대로 북한에 보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느 만큼의 양을 보내겠다고 확정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우리측은 이러한 문제를 북한측에 이해시키려 노력하는 한편, 우선 성금이나 구호물품이 모아지는 대로 북한동포들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절차문제에 대한 토의를 하자고 역설하였다.

남북 양측은 이틀동안 접촉을 갖고 상대측을 이해시키려 노력하였다. 우리측은 지원절차 문제가 정해져야 국민적 지원이 따른다면 ‘절차문제 합의’를 주장한 데 반해, 북한측은 먼저 ‘지원물량 규모 제시’와 ‘지원시기’를 밝혀야 지원절차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긋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남북 쌍방은 다음 접촉에서 다시

만나 합의점을 찾기로 하고 제1차 대표접촉을 종결하였다.

나. 제2차 접촉 : 합의서 타결

제1차 대표접촉 이후 한적은 민간지원단체 대표들에게 1차 대표접촉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측이 ‘지원물량 규모’와 ‘시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가급적 각 지원단체의 지원규모와 시기를 파악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한적은 대북지원 규모 및 시기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5월 16일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총재는 북한적십자회 이성호 위원장 대리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1차 접촉에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근 5년만에 남북적십자인들이 만나서 의견을 나눈 데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2차 대표접촉을 5월 23일 판문점이나 서울, 평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면서 이 접촉에서 북측이 요구하는 지원 규모도 밝힐 것임을 시사하였다.

북한측은 5월 23일 대표접촉 개최에 동의하면서도 장소에 대해 중국 북경을 또다시 고집함으로써 제2차 대표접촉이 1997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게 되었다. 제2차 접촉의 대표단은 지난 제1차 접촉시 대표단과 변함이 없었다.

우리측은 북측이 1차 접촉에서 지원품목과 총량·시기를 밝혀 달라고 요구한 데 따라, 지원품목은 옥수수를 위주로 하여 밀가루·라면·분유·식용유 등으로 하며, 1차 지원분은 옥수수 기준으로 약 4만톤 정도를 1997년 7월말까지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수송방법, 인도·인수 장소 등을 명시한 「남북적십자사이의 구호식량 및 물품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면서 절차문제 토의에 들어갈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1차분이 7월말까지라면 2차분은 규모가 얼마나 되며, 대한적십자사가 모금하려는 총량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세밀한 부분까지 일일이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물품 전량이 국민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측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문제에 합의해 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금활동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측이 제시한 합의서(안)을 토대로 절차문제 토의에 들어갈 것을 다시금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총량규모 제시가 절차문제 협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집요하게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측의 복안 탐색을 계속하다가 결국 준비해 온 절차문제 합의서(안)을 제시하며 절차문제 협의에 응하였다. 양측은 합의서 문안조정을 위한 실무접촉에 들어 갔으나, 북한측이 지원총량을 옥수수 10만톤으로 해줄 것과, 전달시기를 7월 중순으로 해줄 것을 새로이 요구함으로써 또 다른 장애에 부딪히게 되었다.

우리측은 이러한 북한측의 새로운 요구에 대해, 1차 지원규모를 5만톤 정도로 하고 지원시기를 7월 중순까지 전달되도록 노력하되, 북한측이 함경북도 남양과 평안북도 만포를 지원물자 인도장소로 추가 지정할 것과 포장물품에 우리측 지원단체명과 대한적십자사를 명기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요구하였다.

2차례에 걸친 실무대표접촉과 5차례의 전체회의, 세차례의 문안 정리를 위한 접촉을 거쳐, 마침내 1997년 5월 26일 대표단 전체회의에서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다.

남북적십자사간의 이 합의는 1985년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 채택 이후 12년만에 이루어진 합의였다. 이 합의서 타결은 북한동포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의 구현이라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또한, 대북지원에 있어 남북간 직접전달의 필요성과 대북지원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질서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을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는 대북지원물자를 기탁하는 민간단체들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기탁자 이름명기, 제공물자의 기존 상표 부착, 분배대상자 및 대상지역 지정 등 요구사항 대부분이 합의사항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상품의 포장에 붙어 있는 상표 및 표지를 그대로 부착하게 함으로써 대북지원물자를 재포장하는 데 따르는 금전적·시간적 낭비를 줄이는 한편, 그 절약된 비용만큼 대북지원이 증대되게 된 것을 의미하며, 또한 수혜받는 북한주민들에게 지원물자를 남측의 동포들이 보낸 것임을 알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다음은 1997년 5월 26일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서명

한 합의서 전문이다.

다. 제3차 접촉 : 합의서 및 양해사항 타결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은 1997년 7월 12일, 우리측이 제1차 대북지원을 평가하고 새로이 제2차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접촉을 제의하는 대북전화통지문을 북한측에 보냄으로써 개최되게 되었다.

우리측은 접촉장소를 우리나라 안의 편리한 장소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이 여전히 북경을 고집함으로써 1997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우리측 대표단은 1, 2차 때와 변동없이 대한적십자사 이병웅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의 대표와 3명의 수행원이 참가하였다. 북한측은 새로이 북한적십자회 서기장으로 임명된 최경린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7월 23일 첫날회의에서 북한측 수석대표는 “1차 지원물자 인도·인수가 예정된 기일내에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서 “민족내부간 유무상통, 상부상조의 좋은 선례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지원해준 우리측의 단체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지원사업을 편 대한적십자사 등에 감사함을 표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1차 지원물자 중에 어렵게도 불량품질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누구를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훈으로 삼자는 것이라면서 우리측의 2차 지원 품목과 수량, 전달시기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측 이병웅 수석대표는 “우리는 약속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하면서 1차 지원량이 약속한 대로 원만하게 수송되었음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1차 지원경험을 참고하여 2차 지원절차의 보완을 북측에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이 수록된 합의서(안)을 북측에 제시하였다.

우리측이 제시한 합의서를 본 북한측 대표단은 지원규모를 1차분보다 많이, 지원품목을 쌀·옥수수 위주로, 지원시기를 9월 20일까지로 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물자수송 및 인도·인수지점의 추가에는 반대하였고, 지정기탁 대상자 확인 협조는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거부하였으며, 분배투명성 보장문제, 기자 취재활동, 인도요원 편의 보장 문제 등은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사실상 거부의사를 나타내었다.

남북간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7월 23일과 24일 양일간 협의를 계속

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의 지원규모 5만톤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원시기를 9월말까지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북한측은 동사진 촬영을 허용하고, 비자를 심양영사관에서도 받게 하며, 물자 인수후 정기적 분배내역을 20일이내 통보한다는 데 동의하였으나, △분배과정 입회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지정기탁 문제는 반대하였고, △취재활동 보장 △인도요원 편의보장 문제는 1차때의 합의대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양측은 문안정리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 7월 24일 오후 2차례에 걸친 문안조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합의를 도출, 7월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합의서’와 ‘양해사항’에 서명함으로써 제2차 대북 구호물자 전달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측은 북한측이 합의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합의내용 이행에 장애를 조성할 우려가 있는 부분과 전달절차상 나타난 일부 실무적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북한측의 반대로 합의서 내에 명기하지 못했지만, ‘양해사항’으로 별도 합의함으로써 전달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이날 합의한 합의서와 양해사항이다.

라. 제4차 접촉

제4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은 1997년 11월 7일 북한측에서 먼저 제의하여 왔다. 북측은 이 제의에서 국제적십자사연맹이 분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우리측의 요구에 유의하면서 제4차 접촉을 북경에서 개최하여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이미 진행한 사업과 금후 사업문제를 협의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2차 지원분부터 구호물자 전달후 20일 이내에 통보해 주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분배내역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통보해 준다는 분배내역도 8월 12일부터 10월10일까지의 지원물자는 빠진채 10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의 분배내역만 통보해 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11월 8일 즉각 2차 지원분 전체에 대한 분배결과를 통보해 줄 것과, 국제적십자사연맹 대표들이 동 연맹 구호대상지역 이외에 우리측 구호물자가 전달된 지역에 대해서도 분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4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은 2차분 지원에 대한

북측의 분배결과를 통보받고 난 후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북측에 통보했다.

이와 같은 우리측의 요구에 대해 북측은 11월 17일 분배결과를 보내오면서 다시 제4차 접촉을 갖자고 통보해 왔다. 그러나 북측이 보내온 분배내역은 우리측의 지정전달 요구문건을 종합한 것에 불과하여 합의내용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북구호물자의 분배투명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정원식 총재는 제4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1997년 12월 22일 북경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북한측이 동의함으로써 제4차 남북적십자대표 접촉이 개최되게 되었다.

제 9 장

통일의지 함양과 국민합의 기반 조성

제1절 통일교육

제2절 대국민 통일홍보

제3절 해외통일홍보

제4절 민간 통일활동 지원

제1절 통일교육

1. 통일교육의 기본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

가. 통일교육의 의의와 과제

통일교육은 우리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민들 사이에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통일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 그리고 통일성취에 대한 현실적 장애와 위협요소에 대한 경각심도 인식시켜 모든 국민이 균형감 있고 합리적인 통일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에는 분단인식과 통일문제에 관해서 국민들간에 다양한 견해차이가 존재하여 왔다. 분단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고 6·25사변을 겪은 기성 세대와 그렇지 못한 젊은세대 사이에 시각의 차이가 있고, 또 지향하는 세계관과 이념에 따라 문제접근 방향도 다를 수 있다.

통일교육은 각계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귀일점을 발견하여 이것을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통일의 새로운 발판을 구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모든 교육기관(유치원·초·중·고·대)을 통해서 시도되어야 하되,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제도교육 밖에 있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도 보다 합목적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제도교육 밖에서 이루어질 통일교육은 학교교육과 긴밀히 연계되고 체계화되어야 하며 일반사회인들에게는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통일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균형있는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통일교육은 각계각층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민족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평화적이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통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그런 통일을 하루 속히 이루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전개될 제반 국내외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국민은 각자가 민족의 성원으로서 폭넓은 인식과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민족공동체적 삶과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의를 지닌 통일교육은 이제 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함과 아울러 이후의 민족공존공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체제역량을 증대시켜 통일의 과정뿐만이 아닌 통일 이후 까지도 대비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경제교육, 준법교육, 세계화교육 등이 포함된 포괄적 통일교육의 실시가 더욱 요망되고 있다.

나. 통일교육 기본방향

통일교육의 의의와 과제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인식 아래 정부는 다음과 같이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건전한 북한관, 그리고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제반상황

과 통일 이후의 긴장과 갈등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인식과 대응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셋째, 세계속의 새로운 통일조국 및 한민족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는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원은 이러한 교육방향과 교육주제, 지도관점, 교수방법 등을 종합정리한 통일교육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학교와 각종 사회교육기관에 널리 보급하였다. 이러한 교육지침의 개발과 보급은 각급 교육기관이 남북관계의 진전 및 통일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통일의식의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통일원은 1970년대이후 「통일안보교육용 교수지침서」를 마련하여 배포·활용하여 왔으며 ‘7·7선언’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통일환경이 유연하게 변화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민족통일구현 등 자신감과 긍지에 찬 미래지향적 통일관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통일교육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1992년 개발된 「통일교육지침서」의 주요내용은 교육목표, 중점방향,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참고교재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 교육·연구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당시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각종 통일교육과정과 활동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교육시 특히 유의해야 할 기본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1995년에 펴낸 「통일교육기본방향」에서는 통일교육의 의의와 과제, 통일논의의 기본전제, 분단현실의 이해, 통일여건의 인식, 통일정책, 통일준비, 통일교육, 통일교육 실행상의 유의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일관성 있고 실질적인 통일교육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통일교육 활성화 추진 노력

(1) 통일대비 교육 강화

대내외 통일환경의 급변으로 통일이 현실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통일교육은 남북간의 이질성을 극복하면서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민족공동체 사회의 건설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준비

차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단이래 남북한간에 적대적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교류협력도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한 가운데 정치·경제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이질성이 심화되어 왔다. 앞으로 통일을 성취하는 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심리적 갈등과 후유증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상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통일교육도 통일준비태세를 확립하여 통일을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통일대비 역량을 배양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할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에 따라 통일원은 1996년부터 통일대비요원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응교육도 실시함으로써 교육영역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감안한 통일대비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2) 교육교재 개발

통일교육방향을 실제 교육에 투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이 이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통일원은 기본교재로서 「통일문제이해」와 「북한이해」 2종을 개발하여 각종 통일교육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통일문제이해」는 우리정부의 통일정책 기조 등 통일문제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북한이해」는 분야별 북한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북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찬되었다.

또한 남북관계 주요현안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과 북한의 정책노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여타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어쓴 「통일문답」을 부교재로 개발하여 여러가지 쟁점사안에 대한 해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대상자의 특성과 관심분야를 고려한 교육자료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5년도에는 8종류의 대상별 통일교재를 발간하여 관련 교육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대상별 교재는 교육대상자를 구분하여 그들의 특성, 관심분야, 수준 등을 고려, 60~70쪽 분량의 소책자 형식으로 평이하게 서술하여 교육대상자의 자발적 관심유도와 활용도를 높였다.

교재구성은 제1편에 공통 교육내용으로 「통일문제의 이해」를 수록하였

고, 제2편에는 대상별 내용으로 나누어 ‘북한의 체제와 이념’(공직자 편), ‘북한의 교육실상과 통일대비교육 과제’(교직자 편), ‘통일과 경제적 과제’(상공인 편), ‘북한경제와 주민생활’(근로자 편), ‘통일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여성 편), ‘대학생과 통일문제 이해’(대학생 편),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이해’(문화·예술인 편), ‘북한의 사법제도와 통일안보’(경찰·공안 편) 등을 수록하였다.

범국민적 통일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개발·보급된 이러한 교재들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교육대상자의 관심과 수준 등을 반영, 누구나 쉽게 읽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서술됨으로써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통일문제가 현실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국민적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통일교육을 활성화해야 하나, 현행 통일교육은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을 체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그 체제를 확립하고, 방향을 설정하며, 통일교육을 촉진·지원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법적규범위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자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원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사회교육기관에서의 통일교육실시 등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1997년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통일외무위원회에 심사계류중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독일 등 분단국의 통일교육사례와 사계전문가 및 교육계의 의견을 깊이 참고하였다. 동 법안은 단순히 우리사회 내부의 통일역량을 미리 갖추는 일에 그치지 않고 향후 통일과정에서 핵심과제가 될 남북주민통합에도 대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사회통일교육의 강화

가. 일반 사회통일교육 활동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일반 국민에 대한 통일 교육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통일교육원에서 직접 주관하는 교육은 초청 교육과 순회교육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초청교육은 통일교육을 원하는 기관·단체 등을 통일교육원으로 초청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교육대상별로 전문과정, 일반과정, 특별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전문과정은 각 지역이나 소속기관, 그리고 학교 등에서 각계각층의 국민과 학생 및 군인들에게 통일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전문위원, 사회교육기관 교수요원, 교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교육내용은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교과목으로 편성 운영되며 기간은 3~6일이다.

일반과정은 공직자반, 사회기관·단체반, 대학생반, 기획·자원교육반 등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며,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 함양 및 교육·계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3일 기준으로 편성되어 실시하고 있다.

특별과정은 북한을 방문하는 기업인이나 종교인, 경수로 건설인력 등을 대상으로 남북 현안문제와 방북시 필요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는 교육이다.

김영삼정부가 출발한 1993년부터 1997년 11월 말 현재까지 초청교육실적은 총 104,868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1996년 말에서 1997년 초까지 1997년도 대학합격생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특별 통일교육은 판문점 견학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학신입생들의 건전한 통일관 확립과 통일의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순회교육은 시간이나 거리 등 제반 여건상 초청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관이나 단체의 간부 내지 지역의 여론 선도층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원의 교수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초청교육보다는 단기간

이지만 광범위한 지역과 많은 대상자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초청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적극 실시되고 있다.

이중 1981년도부터 시작된 해외순회교육은 그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해외동포 밀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교육을 통해 해외교민사회에 대하여 우리 통일정책의 합리성,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 경수로사업, 4자회담 등 남북한간의 현안문제와 남북대화의 진전상황을 널리 알리고 이해시킴으로써 평화통일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과 동시에 해외동포들의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95년에는 미국, 러시아, 동남아 등지에서, 1996년에는 유럽, 러시아 등지에서, 1997년에는 호주,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지에서 교민회 간부, 상사주재원, 종교인, 언론인, 유학생 등 해외동포사회의 여론 선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통일대비요원 양성

통일에 대비하여 통합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전문요원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통일 전후 과정에서 남북한 통합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행정요원과 교육·홍보활동에 종사할 교육요원의 양성에 착수하였다.

교과내용은 통일업무에 대한 일반적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남북관계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통일대비 기초분야와 북한실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여 북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형성하게 하는 북한이해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통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각 분야별로 설명하는 통합업무 이해부분과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체제전환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내용 등으로 교과목이 설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통일대비행정요원 과정은 각 부처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4·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4주간 교육하고 있으며, 통일대비교육요원 과정은 윤리·사회과 중·고교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 11월 현재 교육이수자는 1996년에 통합대비요원 59명, 1997년에 통일행정요원 275명, 통일교육요원 288명 등 도합 622명에 이른다.

교육대상과 관련 행정요원의 경우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체 직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교육요원은 지금의 사회·윤리과 중·고교사뿐만이 아닌 각종 사회교육기관의 교수요원 등도 포함함으로써 사회전반에 통

일대비 인적자원을 증가시킬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이수자에 대한 지속적 연찬교육 실시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이들의 통일업무 수행능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다. 북한이탈주민대상 사회적응교육 실시

1997년부터 북한이탈주민 3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우리사회에 대한 기본 이해, 실생활 안내교육, 직업훈련 준비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 단계별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자본주의사회에 적응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대상 교육은 1997년 7월부터 발효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과 연계,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라.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즉 통일·북한문제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교과과정에 통일교육 내용을 적극 반영토록 하며, 책자·슬라이드 등 시청각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각급 사회교육기관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위원, 사회교육기관 교수요원, 민방위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3. 학교통일교육의 지원

가.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지원

(1) 교과과정 조정

정부는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6차 교육과정(1992~현재)에 탈냉전의 대외적 상황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일안보교육’을 ‘통일교육’으로 명칭을 바꾸고,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 및

통일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2 도덕과 중3 사회과목에 통일환경 변화와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게재하였으며, 고등학교 정치경제와 국민윤리 과목에도 1990년대 이후의 신국제질서 형성과 남북한 유엔가입, 각종 합의서 채택 등 남북관계 진전상황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통일방안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2) 시범학교 지원

각급 학교의 효과적인 통일교육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 초·중·고교 가운데 서울 송정초등학교 등 22개 학교를 통일교육시범학교로 지정·운영 중에 있다. 정부는 이들 시범학교에 통일·북한문제 관련 사진자료, 「통일문제이해」 및 「북한이해」 등 책자, VTR 테이프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의 길」 등 각종 자료를 지원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나. 대학사회 통일의식 함양

정부는 대학사회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하여 대학신입생 특별교육, 대학통일문제연구소와 북한학강좌 지원,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 대학신입생 특별교육

대학신입생들에게 건전한 통일의식을 함양하고 남북관계현안에 관한 올바른 시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대학 입학전의 조기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차교육은 1996년 11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총 5,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차교육은 1997년 11월부터 1998년 2월에 걸쳐 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판문점 견학과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북한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돋고 있으며, 또한 저명 교수의 특강을 통해서 대학생활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토록 하고

21세기 통일시대에 대비한 대학인의 역할과 자세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대학신입생들에게는 북한 대학생 출신 탈북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개발한 「평양캠퍼스 25시」 책자를 제공하여 북한 대학생들의 생활모습과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정부는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한민족의 진로와 전망을 제시하고,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특별교양서를 금년중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2) 대학통일문제연구소 지원

정부는 대학사회내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학문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통일문제 관련 연구소의 설치를 권장하는 한편 연구소별 사업계획과 실적을 검토, 1981년부터 대학 통일문제연구소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후 국내외 많은 대학들이 통일문제 관련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1997년 11월 현재 전국 80개 대학에 통일문제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통일문제연구소는 교수학술세미나 개최, 북한학강좌 연구, 학생발표·토론회 및 대학통일문제연구소장 워크샵 개최 등 대학의 특성과 형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는 통일정책 수립과 통일교육·홍보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교수학술세미나는 통일문제연구소의 기본사업으로 정착되어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대학의 연구기반 조성과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함양 등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학생발표·토론회는 지도교수 책임 하에 대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발표와 토론을 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통일의식의 함양과 참여도를 제고하여 대학사회에 통일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한편 대학통일문제연구소장 워크샵은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소장들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남북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자료의 교환으로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21세기 한국을 여는 통일전망’ 이라는 주제로 전북 무주에서 개최된 바 있다.

정부는 대학통일문제연구소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81년 16개 대학에 1,92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초로 하여 매년 지원대학의 수를 늘리

고 있으며, 1997년에는 75개 대학에 347,000천 원을 지원하였다.

(3) 북한학 강좌 지원

북한에 대한 객관적 · 체계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각 대학에 설치 · 운영되고 있는 북한학 강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북한학 강좌는 서울대 등 72개 대학에 203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수강학생은 2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4)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논문 현상공모는 통일문제에 대한 깊은 대학생들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분위기를 북돋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1982년부터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실시해 오고 있다. 응모논문은 사계의 권위있는 학자와 교수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있으며, 우수입상자 전원에게는 부총리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입선논문은 대학생 통일논문집으로 발간, 전국 각 대학 도서관 및 통일문제연구소 등에 배포하여 널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2절 대국민 통일홍보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통일홍보의 중점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현실성과 합리성 인식, 통일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통일대비태세의 확립, 북한실상의 실증적 · 객관적 전달, 남북주요현안에 대한 이해 제고 등에 두고 적극적인 대국민 통일홍보를 추진해 왔다.

1. 정부부처간 홍보협의체 구성 · 운영

정부는 남북분단의 특수상황을 감안, 우리의 국가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통일 · 안보문제에 대한 관련부처간 입장을 조율하고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의 올바른 전파와 국민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1996년 10월부터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 정책담당책임자 및 공보책임자로 홍보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기획반과 공보반으로 구분, 통일문제나 외교 · 안보 현안 발

생시 수시로 개최되어 관련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신속히 마련하여 전달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국론분열을 방지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홍보자료 개발·보급

가. 정기간행물

1990년부터 통일정책의 내용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모와 협조기반 조성을 위해 「통일백서」, 「남북 대화」, 「주간 북한동향」,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등 정기간행물을 발간·배포하고 있다. 1997년에는 대학신입생 등을 주요대상으로 통일원 소식지 「한나라」를 발간·배포함으로써 젊은 세대에게 정확한 북한실상 이해와 건전한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나. 계기별 홍보자료

남북한간의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주요계기 발생시 이에 대한 해설자료를 수시로 발간·배포하여 정부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돋고 있다. 특히 판문점 방문자 및 이산가족·기업인 등 북한방문자를 위한 각종 안내책자를 발간함으로써 이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7년에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식량난과 대북식량지원」 등 해설자료 2종 10만부를 발간·배포함으로써 일반국민의 관심과 이해제고는 물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남북한간 주요 쟁점 사안 및 현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관련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즉응 홍보체제를 수립, 통일속보를 발간하고 있다.

1994년 「김일성 신년사 분석」, 1995년 「통일부총리 통일외무위 보고자료」, 1996년 「제51주년 광복절 경축사 및 통일문제관련 해설자료」, 1997년 「황장엽 망명관련 해설자료」 등을 발간, 통일관계전문가, 통일교육전문위원, 언론인, 종교계 인사 등에 배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이 여론지도층에 의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언론을 통한 홍보

1989년부터 방영되기 시작한 KBS-TV의 ‘남북의 창’, MBC-TV의 ‘통일전망대’ 등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외에 대북 방송인 KBS 사회교육방송의 고정프로 ‘통일로 가는 길’에 방송해설자 선정 및 자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1994년부터 분단상황과 통일의지를 주제로 한 TV 공익광고(통일캠페인)를 MBC-TV를 통해 방영한 이후 1997년까지 총 4편의 TV공익광고와 1편의 라디오 공익광고를 제작, 방송함으로써 젊은 세대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주지시킴과 함께 국민의 통일의식과 통일의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4. 첨단매체를 통한 홍보

개인용 컴퓨터(PC)의 보급확대와 이에 따른 이용자 증가 등 정보화사회 의 도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PC통신 등 첨단매체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였다.

1992년 7월 6일 (주)데이콤의 천리안Ⅱ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993년 7월 8일에는 (주)한국PC통신 HITEL을 추가하여 일반국민들이 PC통신망을 통해 남북한 통일정책, 남북관계 진전상황, 남북간 주요 합의사항, 주간 북한동향, 남북교류협력 절차와 동향, 북한관 관람안내, 북한영화 상영 및 자료열람 등 통일·북한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통일정책 나도 한마디’라는 토론의장을 개설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 정부정책의 제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4년 8월 11일에는 자동음성정보시스템(ARS)을 설치, 전화통신망을 통해 통일방안, 이산가족, 남북한 방문 및 북한주민 접촉, 남북한간 물자교역, 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협력기금 등의 내용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1996년 12월에는 첨단 정보유통망인 인터넷을 통한 통일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유니코리아(<http://www.unikorea.go.kr>)’를 개설하여 통일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유니코리아는 최근 북한이나 친북단체들의 인터넷을 통한 왜곡된 정보선전전에 대응하고, 일반국민이나 외국인의 의견수렴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유니코리아는 국문과 영문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바 크게 8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구성내용은 첫째, 통일관련뉴스, 정부공식 발표문, 주요 북한동향 등으로 구성된 What's New, 둘째, 북한의 주요산하, 북한주민의 생활, 해외 한민족의 삶 등을 사진이나 영상자료로 제공하는 통일갤러리, 셋째, 남북관계 주요문건, 북한관련자료, 남북교류협력현황 등이 들어 있는 자료실, 넷째, 남북의 현안, 통일정책, 남북교류협력 등에 대한 각종 논문이 있는 통일논단, 그리고 이용자들이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일포럼이 있고, 통일원과 통일원 산하 연구기관인 민족통일연구원을 소개하는 난, 관련기관 정보사이트로 직접 연결되는 관련기관 난 등이 있다.

개설 이후 1997년 11월 현재 유니코리아의 총 조회건수는 3만 6천여회에 이르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지난 3월 15일에는 경향신문사와 한글과 컴퓨터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한국의 100대 Best 웹사이트」 중에서 정치·행정·법률분야 「Best 5」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유니코리아의 개선·보완 등과 관련한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1997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니코리아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나타난 이용자들의 요구와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1997년 11월 현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자료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구성메뉴를 수정·보완하는 등 개편작업을 실시중에 있다.

5. 시설물을 통한 홍보

정부는 국민들에게 북한의 각종 자료나 생활필수품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북한 바로알기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실증적인 통일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7년 11월말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 북한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실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 이해를 돋기 위하여 다양한 북한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북한자료센타(서울 광화문우체국 6층 소재)도 운영하고 있다.

6. 기타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대국민 접촉도가 높은 홍보매체와 수단을 이용한 통일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994년과 1995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주요 내용을 시판 중인 담배(88라이트)에 각각 게재, 홍보하였고, 국립영상제작소의 협조하에 통일관련 문화영화 ‘남남북녀 신혼행진곡’을 제작, 전국 각 극장에서 상영함으로써 일반국민의 건전한 통일관 확립 및 민족공동체 의식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실상을 객관적·실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각종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다. 주요행사로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 및 지방에서 개최한 ‘북한생활모습전’, ‘북한의 생활 및 제복류 전시회’, ‘북한 인쇄물전’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수렴, 표출할 수 있는 건전한 통일예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1997년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전국 미술전공대학생(15개 대학) 및 신예 미술작가(7명) 등의 참여하에 통일벽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제3절 해외통일홍보

1. 국제사회에 대한 통일홍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그간 우리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널리 알리고,

둘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정신과 합리성·실현가능성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인식시키며,

셋째, 한반도 통일문제가 세계평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국제정치사적 의의를 주지시키는 것이다.

가. 홍보자료·간행물 등을 통한 홍보

한국의 통일방안 해설서 및 통일문제관련 주요 계기시, 이에 대한 해설 자료 등을 영·일·중·러 등 주요 외국어로 발간하여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또한 매분기마다 남북한 관계, 북한 연구, 국제문제, 안보분야의 영어논문 및 해설 자료집을 발간하여 외국 저명학자, 외국대학도서관, 외국 언론사 등에 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Coming Together as One」 등 통일정책 해설 및 계기별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Press Information Kit」, 「Fact about Korea」 등 해외 간행물을 통해 한국의 통일정책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인 「평화문제연구소」와 「남북평화통일연구소」에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통일한국」과 「Korea and World Affairs」를 발간하여 해외동포와 외국의 연구기관, 여론주도층에게 배포하여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돋고 있다.

나. KBS 국제방송 등을 통한 홍보

KBS 국제방송에서 매주 목요일 15분간 10개 국어로 방송되는 「통일을 향하여」라는 고정프로그램에 통일문제 칼럼원고를 지원하여 세계 각국에 한국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의 변화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 홍보외에도 통일원 인터넷 홈페이지 「유니코리아」는 영문으로도 제공되고 있어 유력한 국제사회 대상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주요 방한 외국인사, 주한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우리정부의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현황 등에 대한 통일정책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오고 있다.

2. 해외동포에 대한 통일홍보

530만 해외동포에게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민족구성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해외동포대상 통일홍보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통일의 당위성을 새로운 국제질서하의 민족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민족의 생존권 보장과 자긍심 고양의 관건임을 주지시키고,

둘째, 세계화와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해외동포의 역량결집 노

력을 강화하며,

셋째, 해외동포들이 세계사의 흐름을 직시하여 한국의 발전과 북한의 개방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에 교량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 해외동포 언론을 통한 통일정책 홍보

서방세계의 해외동포가 운영하는 2개국 7개 신문사와 2개국 2개 라디오 방송사를 통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 매월 관계 전문가가 집필한 통일문제 칼럼을 정기 게재·방송하고 있으며, 24개국 20개 TV 방송사를 통해 통일관련 프로그램,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 고국의 생활모습 등을 담은 방송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1995년부터 중국·러시아의 동포신문사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특집원고를 지원,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중, 한·러간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나. 해외동포 통일문제토론회 개최

정부는 해외동포들의 민족공동체 의식과 조국통일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1991년부터 매년 통일문제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미주지역 동포사회와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93년부터 미주지역 한민족 통일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다. 해외동포사회의 민족공동체 발전사업 지원

정부는 중국·독립국가연합지역 등 사회주의권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민족공동체의식 고취와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초가 되는 학술·문화·예술 사업의 진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서는 190만이 거주하는 중국내 조선족 동포사회에 우리의 말과 글, 정신문화의 계승을 위해 요녕신문 조선문보 주관의 ‘민들레 문학콩쿨’, 흑룡강방송의 ‘우리말 시 낭송·낭독 대회’, 북경중앙민족학원의 ‘조선족 지도자 대회’ 등 8개의 민족공동체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소련연방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사할린 지역의 동포사회에 대해서는 60여개의 한글학교에 우리말과 글을 보급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있다.

라. 홍보자료의 제작 · 배포

해외 22개국의 동포단체, 한글학교, 종교시설 등 동포들의 왕래가 많은 220개처의 홍보협력망을 통해 통일문제 관련 각종 홍보자료를 수시 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해외동포 관련 사료의 체계적 수집과 조사 · 기록의 계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의 발전기틀을 공고히 하고자 전 10권 3,000질의 「세계한민족총서」 와 총 6부작인 「세계 한민족의 삶」 영상자료를 제작 · 배포하였다.

총서는 구한말부터 현재까지의 해외동포사회를 지역별 구분에 의한 총체적 접근관점에서 기술하였고, 내용은 해당국가(지역)의 개황, 한국과의 관계, 해외동포사회 현황, 해당국 동포사회의 현안과 미래전망, 해당국의 이주정책, 이민법 등으로 구성됐다.

영상자료는 해외동포사회 정착기의 고난과 역사, 현재의 삶, 미래전망 등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었으며, △제1부: 중국편, △제2부: 미국편, △제3부: 일본편, △제4부: 독립국가연합편, △제5부: 중남미, 아 · 태, 중동 · 아프리카편, △제6부: 에필로그; 한민족, 통일로 미래로편으로 구성되었다.

제4절 민간 통일활동 지원

1. 민간 통일활동의 전개

김영삼정부는 제한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던 민간 통일관련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전개해 왔다. 1990년대에는 많은 통일관련단체들이 결성되었는데, 과거에 비해 목적과 성격이 뚜렷한 특색있는 단체들이 많아짐으로써, 민간 통일활동이 전문화되어 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 주요단체들을 살펴보면 한국발전연구원(1990년), 세계한민족평화통일

협의회(1991년), 통일시대연구소(1991년), 다물민족연구소(1991년), 한국청년정책연구소(1992년),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1994년), 통일경제연구협회(1995년), 21세기통일봉사단(1997년) 한사랑민족통일진흥원(1997년) 등이다.

통일관련단체는 그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대중통일활동단체, 조사연구단체, 남북교류협력단체, 종교계 통일활동단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형태로 보면 허가법인과 임의단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을 1994년 3월 1일부로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로 전환시켰으며, 동 법률까지 1997년 3월 7일부로 폐지함으로써 단체활동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킨 바 있다.

특히, 민간의 통일활동은 1995년과 1997년에 두드러진 양상을 보여주었다. 1995년은 광복 50주년·분단 50년이 되는 해로서 이를 계기로 민간 통일활동이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실천적 참여를 확산시키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다지는 데 일조를 하였다. 그러나 안호상 불법방북 및 일부 재야단체의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범민족대회’ 등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교란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1996년과 1997년의 폭력적인 학생운동은 그 불법성과 친북성을 국민들에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계기로 환상적인 통일논의는 점차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1997년도 민간통일활동의 주요 이슈는 북한동포돕기 운동이었다. 북한의 식량난은 굶주리고 있는 북한동포를 돋자는 동족애에 기초하여 종교계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이에 참여하였다.

2. 민간 통일활동 지원

최근 통일문제 연구활동을 위해 결성된 단체들 중 통일원이 허가한 법인의 수는 총 40개로서 정부는 이들 단체들이 연구·교육·홍보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들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부총리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외에도 부총리 표창·상장 수여, 통일원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일관련 자료배포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통일관련단체 간부, 통일교육·홍보업무 관련 공무원 및 통일문제 담당 언론인 등 여론주도층 인사들이 중국·베트남 등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 실상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사회주의권 현장연수

를 지원하고 있다.

제10장 통일의 전망과 과제

통일은 현실적 문제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세계사의 흐름이나 한반도의 내부상황을 조망해 볼 때, 이러한 인식은 타당하다. 우리에게 분단의 아픔을 안겨주었던 국제냉전 질서는 사라지고, 세계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화해와 협력을 증대시켜 가고 있다. 나아가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위에서 하나의 지구공동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내부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비록 냉전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외양상 단절과 적대가 계속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남북관계라 할 수 있다. 남북간 위상의 차이가 현저해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점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의 변화는 분명 통일의 전도를 밝게 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통일을 이를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는 당위와 시대흐름 등 객관적인 여건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주어진 상황속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현실로 구현되느냐, 아니면 영원히 소망으로만 남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 시대의 흐름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고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분단의 맹에를 안은 채 우리민족의 역량을 소모하면서 세계사의 뒷전으로 밀려나느냐의 여부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도 국제정세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분단 이후 북한을 지탱해 왔던 많은 요소들이 무너진 현실에서 과거와 같은 체제유지 방식들은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도 1990년대 들어와 국제정세의 변화와 경제의 침체로 인한 위기를 인식하고 나름대로 변화를 모색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를 채택한 것이나 무역특구를 설치하여 외자유치 노력을 경주하는 일,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외교정책, 남북정상회

담을 추진했던 사실 등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식한 토대위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정책노선 변화노력은 체제붕괴에 대한 위기감과 뿌리깊은 중앙집권적 통제체제, 적화전략을 고수하고자 하는 시대착오적 대남전략 등으로 인해 성공적이지 못했다. 북한에서는 앞으로도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과 상대적으로 변화에 소극적인 세력간에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거나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내외의 위기를 해소하지 못하고 급변사태를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국가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동적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유리하게도, 또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마침내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다음과 같은 당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하는 일이다.

평화가 지켜지지 않고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떠한 것도 이룩할 수 없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확충하고 한·미 동맹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남북간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자회담은 6·25 참전 주요 당사국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대화의 틀이다. 4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당사국들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수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상호 입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기에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신뢰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는 평화체제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하고 합의해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일이다.

대남 적화전략이나 폐쇄노선 등 북한의 기본노선이 변하지 않는 한 남북간 진정한 관계개선은 불가능하며, 통일은 더 한층 멀어질 수밖에 없다. 내외의 상황으로 보아 북한의 개방과 변화는 불가피하다. 북한이 처해 있는 어

려움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과제이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개방과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상당한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북한의 개방과 안정적 변화를 돋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간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여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 과제들을 합의해 놓은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남북간 화해와 신뢰구축, 인도적 문제 및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들이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간 모든 현안들이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내에서 해결될 수 있다.

새로운 회담과 새로운 합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대로 남북공동위원회 등을 조속히 가동하여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한반도의 안정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무력 개입을 불러 들일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요소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스스로 핵개발 의혹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어떠한 상황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의 장애 요소로 인해 변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급변사태를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건간에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해야 하며,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급변상황을 수습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적 역량과 치밀한 사전대비계획을 미리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통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배타적 의미의 ‘자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반도 분단의 연원이 그러했듯이 통일을 이루는 데에도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

하기 때문이다. 우리에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예는 이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 문제는 국제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주변4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주변국의 관심과 참여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며 화해와 협력의 국제적 흐름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들 국가들의 대한반도정책이 한반도 안정을 이루는 방법과 한반도의 장래문제에 대하여 항상 우리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바람직하게 유도하여 평화적 통일을 이루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에 가장 큰 책임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합리적 방안과 확고한 방침을 세우고 국제사회가 이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튼튼해야 정부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통일정책 추진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특히 통일문제가 현실적 과제로 대두될 수록 기본원칙뿐만 아니라 구체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론이 통일되어야 북한의 각종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이 계속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참여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통합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탈냉전의 국제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통일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해이해질 경우, 북한의 대남교란전술에 의하여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지금 상태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 국론이 통일될 수 있도록 더욱 새로운 각오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민족의 오랜 염원이자 역사의 순리이며,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냉전의 고도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통일은 냉전의 진정한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항구적 세계평화를 이루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평화와 번영이 약속되는 21세기 세계공동체를 열어가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다.

통일된 우리나라는 인권과 자유와 복지가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여야 하

며, 삶의 질이 보장되는 문화국가여야 한다. 나아가 밖으로는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더 크게 기여하는 도덕국가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복고적 차원의 재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창조이다.

1. 통일정책 관련 선언 및 제의

-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천명 / 353
- (2)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3원칙 천명 / 359
- (3)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 방안 제시 / 367
- (4) 평화정착 4원칙 남북협력 4원칙 제시 / 374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천명

/ 1994.8.15 김영삼 대통령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제49주년 광복절을 국민과 더불어 경축합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두번째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과거 어느때 보다 조국의 장래에 대해 희망과 용기에 차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변화와 개혁, 개방과 전진을 향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깨끗한 정부를 바탕으로 국가경쟁을 강화해 왔습니다.

상해 임정청사를 복원하고, 애국선열들의 유해를 고국땅에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그 어느때 보다 확고해졌습니다.

민족의 정기는 되살아나고 있으며, 우리는 민족진운의 역사를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 맞추어, 새로운 문명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아시아·태평양시대, 새로운 문명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까지나 헤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뜻과 원기를 한군데로 모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되어, 새로운 문명을 선도하는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7천만 내외동포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7천만 민족의 안전과 생존, 그리고 통일과 번영에 대한 책임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7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책임을 통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사와 남북관계의 흐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나는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자 합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우리는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광복은 민주주의가 꽂되고, 번영이 넘치는 통일된 나라를 이루할 때 완성됩니다.

세계사는 이미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하였고,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민주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민주주의의 기틀이 이 땅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이렇듯 어렵게 확립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수호될 것입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통일을 추진하는 우리의 기본철학 역시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없는 민주가 있을 수 없고, 민주없이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민족의 자주적 역량으로 냉전과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통일은 어떻게 권력을 분배하느냐보다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 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통일은 계급이나 집단중심의 이념보다는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가공적인 국가체제의 조립보다도,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 건설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일은 오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서 반목과 불신을 쌓아온 남과 북이 하루 아침에 통일을 이를 수는 없습니다.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하나의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를 거쳐서, ‘1민족 1국가의 통일 국가를 완성’ 하는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남과 북은 적대와 대립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예멘이 정치적 통일을 이루고도 내전을 치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화해와 협력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외형만의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존공영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남북연합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킴으로써 정치적 통합을 위한 여건을 성숙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은 통일의 중간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1민족 1국가로 통일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통일의 길은 민주와 번영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된 조국은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내외동포 여러분!

이제 한반도에서도 냉전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체제경쟁도 이미 끝났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실패로 귀결된 20세기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인류는 이미 냉전 대신에 자유화, 복지화,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대세 앞에 한반도만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구시대적 대남 적화전략을 마땅히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을 개선하는 과감한 개혁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산가족문제를 기본적인 인권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 억류자 문제의 해결에도 지체없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허한 이념의 대결 대신에 민족의 복리증진을 남북관계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를 하나씩 갖추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정권 탄생 이후 처음으로 권력승계 작업을 진행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안정 속에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국정부와 국민은 같은 민족으로서 할 수 있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이 협력 속에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여,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때, 자연스러운 통일, 바람직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결코 민족공동체의 선진국 진입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창의와 능력을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은 신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신뢰는 서로가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실천에 옮기는 데서 생겨납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세계와 민족 앞에 그 실천을 약속한 화해와 협력의 대장전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핵문제의 해결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준수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남북간의 화해 분위기를 위배하는 상호비방은 중지되어야 하며,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 속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북한의 고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을 무기로 하는 폐쇄지향의 모험을 중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평화적 핵에너지의 개발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첫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은 점검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이 언제, 어떻게 오더라도, 통일은 결국 남과 북의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 발전시키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로부터 모범적인 민주공동체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에의 영광과 환희 뿐만이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고통과 희생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의 문제는 곧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같은 민족으로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의연하고도 한결같은 자세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내외동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반세기를 돌아볼 때, 우리는 벅찬 감동과 함께 부끄러운 반성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그리고 남북에서 우리 민족이 걸어온 고난의 역정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내년에 맞는 광복 50주년은 우리 민족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나는 광복 50주년을 한마음 한뜻으로 ‘7천만의 한민족 시대’를 여는 계기로 삼을 것을 내외동

포 앞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민족은 식민시대의 압제를 뚫고 민족의 광복을 성취해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해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냈습니다.

그 연장선 위에서, 이제 우리는 민주와 번영이 넘쳐 흐르는 통일조국, 신한국을 마침내 창조해내야 합니다.

선열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는 제2의 광복을 위해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선열과 우리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꿈꾸어 왔던 통일되고 번영된 조국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새로운 세계문명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제2의 광복을 위해서 우리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

우리 모두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원칙 천명

/ 1995.8.15 김영삼 대통령 제50주년 광복절 경축사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동포와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뜻깊은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사에 새지평을 열자는 굳건한 결의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귓전에는 잊었던 국권을 되찾은 기쁨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던 반세기전 그 날의 환호가 생생합니다.

우리의 가슴은 온갖 고난을 뚫고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반세기에 대한 깊은 감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우리 민족의 위대한 시대로 만들자는 굳은 다짐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선열들의 축복과 7천만 겨레의 기대가 이 자리에 충만해 있습니다.

이 경하스러운 날을 맞아, 나는 먼저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애국 선열들을 추모하며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들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해 오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 겨레에게 지난 50년은 가혹한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물려받은 빈곤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생존마저 위협받아야 했던 「절대빈곤의 시대」를 해쳐 나와야 했습니다.

극단적인 남북대치와 군사독재 아래 민주주의가 질식하던 「어둠의 시대」를 뚫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식민통치의 사슬을 끊던 불같은 투혼과 강철같은 의지로 우리는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불과 한 세대 남짓한 짧은 기간에 우리는 가장 가난한 나라로부터 이제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민주의 씨앗이 싹트기조차 어렵던 그 메마른 땅 위에 문민 민주주의를 활짝 꽂았습니다.

민족의 자존을 크게 드높이고, 민족사의 정통성을 확고히 세웠습니다.

자유와 풍요의 민주공화국을 세우고자 했던 선열들의 소망이 마침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 것입니다.

내외동포 여러분!

우리의 성취가 이처럼 빛나는 것임에도 우리의 광복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의 민족성원 모두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의 완성일 것입니다.

통일의 큰 길을 열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평화 없이는 통일된 조국은 물론, 민족의 장래 또한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민족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반드시 남북 당사자간에 협의, 해결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책임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간의 합의사항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첫 걸음은 신뢰구축이며, 신뢰는 서로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 실천에 옮기는 데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같은 기본원칙을 밝히면서 남과 북이 지금의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광복 50주년이 되는 올해야말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나는 북한이 조속히 안정되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오고, 남북간에도 신뢰가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평화통일은 우리 모두의 절실한 염원이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냉엄한 현실의 과제입니다.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환상적인 기대도 성급한 포기도 모두 금물입니다.

꾸준한 인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7천만 동포 여러분!

광복 반세기라는 역사의장을 넘기는 오늘, 우리의 눈 앞에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무한한 희망을 주는 21세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의 전면에 나설 아시아·태평양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꿈과 후손들의 소망이 담긴 민족의 꿈을 활짝 펼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됩니다.

이제 나는 7천만 겨레의 여망을 모아 민족이 나아갈 길을 역사 앞에 염숙히 선언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조국을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사적 소명입니다.

21세기를 우리 민족의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갑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나라의 각 분야가 선진화되고 세계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고루 확산되어야 하며, 한 차원 더 높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파당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는 정치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낡은 틀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새 정치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 또한 선진 경제권에 진입해야 합니다.

경제의 규모가 더욱 커질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고도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고루 나누어지고, 삶의 질을 존중하는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부가 존경을 받고 분배의 정의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통일에 대비하는 경제 역량 또한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문화국가를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인간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제도와 관행이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신문화가 존중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실현되는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자랑스런 민족문화를 꽂피워야 하겠습니다.

셋째, 인류와 세계의 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민족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역동적인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민족의 웅대한 꿈을 저 넓은 세계무대에서 펼쳐야 합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당당하게 경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진정으로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는 청산과 계승을 통한 창조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옛 조선총독부를 철거하는 역사적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건물이 철거되어야만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경복궁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민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우리의 민족정기를 회복하자는 온 국민의 뜻과 의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옛 조선총독의 관저를 철거한 것도 같은 취지에서였습니다.

옛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는 단순히 식민잔재의 외형적인 청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그릇된 역사의 잔재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관계가 불행했던 과거의 그늘로부터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애국선열 등 천4백여분을 새로 독립운동 유공자로 모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은 우리가 이어 받아 후대에 전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나는 광복 이후 전반세기와 후반세기를 잇는 대통령으로서 역사의 창조적 발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거대한 문명사적 변혁 앞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으로는 내실을 다지면서 밖으로는 21세기를 향한 역사의 격랑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미움과 분열과 갈등으로 소모할 시간적 이유가 없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분열을 통합으로, 갈등을 조화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나는 오늘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대대적인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하였습니다.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대규모의 일반사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뜻깊은 광복 50주년을 맞아 우리 국민 모두가 대화합을 이루어 새출발하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겠다는 충정에서 내린 결단입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이루어진 부정부패 관련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한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온 국민이 하나되어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조국과 민족의 앞날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를 통해 위대한 국민만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한민족이 위대한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세계화 합시다.

변화와 개혁을 힘차게 추진합시다.

그리하여, 세계의 중심에 우뚝서서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일류국가’의 꿈을 실현합시다.

50년후 광복 한세기가 되는 그날,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의 우리를 진정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3) 한반도평화와 남북간 협력 방안제시

/ 1996.8.15 김영삼대통령 제51주년 광복절 경축사

친애하는 7천만 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를 되찾은 지 선한들을 맞아, 민족의 통일과 영광을 다짐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는 겨레의 가슴속에는 식민통지의 압제에서 벗어나 흙 다시 만져보고 바닷물도 춤을 추던 그날의 감격이 물결치고 있습니다.

오직 피와 땀과 눈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지난 반세기의 역정에 대한 긍지가 넘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로 꽂 피우자는 희망과 용기가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빼저리게 느낍니다.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번영을 구가하며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신명을 다 바쳐 조국의 주춧돌을 놓아주신 애국 선열들에게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자유와 번영의 나라를 만든 주역이신 위대한 우리 국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반세기 동안, 우리는 분단의 명예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나라세우기의 길을 달려 왔습니다.

가혹한 역경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불굴의 의지로 마침내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로 출발한 한국은 이제 세계 11위의 경제력과 국민소득 1만 달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쟁취한 민주주의는 국민을 나라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었고, 조국을 세계속에 당당한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사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민족의 자존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던 나라로부터 남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도 우리의 큰 보람입니다.

열흘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도 우리는 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자유와 정의, 평화와 번영의 독립국가를 갈구했던 선열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국민 여러분께서 ‘한국의 신화’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7천만 동포 여러분!

광복 후반세기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오늘, 우리는 광복 100년을 내다보며 새로운 출발을 결의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절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미완인 우리의 광복을 진정한 광복으로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일류국가,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를 우리 손으로 창조하자는 것입니다.

민주와 번영으로 세계를 앞서가는 선진국가, 정신적 가치와 도덕성이 존중되는 문화국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국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신화를 창조한 그 위대한 힘으로 한민족의 영광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내외동포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는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참다운 광복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평화통일의 첫걸음은 무엇보다 7천만 동포가 하나라는 인식을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반도의 남쪽만이 아니라 저 북녘, 나아가 세계 곳곳 온 겨레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1천9백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쌀을 아무 조건없이 북한에 지원한 것도 북한 동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선의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민족사의 긴 안목으로 보면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요체는 바로 ‘평화와 협력’입니다.

평화와 협력만이 분단의 고통과 비극을 극복하고 통일과 번영의 큰 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우리는 북한의 안정을 원합니다.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북한의 안정에 영향을 줄 사태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의 고립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온전한 성원이 되어 우리와 함께 민족의 역량을 키우고, 세계에 공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일방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 상호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평화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남북한은 이미 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서로 교류·협력해 나가기로 세계와 민족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약속의 이행이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7천만 동포 여러분!

지난 4월 저와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함께 북한에 4자회담을 제의한 것도 ‘평화와 협력’의 정신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자회담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광범한 문제가 토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평화체제의 구축문제가 논의될 것입니다.

군사적 신뢰문제도 협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긴장완화 조치의 차원에서 남북 경제협력 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특히 4자회담에서 논의될 경제협력문제에 관해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식량문제입니다.

북한은 지금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집중 폭우로 인한 수해로 북한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동포애로써 북한을 도와왔고, 앞으로 국제적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은 외부의 일시적 지원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식량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용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장비대여 등을 통해 수해 농지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나진·선봉지역에 투자하고 남북교역을 확대하여 북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며, 한국 관광객의 북한방문을 허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교류는 주로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의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 당국자간에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남북한 당국간의 좀 더 의미있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은, 긴장완화와 호혜 원칙아래 대화를 통해 진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경제문제는 남북한 간의 진정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만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북한을 돋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4자회담이 성사되면 북한은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신뢰 그리고 경제적 실리를 모두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세계 각국이 4자회담을 지지하고 있는 것도 이 회담이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북한당국이 그들 자신은 물론 민족의 장래와 동북아의 앞날을 위해서도 4자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평화통일은 이제 현실의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명운은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통일에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통일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뜨거운 만큼, 통일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신중해야 합니다.

감상적인 통일론이나 일방적인 시혜론은 남북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존립 토대인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체제전복 세력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국가안보는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막강한 국방력으로 나라와 국민을 확고히 지킬 것입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협조체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통일조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통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는 이제 지역이나 파벌에 의한 권력투쟁이 아니라 통합과 조화에 의해 국민의 힘을 모으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전문화된 정치, 세계를 경영하는 세계화된 정치로 발전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의 경제도 7천만 동포가 다함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단계 더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음 세기 초까지 경제규모를 1조 달러로 키우고, 무역규모도 5천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근검절약을 통해 가계를 풍요롭게 하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또한 변화와 개혁의 꾸준한 추진을 통해 정의와 합리성이 뿐만 아니라 해야 합니다.

세계화를 더욱 촉진하여 모든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온 국민이 이처럼 일치된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통일역량은 배가되어 통일조국의 모습은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설 것입니다.

7천만 내외동포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 신천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서 인류번영과 세계평화를 앞장서 이끌어야 할 21세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다운 광복을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세대의 손으로 민족의 통일을 이룩합시다.

세계가 우러러 보는 일류국가를 만듭시다.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창조합시다.

그리하여 선열들이 그렇게 희구했던 한민족의 영광을 자손만대에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4) 평화정착 4원칙 남북협력 4원칙 제시

/1997.8.15 김영삼대통령 제52주년 광복절경축사

친애하는 7천만 내외동포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광복 52주년을 맞아 벅찬 감회를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라를 되찾았던 그날의 환희와 자랑스러운 민주국가를 건설한 기쁨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물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정치와 경제에서 세계가 경탄하는 ‘한국의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이제 대하를 이루며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는 자유와 민주, 번영과 복지의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발전의 순리를 우리는 문민개혁을 통해 구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 세계화와 정보화는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려는 우리 모두의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앞날에는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숱한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우리는 어떠한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세기에 반드시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열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에 차 있습니다.

광복의 참뜻을 새기는 뜻깊은 오늘, 이 조국을 있게 해 주신 순국선열들에게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온갖 고난을 헤쳐온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와 번영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직 못다 이룬 민족의 숙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통합입니다.

미완의 광복을 온전한 통일로 완성하는 일… 이것은 선열에 대한 후손된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조국통일의 역사적 소임을 한 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94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고 ‘민족발전 공동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튼튼한 평화의 기초 위에서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가 담긴 통일의 청사진이었습니다.

95년에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본방향을 밝혔으며, 작년에는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도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에게 식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에너지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북녘 땅에서는 우리 국민이 보낸 정성이 전해지고 있으며, 우리 기술진이 경수로 건설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끈질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주에 4자 예비회담도 개최되었습니다.

남북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때론 좌절도 없지 않았지만, 민족사의 긴 안목에서 볼 때 남북관계는 분명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반세기 분단사상 지금처럼 우리가 확고한 위치에서 통일을 주도할 수 있었던 때는 없었다고 굳게 믿습니다.

내외동포 여러분!

통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앞날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합니다.

이제 남과 북은 평화의 참뜻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때를 맞았습니다.

평화는 무엇보다 ‘무력포기’를 의미합니다.

북한은 민족적 범죄행위인 무력도발은 물론 대남 무력 침화노선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평화는 ‘상호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남과 북은 상호 실체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진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신뢰구축’을 뜻합니다.

4자회담은 남과 북이 약속한 기본합의서를 지키고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상호 신뢰의 대화 마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평화는 ‘상호협력’ 위에 이루어집니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동족인 우리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당국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동포들은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동포로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95년 이래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2천3백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지원으로 북한이 처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돋는 길을 찾아내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의 식량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협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구호사업으로만 땀질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 정부가 그동안 준비해온 ‘민족발전 공동계획’을 남북대화를 통해 협의·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공동발전계획은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는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셋째, 북한이 우리의 우방과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기구에도 참여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자세변화가 앞서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북한당국은 변화를 통해 스스로를 돋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우선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을 짊주림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변화의 길에 나온다면 얼마든지 협력할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시간이 자신들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북한당국이 민족의 앞날은 물론, 스스로를 위해서도 개방과 개혁의 역사적 대세에 지체없이 합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7천만 내외동포 여러분!

희망의 새 세기에는 통일된 조국, 위대한 한민족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광복의 완성은 아무런 노고도 없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땀과 눈물이 요구됩니다.

밀물처럼 닥쳐오는 도전을 타고 넘으며 미래의 지평을 향해 힘차게 노를 저어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암초도 있고 풍랑도 거셀 것입니다.

그러나 한배를 탄 우리들의 노젓는 한손 한손이 힘을 합친다면 만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평화를 확고히 지켜내야 합니다.

선진된 정치를 이루하기 위해 정치인도 유권자도 다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21세기의 지도자를 뽑는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민주정치 발전에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세계화·정보화의 고삐를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약하지 못하면 추락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광복 52년의 빛나는 성취를 반드시 통일로 이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100년, 21세기의 개막을 앞두고 진정한 광복의 완결을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기에는 자랑스런 ‘통일국가’, 세계에서 앞서가는 ‘일류국가’를 건설합니다.

선열들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오늘, 진정한 애국애족의 의미를 우리 모두 가슴에 새깁시다.

민족이 웅비하는 대망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 주요 남북관계 합의 문건

-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383
- (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386
- (3)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387
- (4)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390
- (5)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392
- (6)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395
- (7)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 397
- (8)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399
- (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 402
- (10) 북한에 대한 경수로공급 협정 / 412

-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 1991.12.13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북화해

-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북불가침

-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

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 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

한다.

제 3 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4 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북측대표단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1992.1.20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겸중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북측대표단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3)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1992.2.19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각 분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 한다.
- ② 쌍방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③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③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3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③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 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쌍방이 합의하여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을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2월 19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북측대표단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4)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1992. 3. 18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이하 ‘핵통제공동위원회’라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핵통제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그중 1~2명은 현역군인으로 한다.

위 위원장은 차관(부부장)급으로 한다.

② 쌍방은 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③ 핵통제공동위원회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 문제를 토의한 데 따라 부속문건들을 채택·처리하는 문제와 기타 관련 사항

②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협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 교환에 관한 사항

③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협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의 선정, 사찰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⑤ 핵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에 관한 사항

⑥ 핵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⑦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과 사찰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제3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③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⑤ 핵통제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3월 18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북측대표단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5)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1992.5.7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사이의 불가침을 이행·보장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이하 ‘군사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군사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
 - ③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다.
 - ②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필요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천한다.
 - ③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실천한다.

④ 귀에서 힙의 한 사방의 출신을 쪽간·김득현·
최승근·김성근 등 활약하는 젊은 배우들이 있다.

제4조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결과 그것을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1992년 5월 7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북측대표단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목

(6)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

/ 1992.5.7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 교류 · 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③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쌍방은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②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 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사항을 협의 · 실천한다.

④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 · 조정한다.

제3조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 · 협력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⑥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

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
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들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 · 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
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 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북측 대표단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7)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합의서

/ 1992.5.7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북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 ·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측은 ‘남측연락사무소’라고 하고 북측은 ‘북측연락사무소’라고 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연락사무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자기측 지역
에 각각 설치한다.

제3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에서 각각 소장 1명, 부소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연락관들로 구성한다.

②연락사무소 소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③연락사무소 소장, 부소장, 연락관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앞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연락사무소 안에 필요한 부서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연락업무를 수행한다.

의뢰에 따르는 연락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②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③남북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

④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을 가설하고 운용한다.

제5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관 접촉을 가진다.

연락사무소 구성원들 사이의 연락은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행한다.

②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③ 자기측 지역을 왕래하는 상대측의 연락사무소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④ 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12시까지로 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운영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명절을 비롯하여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에 따라 휴무일로 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북측대표단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8)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1992.9.17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③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률실무협의회, 비방·중상중지 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따로 작성한다.

제2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라 함)를 이행한다.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록 또는 세부적인 합의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각 실무협의회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
- 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⑥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⑦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위원장이 각기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합의문건은 쌍방 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한 합의문건은 쌍방 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북측대표단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 1995. 3. 9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는,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미합중국과 북한과의 기본합의문(이하 “기본합의문” 이라 한다)에 명시된 북한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이라는 목적을 확인하고,
기본합의문의 이행조건으로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이 취하여야 할 비핵산 및 기타 조치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인식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유지의 최상의 중요성에 유념하고,
국제연합헌장, 핵무기의 비핵산에 관한 조약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규약과 부합하여,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기본합의문에 상정된 바와 같이 관련국간 협력을 조정하고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조달과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기구” 라 한다)는 다음에 명시된 규정 및 조건에 따라 설립된다.

제 2 조

가. 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기구와 북한간에 체결될 공급협정에 따라 각각 약 1,000메가와트 용량의 2기의 한국표준형원자로로 구성되는 북한에서의 경수로 사업의 재원조달과 공급
- (2) 경수로발전소 제1호기가 건설될 때까지 북한의 흑연감속로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대신하는 대체에너지의 공급
- (3)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기본합의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조치의 이행

나. 기구는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의 의무사항의 완전한 이행확보를 목표로 하여 그 목적을 수행한다.

제 3 조

상기 목적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구는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가.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나.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기구의 회원국 또는 기타 국가나 단체로부터의 자금 수령, 그러한 자금의 관리와 지출 및 동 자금에 대한 이자의 기구의 목적을 위한 보유

다.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기구의 회원국 또는 기타 국가나 단체로부터의 현물기여의 수령

라. 기구가 제공하는 경수로사업과 기타 재화 및 용역의 상환으로서 북한이 제공하는 자금 및 기타 보상의 수령

마. 기구가 수령하거나 기구의 사업을 위하여 지정된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적합한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협정,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의 체결

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시설, 장비 또는 재화의 취득

사.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 국제기구 또는 기타 적절한 단체와의 차관협정을 포함한 협정,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의 체결

아. 원자력 안전성 증진활동을 포함하여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는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당국 및 기타 공공단체, 국내 및 국제기관 그리고 사적 당사자 등과의 조정과 이들에 대한 지원

자. 기구의 수령액 · 자금 · 계정 또는 기타 자산의 처분 및 이로 인한 수익의 기구의 재정적 의무에 따른 분배, 그리고 기구의 결정에 따른 잔여 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기구의 각 회원국 기여정도에 상응하는 균등한 방식의 분배

차. 이 협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기구의 목적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타 권한의 행사

제 4 조

가. 기구의 활동은 국제연합헌장,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 규약과 일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나. 기구의 활동은 북한과 기구간의 모든 협정규정을 준수하고 기본합의문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기구는 기구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북한에 이전되는 핵물질, 장비 또는 기술이 전

적으로 동 사업을 위해서만,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것임을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제 5 조

- 가. 기구의 원회원국은 대한민국, 일본국 및 미합중국(이하 “원회원국”이라 한다.)이다.
나. 기구의 목적을 지지하고 자금,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은 지원을 기구에 제공하는 기타 국가도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제14조 나항의 절차에 따라 기구의 회원국(이하 원회원국과 함께 “회원국”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제 6 조

- 가.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은 집행이사회에 있다.
나. 집행이사회는 각 원회원국의 1명의 대표와 승인을 얻은 기타 회원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러한 승인은 기구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지를 기초로 동 승인시의 집행이사회 결정에 의한다. 회원국 승인과 관련한 규정 및 조건은 동 승인시의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각 사안별로 결정된다.
다.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 대표들 중에서 2년 임기의 의장을 선출한다.
라.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의거하여 집행이사회 의장, 사무총장 또는 집행이사회 대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소집된다.
마. 집행이사회의 결정은 집행이사회 대표들의 합의에 의하거나, 합의의 도달이 불가능할 경우 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투표가 요구될 때 집행이사회에 참석하는 각 회원(이하 “집행이사회 회원”이라 한다)은 집행이사회 대표에 의하여 1개의 투표를 행사할 권리를 지닌다.
바. 집행이사회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합한 규칙과 규정을 승인할 수 있다.
사. 집행이사회는 기구의 기능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 조

- 가. 총회는 모든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다.
나. 총회는 제12조에 규정된 연례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된다.
다. 총회의 임시회의는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사안을 토의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의 지침에 따라 개최된다.
라. 총회는 권고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 8 조

- 가. 기구의 직원은 사무총장이 대표한다. 사무총장은 이 협정이 발효된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나. 사무총장은 기구의 최고행정책임자로서 집행이사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위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본부 및 직원의 조직과 지휘, 연례 예산안의 준비, 재원 조달 그리고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약의 승인, 작성 및 집행을 포함한 기구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담당한다.

사무총장은 상기 권한을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승인한 모든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 다. 사무총장은 2명의 사무차장으로부터 보좌를 받는다. 2명의 사무차장은 집행이사회에 의

하여 임명된다.

라.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2년의 임기로 임명되며, 재임명될 수 있다. 급여를 포함한 이들의 고용조건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들의 임기만료 이전에 해고될 수 있다.

마.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채택한 지침과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구를 대신하여 사업을 승인하고 계약을 작성하며 기타 재정적 의무를 부담할 권한을 가진다. 단, 그러한 사업·계약 및 재정적 의무가 기구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필요성에 기초하여 집행이사회가 결정한 특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행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바.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의 승인하에 직원의 직책과 급여를 포함한 고용조건을 수립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승인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유자격자를 그러한 직책에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을 해고한다. 사무총장은 경수로 사업을 포함한 기구(KEDO)의 활동을 이행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역할 및 기여도와 최상 수준의 성실성, 효율성 및 기술적 능력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원회원국 및 기타 집행이사회 회원국의 국민들이 공평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직원을 임명한다.

사.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 및 총회에게 기구의 활동과 재정에 관하여 보고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의 조치를 요하는 사안은 집행이사회가 즉시 주지하도록 한다.

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의 조언을 받아 이 협정과 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규칙 및 규정을 준비한다. 규칙 및 규정은 시행 이전에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다.

자. 사무총장과 직원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부나 또는 기구 이외의 어떠한 기관의 지시도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그들은 오로지 기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야 한다. 각 회원국은 사무총장과 직원의 직무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 9 조

가. 집행이사회는 기구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하도록 제의된 특정사업에 대하여 사무총장과 집행이사회에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자문위원회는 경수로 사업, 대체에너지의 공급사업 및 집행이사회가 결정하는 기타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다.

나. 각 자문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원회원국과 다른 회원국 대표들을 포함한다.

다. 자문위원회의 소집시기는 각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라. 사무총장은 각 자문위원회가 소관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며, 집행이사회와 사무총장은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유념한다.

제 10 조

가. 각 회계년도의 예산은 사무총장이 준비하며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기구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각 회원국은 자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기구에 자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여는 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나 기구의 계약자에 대한 지불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여는 현금예치, 조건부 증서, 신용장, 약속어음, 또는 기구와 기여자간 합의하는 기타 법적 수단과 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 기구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공공 또는 사적 재원에서의 기여를 구할 수 있다.

라. 기구는 회원국이나 기타 재원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계정을 설치한다. 동 계정은 특정사업과 기구운영을 위하여 확보된 자금을 위한 독립계정을 포함한다. 그러한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은 기구의 활동을 위하여 재투자된다. 잉여자금은 제3조 자항에 규정된 대로 분배된다.

제 11 조

- 가. 회원국은 기구의 목적 달성을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화·용역·장비 및 시설을 기구나 기구의 계약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 나. 기구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화·용역·장비 및 시설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공공 또는 사적 재원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 다. 사무총장은 기구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현물기여의 가치산정 업무를 담당한다. 회원국은 현물기여에 관한 정기보고서 제출과 동 기여의 가치확인에 필요한 기록에 대한 접근 허용 등을 통하여 가치산정 과정에서 사무총장과 협조한다.
- 라. 현물기여의 가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행이사회가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을 내린다.

제 12 조

사무총장은 기구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동 보고서는 경수로 사업 및 기타 사업의 현황에 관한 기술, 활동계획과 집행실적의 비교, 기구의 계정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등을 포함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국들에게 연례보고서를 배포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요구하는 기타 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한다.

제 13 조

- 가. 기구는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적 능력, 특히 (1) 계약의 체결, (2) 부동산의 차용과 임차, (3) 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4)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회원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기구가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기구에 부여 할 수 있다.
- 나. 어떤 회원국도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나 기구참여를 이유로 기구의 작위, 부작위 또는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다. 회원국이 기구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적으로 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동 회원국의 명시적인 동의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 라. 회원국 영역에서의 이 협정의 이행은 각 회원국의 예산배정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14 조

- 가. 이 협정은 원회원국들이 서명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 나. 제5조 나항에 따라 집행이사회가 회원국 가입을 승인한 국가 및 지역통합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사무총장에게 이 협정 수락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이 수락서는 사무총장의 접수일자에 발효한다.
- 다. 이 협정은 집행이사회 회원 전원의 서면합의 또는 만일 이같은 합의에의 도달이 불가능 할 경우 집행이사회 회원 과반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종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 라. 이 협정의 개정은 서면 개정합의문이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날로부터 90일후에 발효한다. 동 서면 합의문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집행이사회 회원도 동 합의문의 사무총장에의 등록

과 개정발효 사이의 기간중 언제든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의 통보 접수일자에 발효한다.

제 15 조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통보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사무총장이 탈퇴통보를 접수한 지 90일 후부터 유효하다.

1995년 3월 9일 뉴욕에서 영어로 3부씩 작성하였다.

(10)북한에 대한 경수로공급 협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사업의 공급에 관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협정) / 1995.12.15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라 한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북한”이라 한다)는,

KEDO가 1994년 10월 21일의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기본합의문(이하 “미·북 기본합의문”이라 한다)에 규정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사업(이하 “경수로사업”이라 한다)의 재원조달과 공급을 위한 국제기구임을 인식하고,

미·북 기본합의문과 1995년 6월 13일의 미·북 공동언론발표문은 미국이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북한과 주접촉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북한은 미·북 기본합의문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이행하며, 1995년 6월 13일의 미·북 공동언론발표문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경수로사업을 수락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공급범위)

1. KEDO는 북한에 2개의 냉각재유로를 가진 약 1,0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로 구성되는 경수로사업을 일괄 도급방식으로 제공한다. 노형은 KEDO가 선정하며 미국의 원설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된 개량형으로 현재 생산중인 것으로 한다.

2. KEDO는 협정 제1부속서에 명시된 경수로사업의 공급범위를 부담한다. 북한은 이 협정 제2부 속서에 명시된 제반 임무 및 품목으로 구성되는 경수로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부담한다.

3. 경수로 사업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의 규제 및 기술기준에 상당하며,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노형에 적용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따라 수행된다. 이러한 규제 및 기술기준은 경수로 발전소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 시운전, 운전 및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안전, 물리적 방호, 환경보호 및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과 처리에도 적용된다.

제 2 조(상환조건)

1. KEDO는 협정 제1부속서에 규정된 임무 및 품목의 비용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며 북한은 이 비용을 장기, 무이자 방식으로 상환한다.

2. 북한의 상환금액은 KEDO와 북한이 공동으로 결정하되, 이러한 결정은 경수로사업의 상업 공급계약(주계약)에 명시된 경수로사업의 기술명세서, 경수로사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

그리고 이 협정 제1부속서에 규정된 임무 및 품목과 관련한 공급계약에 따라 KEDO가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계약금액에 대한 양측의 검토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이 협정 제1부속서에 명시된 임무 및 품목에 대해 북한은 추가비용의 책임이 없으나, 북한의 작위 또는 귀책사유 있는 부작위로 야기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북한이 책임지며, 이 경우 경수로사업에 관하여 KEDO가 지불하여야 할 실제 추가비용에 근거하여 KEDO와 북한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금액만큼 상환금액이 증액된다.

3. 북한은 KEDO에 각 경수로 발전소 완공 후 3년 거치기간 포함, 20년간 무이자로 연 2회 균등 분할 상환한다. 북한은 KEDO에 현금, 현금에 상당하는 기타 수단, 또는 재화의 이전을 통하여 상환할 수 있다. 북한이 현금에 상당하는 기타 수단 또는 재화로 상환(그러한 상환은 이하 “현물상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현물상환의 가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 산출을 위해 합의된 방식에 근거하여 KEDO와 북한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4. 상환금액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 3 조(인도 일정)

1. KEDO는 200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경수로사업의 인도일정을 수립한다. 북한이 제3부속서에 규정한 바와 같이 미·북 기본합의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관련조치의 일정은, 이러한 조치가 2003년까지 이행되고 경수로사업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경수로사업 인도일정에 포함된다. 경수로사업의 제공과 제3부속서에 규정된 조치의 이행은 미·북 기본합의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호 조건부이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경수로발전소의 “완공”이라 함은 제1조 3항에 규정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성능시험의 완료를 말한다. 각 발전소 완공시에 북한은 KEDO에 대해 각 발전소별로 인수증을 발급한다.

3. 경수로사업의 인도 및 이 협정 제3부속서에 규정된 조치의 이행일정에 관한 상세사항과, 필요한 일정조정을 위한 상호합의된 절차 및 이 협정 제4부속서에 규정된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의 완료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 4 조(이행구조)

1. 북한은 하나의 북한기업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기업에게 경수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이행구조에 참여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2. KEDO는 경수로사업을 수행할 주계약자를 선정하며, 이 주계약자와 상업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하나의 미국기업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 KEDO가 경수로사업의 전반적 이행을 감리하는 것을 보좌한다. 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KEDO가 선정한다.

3. KEDO와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수로사업 참여자들 사이의 효율적인 접촉과 협력을 포함하여 양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촉진한다.

4.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서면 교신은 영어와 한국어로 할 수 있으며, 기존 문서 및 자료는 원래의 언어로 사용 또는 전달될 수 있다.

5.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사업현장외에, 경수로사업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인근항구 또는 공항과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지외 다른 지역에도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6. 북한은 KEDO의 독립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KEDO 및 그 직원에게 KEDO에 위임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북한 영역 내에서의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KEDO의 법적 지위와 특권 및

면제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7.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한 모든 인원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를 모든 인원에 대하여 확립된 국제관행에 따른 적절한 영사보호가 허용된다. 필요한 영사보호 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8. KEDO는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한 모든 인원은 KEDO와 북한간에 별도로 합의될 내용에 따라 북한의 관련법을 존중하며, 아울러 항상 품위를 지키고 전문가적인 태도로 행동하도록 한다.
9.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경수로사업과 관련된 건설장비 및 잔여물자를 통관절차에 따라 재반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0. 북한은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에 따른 의정서, 기타 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KEDO와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의 작위, 부작위, 부채 또는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있을 경우, 오로지 KEDO의 재산과 자산에 대하여만 변제를 추구한다.

제 5 조(부지 선정 및 조사)

1. KEDO는 부지가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적합한 부지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하부구조 개선사항을 포함한 경수로 발전소의 시공과 운전을 위한 제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금호리 일원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이 조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북한은 KEDO와 협조하고 동 지역을 대상으로 기 수행된 조사결과를 포함한 관련정보를 KEDO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KEDO는 추가적인 정보획득 또는 필요한 부지조사 수행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부지접근과 부지사용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 6 조(품질보장 및 보증)

1. KEDO는 제1조제3항에 규정된 규제 및 기술수준에 따라 품질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품질보장계획은 설계, 자재, 장비와 부품의 제작 및 조립, 그리고 시공품질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포함한다.
2. KEDO는 북한에 품질보장계획을 적절히 문서로 제공하며, 북한은 적절한 검사와 시험, 시운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북한측 검토가 포함될 품질보장계획의 이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KEDO는 경수로 발전소 각 호기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대로 완공되는 시점에서 그 발전용량이 약 1,000메가와트가 되도록 보장한다. KEDO는 관련 계약자와 하청계약자가 제공하는 주요 부품이 신품이며, 완공후 2년동안 그러나 당해 주요 부품의 선적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설계·제작기술·자재면에서 결함이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 각 경수로발전소의 최초 장전을 위한 경수로 연료는 원자력업계의 기준관행에 따라 보장된다. KEDO는 경수로사업의 토목공사가 설계·제작기술·자재면에서 결함이 없음을 완공후 2년간 보증한다.
4. 상기 언급된 사항과 보증서의 내용 및 그 발급과 수령에 관한 절차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 7 조(훈련)

1. KEDO는 북한의 경수로발전소의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해 원자력업계의 기준관행에 따라 포괄적인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동 훈련은 상호 합의하는 장소에서 가급적 조기에 실시된다. 북한은 동 훈련계획을 위해 충분한 숫자의 자격있는 후보자를 제공하는 것을 책임진다.

2. 훈련계획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 8 조(운전 및 유지보수)

1. KEDO는 경수로발전소의 사용가능한 수명기간 동안 북한이 선호하는 공급자와의 상업계약을 통하여 이 협정 제1부속서에 따른 제공분을 제외한 경수로 연료를 북한이 구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2. KEDO는 경수로발전소의 사용가능한 수명기간 동안 북한이 선호하는 공급자와의 상업계약을 통하여 협정 제1부속서에 따른 제공분을 제외한 예비부품, 마모성부품, 소모성 자재, 특수공구와 경수로발전소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용역을 북한이 구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3. KEDO와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를 보장하는 데 협력한다. KEDO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북한은 경수로의 사용 후 연료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며, 적절한 상업계약을 통해 동 사용후 연료의 인출 후, 기술적으로 가능한한 조속히, 이를 북한 밖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
4. 경수로 사용 후 연료의 북한 밖으로의 이전을 위한 필요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 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 9 조(서비스)

1.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완공에 필요한 모든 신청에 대한 승인을 신속히, 그리고 무료로 처리한다. 이러한 승인에는 북한의 원자력 통제당국이 발급하는 모든 허가, 통관, 입국 및 기타 허가, 각종 면허, 부지접근권 및 부지인도협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승인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이상으로 지체되거나 거부될 경우, 북한은 KEDO에 그 이유를 즉각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경수로사업의 일정 및 비용은 적절히 조정될 수 있다.
2.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그 인원은,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의 조세, 관세 및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각종 부과금과 수수료를 면제받으며 수용조치로부터도 면제된다.
3.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하는 모든 인원은 사업현장에 방해받지 않는 접근이 허용되며, 사업현장으로의 출입을 위해 항공로와 해로를 포함하여 북한이 지정하고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통행로가 허용된다. 경수로사업의 진행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가 통행로가 고려된다.
4.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하는 인원이 항만 서비스, 수송, 노동력, 식수, 음식, 부지밖 숙박시설 및 사무실, 통신, 연료, 전력, 자재, 의료서비스, 환전 및 여타 금융서비스, 기타 생활 및 작업에 필요한 편의설비를 공정한 가격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와 이들이 파견하는 인원은 북한내의 이용가능한 통신수단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이용이 허용된다. 이에 부가하여,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각 장비설치 요청에 대한 신속한 사안별 검토를 거쳐 북한의 통신관련규정에 따라 사무소에 보안이 유지되는 독자적인 통신수단을 설치할 수 있다.
6. 상기 서비스 관련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별도 의정서에서 적절히 정한다.

제 10 조(핵안전 및 규제)

1. KEDO는 경수로 발전소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과 시운전이 제1조제3항에 규정된 핵안전 규제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
2. 북한은 부지조사 완료시 KEDO에 부지인도증을 발급한다. 북한의 원자력 통제당국은 예비안전 성분석보고서 및 부지조사에 대한 검토와 경수로발전소가 제1조제3항의 핵안전 규제 및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발전소 기초 굴착작업 이전에 KEDO에 건설허가를 발급한다. 북한의 원자력 통제당국은 경수로발전소의 최종설계가 포함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와 핵연료 장입전 시운전시험 결과에 기초하여 최초 연료장전 이전에 KEDO에 시운전 허가를 발급한다. 발전소 운영자에 대한 운영허가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KEDO는 핵연료장입후 시운전시험 결과와 운전요원에 대한 훈련기록을 북한에 제공한다. KEDO는 안전성분석보고서, 규제 및 기술기준에 관한 정보 등 필요정보와 함께 이 협정상 요구되는 결정에 필요하다고 KEDO가 인정하는 기타 문서를 북한에 신속히 제공한다. 북한은 사업일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러한 허가를 적기에 발급하는 것을 보장한다.
3.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 보수, 적절한 물리적 방호, 환경보호, 그리고 제8조 제3항에 일치하는 사용후 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를 제1조제3항에 규정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적절한 원자력 규제기준과 절차가 이행되는 것을 보장한다.
4. 핵연료집합체 선적에 앞서 북한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1994.9.20, 비엔나에서 채택),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1986.9.26, 비엔나에서 채택),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1986.9.26, 비엔나에서 채택) 및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1980.3.3, 비엔나 및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의 규정을 준수한다.
5. 경수로발전소 완공후 KEDO와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 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러한 점검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점검결과를 적절히 고려한다. 안전점검의 절차 및 일정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6. 핵 비상사태나 사고발생시 북한은 KEDO, 계약자 또는 하청계약자가 파견한 인원이 안전 우려 범위를 확정하고 안전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즉시 현장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제 11 조(핵사고 책임)

1.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와 관련된 (1963년 5월 21일자 핵피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정의된) 핵사고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북한내에서 제기되는 배상청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재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법적장치는 절대책임주의 원칙에 의거, 핵사고 발생시 운영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포함된다. 북한은 운영자가 이러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2. 경수로발전소와 관련한 핵사고로 인해 북한영역 내·외에서 핵피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여 제3자가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 활동을 이유로 법원에 제기하는 배상청구로부터 KEDO와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그 인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북한은 핵연료집합체의 선적에 앞서 KEDO와 배상협정을 체결하며, 핵사고 책임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보장장치를 확보한다. 배상협정, 보험 및 기타 재정적 보장장치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3. 북한은 핵피해 또는 손실과 관련하여 KEDO와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4. 이 조항은 어떤 특정한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거나 어느 일방이 면책권을 포기하는 것

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북한은 관련 핵피해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피해인의 중과실에 기인하였거나, 피해인의 가해 의도에 따라 행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임을 운영자가 입증할 경우에는 피해인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로 부터 운영자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시키도록 국내법에 규정 할 수 있다. 운영자는 핵사고에 따른 피해가 고의성이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그러한 고의성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한 개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가진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자’ 또는 ‘개인’이라 함은 핵피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3년 5월 21일, 비엔나에서 채택)에서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 12 조(지적재산)

1. 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양측은 상대방의 지적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와 동정보를 포함하는 물건이나 문서(이하 함께 “지적재산”이라 한다)는 특허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귀속되며, 비밀이 보호된다. 양측은 상대방의 지적재산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며, 협정에 규정된 경수로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리고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 따른 관행을 포함한 국제규범에 따라 이를 이용한다는 데 합의한다.
2.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일방도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상대방의 장비나 기술을 복제, 복사 또는 재생산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보장)

1.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기술, 핵물질(국제관행에 따라 정의됨)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을 전적으로 평화적이고 핵폭발과 무관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기술, 핵물질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이 적절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경수로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3.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핵물질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그러한 원자로와 핵물질의 유용수명기간동안 국제기준에 따른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를 제공한다.
4.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핵물질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그러한 원자로와 핵물질의 유용수명기간동안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적용한다.
5.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 또는 경수로사업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나 핵물질에 이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을 어떠한 경우에도 재처리하거나 그 농축도를 증가시켜서는 아니된다.
6.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장비나 기술, 핵물질, 또는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을 KEDO와 북한간에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북한 영역밖으로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8조 3항에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상기에 언급된 보장들은, 해당 KEDO회원국과 북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수로사업을 위해 핵공급국 그룹의 수출통제품목으로 규제되는 품목을 북한에 공급하는 KEDO회원국에 대해 적절한 형태로 북한측의 보장으로 보완될 수 있다.

제 14 조(불가항력)

어느 일방의 이행이 국제적으로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건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 그러한 지연은 용납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그러한 사건을 이 협정에서 ‘불가항력’ 적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불가항력적 사건에 의해 의무이행이 지연되는 측은 그러한 사건 발생후 지연사실을 즉시 상대방에 통보하고 의무이행의 지연과 이로 인한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양측은 이에 따른 대체방안과 경수로사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및 어느 측이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즉시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협의한다.

제 15 조(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KEDO와 북한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KEDO와 북한은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양측이 선정한 각 3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2. 상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모든 분쟁은 일방이 요청하고 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회부한다. KEDO와 북한은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며 이 2인의 재판관은 재판장이 될 제3의 재판관 1인을 선정한다. 만일 중재에 관한 상호 합의후 30일내에 KEDO 또는 북한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KEDO 또는 북한은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2명의 재판관 선정후 30일내에 제3의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중재재판소의 의사정족수는 과반수이며, 모든 결정은 재판관 2명의 의견일치를 필요로 한다. 중재재판절차는 재판소가 수립한다. 재판소의 결정은 KEDO와 북한을 기속한다. 양측은 자신이 선임한 재판관과 중재재판 참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임무수행비용과 기타 중재재판소 비용은 양측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 16 조(불이행시 조치)

1. KEDO와 북한은 이 협정의 기본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2. 어느 일방이 이 협정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지불하게 되어 있는 금액 및 재정적 손실의 즉각적인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어느 일방이 이 협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재정적 의무와 관련된 상환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은 벌칙금을 산정하여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벌칙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 17 조(개정)

1. 이 협정은 양측의 서면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2. 협정의 개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제 18 조(발효)

1. 이 협정은 KEDO와 북한간의 국제적 합의로서 국제법에 따라 양당사자를 기속한다.
2.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의 부속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이 협정에 따른 의정서는 각 의정서의 서명일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5년 12월 15일 뉴욕에서 영어로 2부가 작성되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사무총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본부대사
스테판 보즈워스 허 종

제1부속서

KEDO가 제공하여야 할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경수로발전소의 공급범위는 다음 임무 및 품목으로 구성된다.

1. 부지조사
2. 부지정리, 평토, 부지내 공사에 필요한 전력 및 경수로 발전소 완공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내 용수공급으로 이루어지는 부지 준비
3. KEDO가 경수로발전소 건설에 필수적이며 전적으로 이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으로 판단하는 하부구조, 이러한 하부구조는 부지내 도로, 부지에서 부지밖 도로까지의 연결도로, 바지선 하역시설과 부지간 도로, 수중보를 포함한 취수시설과 수로,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를 위한 주거 시설 및 관련시설로 구성된다.
4. 공사일정을 포함한 경수로 발전소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문서
5. KEDO가 2기의 경수로 발전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발전 체계, 시설, 건물, 구조물, 기기, 보조시설 외에 실험실, 측정기기, 공작기계실을 포함
6. 발전소 2기를 위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10년 저장 시설
7. 발전소 인수시까지 요구되는 모든 시험
8. 원자력업계 기준관행에 따라 KEDO가 발전소를 2년간 운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비부품, 마모성 부품, 소모성 자재 및 특수공구
9. 초기 운전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연료봉을 포함한 각 경수로의 최초작전용 핵연료
10. 완전한 범위의 모의훈련대의 제공을 포함하여 KEDO와 계약자가 원자력업계의 기준관행에 따라 실시하는 경수로발전소 운전과 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훈련계획
11. 원자력업계 기준관행에 따라 경수로발전소 1호기 완공후 1년간 이발전소의 운전과 유지보수에 KEDO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지원서비스
12. 전반적인 사업관리

제2부속서

북한이 그 책임을 지는 이 협정 제1조제2항에 언급된 임무 및 품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거주민 소개, 현존 구조물 및 시설의 이전을 포함한 경수로사업용 부지(육지 및 해상)확보
2. 북한내에서 이용 가능한, 경수로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 및 문서의 제공 또는 접근
3. 2기의 경수로발전소의 시운전을 위해 북한내에서 이용가능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
4. 경수로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수송하기 위하여 북한이 지정하고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부지에 인접한 기존의 항구, 철도 및 공항시설에 대한 접근
5. 골재 및 채석장 확보
6. 이 협정 제9조에 따라 가능한 범위까지의 경수로 부지로 연결하는 통신 선로
7. 시운전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KEDO가 훈련할 자질 있는 운전요원

제3부속서

이 협정 제3조제1항에 명시된 대로 북한이 미·북 기본합의문에 따라 경수로 사업의 제공과 관련

하여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은 미·북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바대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의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에 따른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을 허용한다.
2. 북한은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계속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동결상태 감시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3. 북한은 새로운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한다.
4. 미국기업이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북한과 미국은 이러한 부품의 인도전에 원자력의 평화적 협력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이 양자협정은 협정의 제4부속서에 명시된 대로 경수로 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된 후에 이행된다. 이 협정의 목적상 핵심부품이라함은 원자력공급국 그룹 수출통제목록에 따라 규제되는 부품을 말한다.
5. 북한은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 및 영구 처분을 위하여 계속 협조한다.
6. 북한은 이 협정이 서명되면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간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임시 및 일반사찰의 재개를 허용한다.
7.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핵심 핵부품의 인도이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협정을 전면 이행한다.
8. 경수로발전소 1호기가 완료되면 북한은 동결된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의 해체를 시작하여 경수로 발전소 2호기 완료시까지 이러한 해체작업을 완료한다.
9. 경수로발전소 1호기의 핵심 핵부품의 인도되기 시작하면 5메가와트실험용 원자로로부터 추출된 사용후 연료의 영구처분을 위하여 이 연료의 북한으로부터의 이전이 시작되며, 이러한 작업은 경수로 발전소 1호기 완공시까지 완료된다.

제4부속서

이 협정서의 제3조3항에 언급된 ‘경수로 사업의 상당부분’은 다음을 의미한다. 보다 상세한 정의는 제3조3항에 언급된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1. 경수로 사업을 위한 계약의 체결
2. 부지준비 완료, 굴착, 경수로사업 건설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완료
3. 선정된 부지에 대한 발전소 초기 설계의 완료
4. 사업 계획과 일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경수로발전소 1호기의 주요 원자로기기의 사양서 작성 및 제작
5. 사업 계획과 일정에 따른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경수로 1호기의 주요 비핵부품 인도
6. 사업계획과 일정에 규정된 단계에 부합되는 경수로 1호기 터빈용 건물과 기타 부속건물의 건설
7. 핵증기공급계통의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경수로 1호기원자로 건물과 격납 구조물의 건설
8. 사업공정에 따른 경수로 2호기의 토목공사와 기기제작 및 인도

3. 통일정책 관련 법규

-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433
-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 442
-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463
- (4) 남북협력기금법 / 465
- (5)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 470
- (6)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 477
- (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479
- (8)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491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제정 1990. 8. 1 법률 제4239호

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2.12. 8 법률 제4522호(출입국관리법)

1994.12.30 법률 제4850호(대외무역법)

1996.12.30 법률 제5211호(대외무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원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원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협약·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류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 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의사)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남·북한 왕래) ①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해외동포 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3국간의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원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원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2.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통일원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기타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사업자)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요금·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역 등) ①북한으로부터 내향하는 선박·항공기·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 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협조요청) 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방위세법 제4조 제1호의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관리법

2. 외자도입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7조(별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9조제3항,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29조(형의 감경)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북한주민의 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 <92.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6.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

(통일원과 그 소속기관직제)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상공지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1993. 3. 30 대통령령 제13872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78호

(교통세법시행령)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직제)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1995.12. 6 대통령령 제14819호

(병역법시행령)

1996. 5.31 대통령령 제15006호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장소) ①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3.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원장관이 지정하는 개항
 4.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원장관이 지정하는 곳
-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3조(협의회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以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원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2. 협의회의 위임을 받는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준용규정 등) ①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남북한 왕래 등

제9조(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눈다.

②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원’을 표기한다.

③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방문증명서: 갈색·8면

2. 남한방문증명서: 청남색 · 8면

④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장

8.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증명서 발급신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4매

4. 병역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다만, 해당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 · 서류 또는 자료

③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4호 · 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신청) ①대리인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②대리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본

나.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12조(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원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문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류 ·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0인이상의 단체 왕래

2. 정치적 목적의 왕래

3.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왕래

제13조(편의제공) 통일원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훨씬 못쓰게 된 경우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재발급신청서

2.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진 2매

3.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5조(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16조(방문기간) ①통일원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1년 6월 이내의 방문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시간은 당해 방문증명서의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증명서의 반납 등) ①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자가 귀환할 때에는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증명서를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통일원장관은 방문증명서의 발급대상이 된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경우에는 귀환후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북한방문결과보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9조(접촉승인신청)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2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접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호

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통일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후 7일이내에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외국에서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제20조(특례조치) 통일원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1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2조(출입심사) ①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통일원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제23조(심사확인) ①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원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4 장 교 역

제25조(교역당사자의 지정) 통일원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 전에 미리 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이 반출·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형태 및 대금 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④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27조(변경 승인사항 등) ①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미화 5천달러 상당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교역대상 물품의 공고) 통일원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하는 교역대상물품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에 앞서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조정을 명하거나 교역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협력사업

제30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최근 3년이내에 사업실적이 있을 것. 다만, 한국은행·정부특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특자기관 기타 협의회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1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

③통일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원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 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3조(취소절차) ①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 당국의 확인서
 5. 기타 통일원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 ② 제1항 각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이 정한다.
- 제35조(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36조(협력사업의 승인) ①통일원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30일이내에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②통일원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 통일원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 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 · 해제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원장관이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자도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보 쳐

제40조(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4.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41조(결제업무의 범위 ·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 ·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 ·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재정경제원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42조(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 항공기 ·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 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 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 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 · 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 · 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협의 등) ① 통일원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등의 운행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통일원장관은 선박 등의 정기운행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행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협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원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등의 운행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승인서를 교부한다.

제46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의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우편사업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3. 유선전기통신

제47조(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요금에 의한다.

제48조(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우편물운송법·임시우편단속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수당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방위세법. 다만,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 등”으로 본다.

⑤이 영에 정한 사항외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또는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제52조(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

①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협력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9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3.3.6>

제1보(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3.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 생략

부 칙 <9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5.12.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할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 칙 <96.5.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 <96.8.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정 1990.11.9 총리령 제371호

개정 1991.3.27 총리령 제384호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재외국민 등의 신분증명)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대신에 여권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영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방문기간연장신청서)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북한방문신고서 등) ①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북한주민접촉신청서 등) ①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통일원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출입신고서 등) 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자는 출입장소에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확인인은 별표와 같다.

③ 영 제10조제1항의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병역법에 의한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출입심사공무원은 제출자명부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사업자승인증)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승인증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수송장비운행승인서)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승인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남북협력기금법

/ 제정 1990. 8. 1 법률 제4240호

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3.12.31 법률 제4675호(국채법)

1996.12.12 법률 제5170호

(재정용자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입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5조(장기차입) ①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용자특별회계,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93.12.31>

제7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① 기금은 통일원장관이 운용 · 관리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일원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중 경제 및 재정 · 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 · 학술 ·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 ·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4. 남북교류 ·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 · 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지원 및 남북교류 ·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를 지출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담당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일시차입) ①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환수) ① 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일원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원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재정융자특별회계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및 명령) 통일원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 <9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6.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5)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 제정 1990.12.31 대통령령 제13237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

(통일원과 그 소속기관직제)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문화체육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 · 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3조(채권의 발행)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채권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의 이유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계획

5. 발행조건

6. 기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채권의 이자율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발행당시의 국 · 공채 및 보증사채 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③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4조(채권사무의 취급)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 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 · 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 ·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 ·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통일원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지원 등의 절차)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 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 문화체육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③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 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통일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써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 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지원의 방법) ①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11조(회계기관의 임명통지) 통일원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재정경제원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5조(결산보고서) ①통일원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

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기금의 계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 기금의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환수)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 통일원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 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3.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6)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 제정 1991.3.27 총리령 제38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 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 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
 4.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 이상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 이상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7.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숙식비·교통비 등 기본적 경비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 미만의 지원
 3.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 미만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의 기금사용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 미만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별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 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 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②국토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20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사단법인정관준칙 제6장·제8장과 [별표 2] 재단법인정관준칙 제2장·제4장 및 제6장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제정 1997.1.13 법률 제525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②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기준 등)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 연령·세대구성·학력·경력·자활능력·건강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단위로 행할 수 있다.

③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으로 하고,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①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호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통일원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④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호신청 등) ①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 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장을 거쳐 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결정 등) ①통일원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일원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통일원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장을 거쳐 재외공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이탈혐의자

4.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5.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 등)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등록대장)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본적·가족관계·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통일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4조(자격인정)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제15조(사회적응교육)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직업훈련) 통일원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취업알선)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제18조(특별임용) ①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이탈하기 전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이탈하기 전의 계급·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취적의 특례) ①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에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적을 정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제1항의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호적의 기재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취적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취적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취적허가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서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을 편제하여야 하고, 주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취적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주거지원 등) ①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간 통일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원장관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유권 등은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①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 및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거주지보호) ①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따른 애로사항의 해소 기타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를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보고업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기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내무부장관을 거쳐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지원)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연령·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료보호)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행할 수 있다.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내에서 동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제27조(보호의 변경) ①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1.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종료 또는 제5

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그 기간의 단축·연장을 내무부장관을 거쳐 통일원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내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업무 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주소·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의 사본을 내무부장관을 거쳐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비용의 부담) ①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그 과부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제30조(북한이탈주민후원회) ①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통일원장관은 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후원회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통일원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통일원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이의신청) ①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별칙)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이 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업무 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하 “귀순보호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협의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귀순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

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정착금 및 보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정착금 및 보로금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주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다.

제'8'조(교육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받고 있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행한다.

제'9'조(예산의 이체) 이 법 시행 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사업예산을 통일원장관에게 이체한다.

제10조(후원회의 설립준비) ①통일원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귀순북한동포후원회(이하 “귀순북한동포후원회”라 한다)의 이사중에서 5인이하의 설립위원(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후원회의 회장은 통일원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귀순북한동포후원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11조(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귀순북한동포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후원회가 계승하도록 통일원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청에 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후원회의 설립과 동시에 해석된 것으로 보며,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후원회가 이를 계승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계승될 재산의 가격은 후원회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격으로 한다.

제12조(처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동포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8)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제정 1997.7.14 대통령령 제15 43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행정조정실·재정경제원·통일원·총무처·외무부·내무부·법무부·국방부·교육부·문화체육부·농림부·통상산업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국가안전기획부·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1급 내지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기획부의 해당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소위원회) ①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구성한다.

제5조(회의) ①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안건

제6조(의견청취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원과 국가안전기획부의 해당위원이 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원의 해당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은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보호신청사실 통보 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장을 포함하되, 이하 “재외공관장 등”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장을 거쳐 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보호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②재외공관장 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정한다.

제12조(임시보호 등의 내용) ①법 제7조제3항에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라 함은 보호신청 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여부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하여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정한다.

제13조(임시보호 등의 결과통보) ①국가안전기획부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통일원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보호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자료를 추가로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혼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혼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자
2. 북한의 노동당·정무원·군·사회안전부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자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기타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첨보를 가지고 있는 자

제15조(보호결정 등) ①통일원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안전기획부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장을 거쳐 재외공관장 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국가안전기획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

하여 지체없이 통일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제5호에서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보호결정시 정치·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 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때에는 그의 권리·의무 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제18조(보호의 재신청) 보호신청자중 보호가 거부된 자는 새로운 사실 관계자료나 증거자료가 있는 때에는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국내입국교섭 등) ①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입국을 위한 당해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신병이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장관이 국가안전기획부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이를 정한다.

②외무부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이송시기·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통일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관리시설·교육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이 정한다.

③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 ①통일원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애로사항해소 기타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시설내에 심리·법률·직업·고충분야상담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심리·언행 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이 정한다.

⑤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안전기획부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일원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교부) 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성별·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임시신분증명서를 교부한다.

제24조(협조요청 등) ①통일원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동 시설의 경비·치안유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이에 협조한다.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 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

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금품의 지급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각각 정한다.

제26조(등록대장) ① 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안전기획부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작성을 위하여 통일원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원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의 통보내용과 등록대장을 따로이 관리하여야 한다.

④ 통일원장관은 법 제23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등록대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각각 정한다.

제27조(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① 보호대상자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원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원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원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원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자격인정절차)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원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원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원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원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보수교육 등의 기회제공)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 데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자격인정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사회적응교육)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

③ 통일원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의 사회적응을 돋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영농정착지원) ①통일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의 영농교육훈련실시 또는 농업현장실습지원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농림부장관은 이에 협조한다.

1. 북한에서 농업계 대학·전문학교, 농업계 고등학교 등의 재학기간이 1년이상인 자
2. 협동농장등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한 경력이 1년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자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자를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선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직업훈련신청 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노동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가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기관(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 등은 이에 협조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협조를 요청받은 노동부장관 등이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직업지도) ①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의 실시
2. 직종소개·근로조건·고용동향 등 직업정보의 제공
3. 각종 기능자격 검정안내 등
4.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지원
5. 기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

②통일원장관은 노동부장관 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 등은 이에 협조한다.

제34조(고용촉진지원)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 경력, 기능소지 여부 등을 수집·정리하여 대장을 작성·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취업알선)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노동부장관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송부받은 노동부장관 등은 신청인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마친 때에는 통일원장관과 협조하여 그가 훈련받은 직종과 관련되는 분야에 취업을 알선한다.

③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법인
3.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
4. 상시근로자 10인이상의 공·사기업체 또는 단체
5.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6. 기타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민간단체

제36조(공무원의 특별임용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북한이탈 당시 북한 정무원의 각 위원회·부 및 그 직속기관과 지방행정경제위원회에 재직하고 있던 자 또는 통일원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원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총무처장관, 내무부장관 및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총무처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총무처장관 등은 그 결과를 통일원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총무처장관 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37조(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주거지원)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연령·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동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통일원장관은 주거지원을 함에 있어 보호대상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가” 지역 : 특별시지역

2. “나” 지역 : 광역시 및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지역

3. “다” 지역 : “가” 지역 및 “나” 지역 이외의 지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원장관이 정한다.

④보호대상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원장관에게 동 주택의 분양·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원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대한주택공사사장 기타 동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이에 협조한다.

제39조(정착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 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6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

일원장관이 정한다.

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의하여 2억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있는 정보 : 2억 5천만원이하
2. 군함·전투폭격기 : 1억 5천만원이하
3. 전차·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 5천만원이하
4. 포·기관총·소총등 무기류 : 1천만원이하
5. 재화 : 시가상당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원장관이 정한다.

제41조(실태조사 등)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2년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3조(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2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보호대장의 내용을 내무부장관을 거쳐 통일원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①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한한다.

1. 국내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20세 미만의 자
2. 국내의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0세미만의 자
3. 국내의 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기술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①제4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를 지원한다.

②제4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를 지원한다. 다만, 사립의 경우에는 그 반액을 지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보호대상자가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교

육지원신청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원장관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보호대상자가 5급이상 공무원 · 영관급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교수 · 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이상인 경우

제49조(권한의 위임) 통일원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거주지보호업무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 ·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 · 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 · 정착에 관련된 사항

제50조(이의신청)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수령한 통일원장관은 지체없이 그 사본을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귀순북한동포보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귀순한 장교”를 “북한의 장교였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4. 남북관계 주요일지 (1993~1997)

1993

- 2.25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
북한, T/S훈련 및 IAEA 특별사찰 계획 비난
- 3.11 정부, 이인모 방북허용 관련 공식입장 발표
- 3.12 북한, 핵비확산조약 탈퇴 성명
정부 대변인, 북한 NPT탈퇴 관련 성명 발표
NPT탈퇴를 즉각 철회하고 남북상호사찰 조속실시 촉구
- 3.19 이인모,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을 통해 방북
- 4.1 김영삼 대통령, NPT탈퇴 철회 및 IAEA사찰수용 촉구
IAEA, 북한핵문제 유엔안보리 회부결의
- 4.7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개막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및 4대 요구조건' 채택
- 5.9~10
두만강개발계획 관리위원회 3차회의
쥘두만강지역개발 조정위원회(5.9)와 쥘두만강지역개발은행(5.10) 창설
- 5.11 북한핵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
북한의 NPT복귀와 IAEA안전조치협정 이행 요구
- 5.14 한완상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북한핵문제관련 남북대화 용의 표명
- 5.20 황인성 국무총리, 핵문제해결을 위한 고위급회담 대표접촉 제의
- 5.24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서울총회
김영삼 대통령, '남북연합' 단계 통한 점진적 · 평화적 통일 추진의사 표명
- 5.25 북한 정무원총리 강성산, 대남서한
최고당국자들이 임명하는 특사교환(5.31) 제의
- 5.29 황인성 국무총리, 핵문제 해결 및 남북한 현안문제와 북한측이 새롭게 제기한 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6.5) 제의
- 6.2 미 · 북한 제1단계 제1차 고위급회담(뉴욕)
대표: 갈루치 미 국무부 정치 · 군사담당 차관보,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

황인성 국무총리, 핵문제·특사교환 문제협의 실무대표접촉 제의
핵문제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문제와 특사교환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
대표접촉(6.5) 제의

6.4 미·북한 제1단계 제2차 고위급회담

북한 정무원총리 강성산, 특사교환문제협의 실무접촉 제의

6.7 황인성 국무총리, 핵문제·특사교환 문제협의 실무대표접촉 제의

6.10 미·북한 제1단계 제3차 고위급회담

6.11 미·북한, 북한 NPT 탈퇴보류 관련 공동성명 발표

6.14 황인성 국무총리, 핵문제·특사교환 문제협의 실무대표접촉 재차 제
의

6.15 북한 정무원총리 강성산, 특사교환문제협의 실무자접촉 수락 재촉구

6.26 북한 정무원총리 강성산, 특사교환제의 철회

7.6 김영삼 대통령, 제6기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3단계 통일방안과 통
일정책 3대 기조’ 천명

7.14~19

미·북한 제2단계 고위급회담(제네바)

7.27 한완상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북한 IAEA 핵사찰수용시 기업인방북
허용

8.3~10

IAEA 북한핵 사찰단 방북

8.4 황인성 국무총리, 핵통제공동위원회 재개 제의

8.9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변인, 우리측의 핵통제공동위 개최제의 거부

8.13 한완상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남북인간띠잇기대회 및 제4차 범민족
대회 관련 담화

8.14 송영대 통일원차관, 제14차 핵통제공동위 재개 촉구

8.15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북인간띠잇기대회 개최(독립문'?임진각)

김영삼 대통령 제48주년 광복절 경축사

북한에 핵무기 개발의혹 해소 촉구

8.26 IAEA, 북한과의 핵사찰 협상재개 공식발표 (8.31~9.4, 평양)

9.2 황인성 국무총리, 특사교환 절차협의 실무대표접촉 제의

9.13 김영삼 대통령, 선 핵문제해결·후 남북정상회담 개최표명

9.17~24

줄93세계한민족축전

9.22 한완상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남북이산가족 제3국 상봉추진 제의
북한 외교부대변인, NPT탈퇴유보 철회 위협

9.27~10.1

제37차 IAEA 총회, 핵사찰수용촉구 대북한 결의안 채택

10.5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1차 실무대표접촉(판문점 통일각)
북한 외교부 부부장, 조선반도의 핵문제 미·북한 해결주장(유엔총회
연설)

10.9~12

애크만 미하원 아·태소위원장 방북

10.12 판문점을 경유 서울로 귀환

10.14 북한적십자회 위원장대리, 미전향출소 좌익수 김인서·함세환 송환
요구

10.15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2차 실무대표접촉(판문점 평화의 집)

10.24~25

동아시아 경기대회 협의회 제7차 회의(평양)

10.25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3차 실무대표접촉(판문점 통일각)

11.1 제48차 유엔총회, 핵사찰 수용촉구 대북결의안 채택

찬성 140국, 반대1국(북한), 기권 9국(중국, 쿠바 등)

11.3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 북측단장 박영수, 제4차 실무대표접촉 개최
거부

11.3~4

제2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개최

줄94 T/S 훈련 중단문제는 북한의 NPT복귀, IAEA의 특별사찰 및 남북
상호사찰 수용 등 획기적 태도변화시 검토

11.4 북한 외교부대변인, 유엔총회의 대북결의안 거부

11.8~10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제2차 산업·자원·환경분야 전문가회의(서울)

11.23 한·미정상회담, 북한핵문제관련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접근’ 방식
합의

11.24~줄94.1.4

미·북한 뉴욕실무접촉(7회) 개최

11.29 북한 외교부대변인, NPT탈퇴 재선언 위협

12.30 북한 외교부대변인, 북한핵시설 제한사찰만 가능 주장

1994

1.1 김영삼 대통령 신년사, 북한의 개혁·개방 촉구

김일성 신년사, 한반도 핵문제의 미·북한회담 통한 해결주장

1.6 김영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선 핵문제해결·후 남북정상회담 개최 표명

1.7~2.15

IAEA·북한, 사찰협상(7회) 개최

㈔94.2.15 북한은 제7차 협상에서 영변 7개 사찰대상 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

1.14 미국·러시아 정상회담, 북한의 국제핵사찰 수용 및 NPT가입국에 대해 NPT 무기한 연장 촉구

1.21 북한 외교부대변인, IAEA의 임시사찰 촉구 거부

1.26~27

미·북한, 미군유해 송환관련 실무회의 개최

1.27~2.1

빌리 그레함 목사 방북, 북한핵 관련 클린턴 대통령의 구두메시지 전달

펩귀환 후 클린턴 대통령에게 김일성 메시지 전달

2.1 미 상원, 북한 핵문제 관련 대북제재 촉구 결의안 채택

2.11 한승주 외무부장관, T/S훈련과 북한핵문제 연계추진 표명

2.15 IAEA 대변인, 영변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수락 관련 성명

2.18 이영덕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남북특사교환시 핵통제공동위 재개제의 표명

2.22~25

미·북 뉴욕실무접촉 개최, ㈔94.3.1 ‘4개항 동시조치’ 시행에 관한 합의문 발표

2.23 IAEA 정기이사회, ㈔94.2.15 북한의 사찰수락 합의에 대한 북한의 후속적 협조노력 촉구

2.25 김영삼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경우 남북경제 공동개발

2.28 송영대 통일원차관, 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대표접촉 제의

핵문제 관련 미·북한 뉴욕실무접촉

- 3.1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 북측단장 박영수, 제4차 실무대표접촉 수정 제의
- 3.2 송영대 통일원차관,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 북측의 수정제의 수락
- 3.3 국방부, 94 T/S훈련 조건부 중단 발표
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대표접촉(판문점 평화의 집)
- 3.3~14
IAEA사찰단, 북한 7개 신고핵시설에 대한 사찰 개시
- 3.9 특사교환을 위한 제5차 실무대표접촉
- 3.12 특사교환을 위한 제6차 실무대표접촉
- 3.14 IAEA사찰단, 북한의 영변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 종료(3.3~3.14)
- 3.16 IAEA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 영변7개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결과 발표
북한, 영변소재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사찰 거부
특사교환을 위한 제7차 실무대표접촉
- 3.17 외무부 대변인, IAEA 완전사찰수용 대북촉구
- 3.19 이영덕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입장 거듭표명
- 3.21 특사교환을 위한 제8차 실무대표접촉, 북한의 ‘서울불바다’ 발언 및 결렬
IAEA 특별이사회,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관련 대북결의안 채택
북한 외교부대변인, NPT탈퇴 위협
- 3.23 국회 외무통일위, 북한핵 전면사찰 수용 촉구 결의문 채택
- 3.24 IAEA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 북한 핵사찰 결과 안보리 보고
사찰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6주후 재사찰 필요, 유엔 안보리의 조치 촉구
카라신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8자회담’ 제의 성명
- 3.28 한·중 정상회담 개최(북경)
- 3.31 유엔 안보리, 북한 핵문제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 북한의 사찰수락 완수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 4.1 주유엔 북한대사, IAEA추가사찰 거부 표명

- 4.4 북한 외교부대변인,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거부
- 4.7 김영삼 대통령,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구성 지시
 클린턴 대통령, 북한 핵문제 관련 ‘고위 정책조정팀’ 구성 지시
 갈루치 차관보 ‘의장’ 겸 ‘북한 핵문제 전담대사’ 임명
- 4.11 북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관철을 위한 정부·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 개최 및 ‘8·15민족대회’ 개최 제의 대남편지 채택
- 4.12 통일원 대변인, 북측의 통일전선전술기도 중지 요구
- 4.18 한·미 고위실무회담
- 북한추가사찰 받아야 미·북 3단계회담 개최키로 합의
- 4.20 북한 외교부 비망록, IAEA의 완전사찰 거부
- 4.27 북한 외교부대변인, 5MWe 원자로 시료채취 거부
- 4.28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 실무접촉(뉴욕)
 북한, 군정위(MAC) 일방 철수 통보
 북한 외교부 대변인,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대미협상 제의
- 5.3 통일원 대변인, 정전협정 준수 및 군정위 조속 정상화 촉구
 북한 외교부 대변인, 5MWe 원자로 핵연료봉 교체강행 표명
- 5.9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 실무접촉(뉴욕)
 강영훈 촬한적출 총재,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 재개 촉구
- 5.12 이홍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북한 핵개발땐 비핵화공동선언 무효 경고
- 5.18~24 IAEA 사찰단, 북한핵 사찰 활동 시작
- 5.24 북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설치 통보
- 5.30 유엔 안보리, 북한 5MWe 원자로 연료봉 교체 관련 ‘의장성명’ 채택
- 5.31 외무부 대변인,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관련 성명
 북한은 더이상 사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시키지 말 것을 경고
- 6.3 미·북회담 북측대표단장 강석주, 미·북회담 개최 희망 표명
- 6.6 유엔사, 북한측에 정전위 비서장회의 개최 제의
 북한 원자력 총국장 박용남, IAEA의 특별사찰결의시 NPT탈퇴위협
- 6.9 이홍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북한의 핵연료봉 단독 교체시 제재경고

6.10 IAEA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찬성 28, 반대 1, 기권 4

6.11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유엔사의 군정위 소집제의 거부

6.13 북한 외교부대변인, IAEA 탈퇴 성명

6.14 외무부 대변인, 북한 IAEA탈퇴 관련 우려 표명

6.15~18

지미 카터 미국 전대통령, 판문점 통해 방북

6.16 김일성, 핵개발 동결 용의 표명 (김일성 · 카터 회담)

6.17 김일성, 남북정상회담 개최 용의 표명 (김일성 · 카터 2차회담)

6.18 김영삼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의 수락

6.20 이영덕 국무총리,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제의 대북전통문

6.22 북한 정무원총리 강성산, 예비접촉 수락 대남전통문

6.28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개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
(^{94.7.25~27 평양개최}) 채택

7.1 정상회담 실무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제1차 대표접촉(통일각)

7.2 정상회담 실무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제2차 대표접촉(평화의
집), 초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절차합의서^{94.7.27} 채택

7.7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통신실무자접촉(평화의 집)

7.8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경호실무자접촉(통일각)

북한 핵관련 미 · 북한 제3단계 회담

7.9 북한, 김일성 사망 발표

북한 제네바 대표부, 미 · 북 3단계 고위급회담 연기 발표

7.11 북한 김용순, 남북정상회담 연기 통보

북한 주유엔부대사 김수만, '핵동결 정책' 지속 표명

7.23 한 · 일정상회담, 북한핵문제 해결전제 경수로지원

8.1 국제사면위, 북한 구금 정치범 55명 명단 공개

8.2 김영삼 대통령, 납북 억류자 조속 송환 촉구

8.5 미 · 북 3단계 고위급 회담 재개(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 미 · 북한
합의문발표

송영대 통일원차관, 남북정상회담 개최원칙 유효 표명

8.12 강영훈 촘한적^{94.7.27} 총재, 남북적십자 총재접촉 제의

8.13 북한 외교부장, 특별사찰 절대불가 표명

8.15 김영삼 대통령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천

명

- 8.20 북한 외교부대변인, 특별사찰을 전제로 한 경수로도입 불가표명
- 8.27 북한 중앙통신, 한국형경수로 거부 표명
- 9.1 중국, 군정위 철수결정 통보
- 9.2 미 국무부, 중국 군정위 철수 유감 성명
- 9.6 미·북,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판문점 협상 재개
- 9.9 북한 외교부대변인, 미·북회담에서 평화협정문제 협의주장
- 9.10 미·북 평양 전문가회담, 연락사무소 설치문제 논의
 미·북 베를린 전문가 회담, 북한핵문제 해결관련 합의문 발표
 이홍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제의 경고
- 9.13 북한, 6·25실종 미군 유해 14구 인도(판문점)
- 9.16 북한 외교부대변인, 특별사찰 거부
- 9.23 북한 외교부대변인, 특별사찰 압력땐 흑연감속로 동결 철회 위협
- 10.8 김영삼 대통령, 북한핵 미타결시 유엔안보리회부 경고
- 10.18 북적 위원장대리 이성호, 미전향장기수 김인서·함세환·김영태 송환 요구
- 10.21 한·미 국방장관회담, 94 T/S훈련 중단 합의
- 10.21 미·북한,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기본합의서 서명·발표
- 11.7 김영삼 대통령, 핵·경협 연계 완화방침 표명
- 11.9 정부,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 11.10 조평통 대변인 담화, 남북경협안 거부
- 11.14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남북관계개선이 미·북합의 이행에 긴요
- 11.14~18 폐연료봉 처리 관련 미·북 전문가 협상 개최(평양)
- 11.18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구성·운영 문제 관련 실무협의
 북한 외교부대변인,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거부 표명
- 11.24 남북경협 후속조치 발표, 촬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률 등
 3개 지침 확정·발표
- 11.28 IAEA와 북한 원자력총국, 북한의 핵동결 및 대미합의 이행확인
- 11.30 정부, 미군으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 12.2 경수로 관련 미·북 전문가 회담
- 12.9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미·북 전문가 회담
- 12.10 정부,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따라 국내기업 방북 승인

- 력키금성, 삼성, 현대, 쌍용, 영신무역, 대동화학 등 6개 기업
- 12.15 군정위 중국군 대표단, 판문점에서 철수
- 12.15 유엔총회, ‘핵안전협정 이행 및 IAEA 사찰수용촉구 대북 결의안’ 채택
- 12.15~16 KEDO 설립 관련 한·미·일 고위협의(워싱턴)
- 12.16 국회, 남북한 거래는 민족내부 거래임을 명시한 졸WTO협정 이행 특별법안 졸 통과
- 12.21 북한 당·정·단체 대표협의회, 국가보안법철폐 대책위원회 구성

1995

- 1.1 김영삼 대통령 신년사
- 남북화해·협력 촉구
 북한 신년사 대신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게재,
-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대미 요구
- 1.9 북한 외교부대변인, 미국상품 반입제한 및 무역선박 입항금지 해제 결정 발표
- 1.9~12 KEDO 설립 관련 한·미·일 실무협의(워싱턴)
- 1.12 통일원, 국내기업 방북 추가 승인
 한화그룹·동양에너지·신원·대우그룹 등 4개 기업
- 1.15 미국, 대체에너지 중유 5만톤(1차분) 북한에 제공
- 1.16 북한 외교부대변인, 한국형 경수로 명기거부 표명
- 1.18~23 폐연료봉 처리 관련, 미·북 전문가 회담(평양)
- 1.19~20 KEDO 설립 관련 한·미·일 실무협의(동경)
- 1.20 미 국무부,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
- 1.23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발족
 북한 외교부대변인,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반대입장 표명
- 1.24 북한 정당·단체 연합회의, 8·15 공동경축 및 ‘대민족회의’ 개최

대남제의

1.25 송영대 통일원차관, 8·15 공동경축행사 및 현안문제협의 차관급회
담 수정제의

1.28~2.1

경수로 제공 문제 협의를 위한 미·북 전문가회담(베를린)

1.30~2.4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미·북 전문가 회담(평양)

2.6 북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김정일 생일(2.16)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발표

2.11 한·일 외무장관, 대북경수로 지원문제 관련 합의

-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미·북합의가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이 불가피

2.15 북한 외교부대변인, 한국형경수로 강요시 미·북합의 파기 위협

2.24 북한 외교부대변인, 평화보장체계 수립문제 관련 남한배제 주장

2.25 북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사망 발표

국방부 대변인, 95 T/S훈련 중단 발표

2.28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 북한 강요로 철수

북한 외교부대변인, 정전협정 무실화책동 합리화

3.2~3

KEDO 설립 관련 한·미·일 고위협의(워싱턴)

3.7 김영삼 대통령, 대북 곡물·원자재 제공 용의 천명(베를린)

3.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공식 발족

3.10 북한, 김대통령의 대북 물자지원 제의 거부

3.11 북한 외교부대변인, 한국형 경수로 수용 거부 및 KEDO와의 협상거부 입장 표명

3.13 통일원, 남북경협추진 국내기업 방북 추가 승인

해태익스프레스, 산수음료, 대호건설, 기아인터트레이드, 효성물산, 제일제당, 연홍해외유한공사, 한국특수선 등 8개 기업

3.23~24

한·미 고위협의회(워싱턴), 한국형 경수로 제공 재확인

3.29 김영삼 대통령, 한국형경수로 거부시 대북경수로 지원 불가능 표명

3.29~30

8·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 통일대축전 관련 민간급 접촉제

의 편지발송

- 4.8 나옹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북한측에 울진원자로 공개 용의 표명
- 4.10 미국, 북한과 직통전화 개설
- 4.11 통일원, 불법방북 대종교 총전교 안호상의 사법처리 방침 표명
- 4.12~14
경수로 제공 문제 관련 미·북 전문가 회담(베를린)
- 4.16 방북 대종교 총전교 안호상 일행, 판문점 통과 귀환
- 4.18~20
경수로 제공문제 관련 미·북 전문가 회담(베를린)
- 4.19 북한 외교부대변인, 선 평화협정·후 경수로협상 주장
- 4.22 외무부 대변인, 미·북 베를린 전문가 회담 결렬 관련 핵동결
해결시 대북제재경고
- 북한 외교부대변인, 미·북 베를린 전문가회담 결렬 관련 미측에 책임전가
- 5.3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 폐쇄 조치
- 5.4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중감위 사무실폐쇄는 정전협정 위반행위라고 경고
- 5.11 나옹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대북경수로 ‘한국형’, ‘중심적 역할’ 고수 언명
NTP연장회의, NTP조약 무기한 연장 결정
- 5.15 김영삼 대통령, 북한에 곡물·물자 제공 용의 표명(국제언론인협회 제44차 총회)
- 5.17 국제언론인협회(IPI) 제44차 연례총회, 북한의 개방·언론자유 촉구
결의문 채택
- 5.19~6.12
대북경수로지원 관련 미·북 준고위급회담 개최(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
- 5.26 북한 이성록, 일본에 쌀 공급 공식 요청
나옹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대북 곡물지원 관련 대표접촉 제의
- 5.29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 한국형경수로 거부 재확인
- 5.30 ‘제86 우성호’ 북한에 의해 나포
- 6.1 나옹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남북직교역 확대 추진방침 표명
- 6.6 송영대 통일원차관, 대북 쌀제공 관련 북한측의 직접 호응 촉구

- 6.10 북한 외교부대변인, 미·북회담 지연시 폐연료봉 재처리 경고
- 6.13 미·북 쿠알라룸푸르 준고위급회담 타결, 대북 경수로지원 관련
공동 언론발표문 발표
강영훈 촬영팀 총재 대북방송 통지문, 우성호송환 관련 남북적십
자연락관 접촉제의
- 6.17~24
남북간 북경회담, 대북 쌀제공문제 협의
- 6.18 미, 폐연료봉 처리 기술진 파북
- 6.23 일·북, 쌀제공문제 관련 협상(동경)
- 6.24 남북한, 대북 쌀 15만톤 제공 합의(북경)
- 6.25 대북 쌀 제공 2천톤 선적 '씨아펙스호' 출항(동해항)
- 6.29 정부, 북측의 '씨아펙스호' 인공기 계양사건 관련 북한 당국의 공
식사과 없으면 쌀지원 중단 결정
북한 외교부 비망록 발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대미 촉구
- 7.1 북한 당국, '씨아펙스호' 인공기 계양사건 관련 대남 공식사과
- 7.3 송영대 통일원차관, 대북 쌀지원 재개 발표
- 7.6 통일원, 기술자 방북 첫 승인((주)대우)
- 7.9 안승운 목사 납북
- 7.13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관련 실무접촉
- 7.15~19
제2차 남북간 북경회담 개최
- 7.25~29
미·북 폐연료봉 안전보관 관련 제4차 전문가회담(평양)
- 7.27 한·미 정상회담
- '대북 공동 전략협의체' 구성 합의(워싱턴)
- 7.31 밀입북(6.28) 박용길, 판문점 통과 귀환
- 8.2 쌀 수송선 '삼선비너스호' 선박 및 선원억류사건 발생
- 8.4 KEDO, 대북 중유 공급권자로 유공 선정
- 8.4~6
남북한·해외 역사·고고학자 참석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오사카)
- 8.7~8
제3차 한·미 고위정책협의회 개최(호놀룰루)
- 8.9 통일원, 쌀 수송선 '삼선비너스호' 조속송환 촉구 및 이를 위한

남북대표접촉 제의

8.10~14

대북 쌀지원 관련 북경 실무접촉, ‘삼선비너스호’ 선원의 귀환문제 및 제3차 북경회담 재개 문제 협의

8.11 북한, 고려연방제 발표 15돌 관련 비망록 발표

8.12 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 북의 쌀 수송선 억류관련 선원전원과 선박의 조속송환 촉구

8.14~10.3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표 정민주, 이혜정 밀입북

8.15 김영삼 대통령, 한반도 평화정착 기본원칙 제시(광복절 경축사)

8.15~22

KEDO 경수로 부지조사단 방북

8.22~28

곽선희 소망교회 목사 방북

8.23 북한, 유엔에 수재긴급구호 요청

8.30 제4차 세계여성회의 개막(북경)

9.1 국제선명회, 북한에 현금 50만달러 · 식량 등 수재구호품 지원 결정

9.4 유엔 인도지원국(DHA), 북한 50만명 이재민 발생 발표

9.4~9

유엔홍수피해 조사단 방북

9.6 북한, 조총련 통해 일본에 수해지원 요청

9.7 미국, 북한 수해 2만5천달러 지원 결정

북한 외교부대변인, 주한미군철수 및 대미 평화협정 수립촉구

9.11~12

KEDO, 북한 경수로 공급협정체결 관련 고위급회담(쿠알라룸푸르)

9.12 유엔조사단, 북한 수해 조사결과 발표

북한, 선명회에 식량 긴급지원 요청 서한

9.13~15

KEDO, 북한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관련 전문가 회담(ку알라룸푸르)

9.14 나옹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한적을 통해 대북수해지원 5만달러 지원 발표

9.20 한국무역협회, 대규모 투자사절단 방북추진 발표

9.21 나옹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기업인 대규모 방북 불허 방침 표명

- 9.22 통일원 대변인, 우성호선원 즉각 송환촉구
IAEA, 대북 핵안전협정 이행촉구 결의안 채택
일본 외무성, 대북 수재 50만달러 지원 발표
- 9.25 나옹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대북지원과 납북자 문제 연계표명
- 9.25~29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미·북 전문가 회담
- 9.27~30
제3차 남북간 북경회담
- 9.28 공노명 외무부장관, 북한 인권보장 촉구 유엔총회 기조연설
- 9.29 북한, 미국 민항기 영공통과 허용발표
- 9.30 KEDO·북한, 경수로 협정 체결 관련 제2차 전문가회담
10. 2 남북간 북경회담 북측 수석대표 전금철, 한반도내에서의 남북대화 거부
- 10.24 김영삼 대통령, 한반도 평화정착 기본입장 제시
(미국 유엔협회 연설)
북한, 무장간첩 2명 남파
- 10.27 오인환 공보처장관, 북한 무장간첩도발 즉각 중단 촉구
- 11.3 제2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현 정전협정 유효합의(공동선언문)
- 11.9 한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 11.10 북한, 인민무력부장에 최광 임명
- 11.14 한·중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시까지 현 정전체제 준수
- 11.18 한·일정상회담, 일본의 대북수교교섭 3원칙 제시
- 12.15 KEDO·북한, 경수로 공급 협정 타결

1996

- 1.5 KEDO·한국전력, 대북경수로건설 상업용역 계약 체결
- 1.11 미·북한, 미군유해 송환협상 개막
- 1.14 대북 경수로 지원장비 첫출발
- 1.16 제4차 KEDO 부지조사단 평양도착 및 제3차 조사단 평양 출발
- 1.18 세계식량계획(WFP), 대북식량지원 참여 호소
- 1.24 한·미·일, 대북쌀지원 고위정책협의회 개최(하와이)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않기로 합의

- 1.30 IAEA 대변인, “북한, 주요핵시설에 대한 사찰 계속 거부” 발표
- 2.1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이산가족상봉 최우선추진 천명
- 2.2 북한 대외경제위원장 이성대, 일본에 추가식량지원 요청
- 2.12 강영훈 「한적」 총재, ‘제707 대영호’ 선원 송환요구
- 2.14 국방부, 96 T/S 훈련 중지 발표
- 2.22 북한보안요원, 러시아 무역대표부 무장난입 망명신청
북한 외교부대변인,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을 위한 조·미 잠정 협정체결’ 제의
- 2.23 미, 북한 여행경고국 지정 해제
- 2.25 KEDO 제4차 부지조사단 귀환
- 3.1 김영삼 대통령, 남북대화 조속재개 촉구
- 3.2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대북식량지원 정부입장 불변강조
북한측의 공식의뢰, 관련회담 한반도내 개최, 대남비방·중상중지
- 3.5 북한 화물선 ‘염분진호’ 선원 판문점 통해 송환
- 3.8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평화보장체계수립관련 ‘비망록’ 발표
- 3.11 한·미, 대북 경수로사업 한국의 중심적 역할 합의
- 3.18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사업 주계약자로 한국전력 공식지정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 “북한, 핵동결 검증 불용” 비난
- 3.20 KEDO-한국전력, 주계약자 합의서 서명(뉴욕)
북한, 잠정협정관련 공한 유엔 안보리에 제출
- 3.22 국제적십자연맹(IFRC), 북한의 식량원조요청 발표
- 3.26 KEDO 총장단 6명 방북
- 3.27~28 UNDP, 두만강 통신 및 하부구조 실무회의 개최(선봉시)
- 3.29 북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광진, 비무장지대에서의 모종조치 위협 대남담화
- 3.30 국방부, 북한 김광진 담화관련 경고 성명
- 4.3 주한 유엔군사령부, 대북경고 성명
- 4.4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DMZ 불인정 담화 발표
- 4.5 국방부, 북한의 DMZ지위 불인정 선언 관련성명
- 4.5~7 북한군, 판문점 공동구역내 무장병력 투입(3차례)

- 4.6 김영삼 대통령, 북한의 DMZ도발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 4.9 유엔 안보리, 북한도발관련 긴급의제 채택
 중국 외교부 진건 대변인, 정전협정 유효 표명
- 4.11 유엔 안보리, 북한의 DMZ 도발관련 의장 언론발표문 채택
- 4.12 중국, 한반도 새평화보장체제 협의 참여 용의 표명
- 4.15 파노프 러시아 외무차관, 한반도주변국 남·북·미·일·러·중·유
 엔·IAEA의 ‘8자회의’ 개최 제의
- 4.16 한·미정상회담, ‘한반도 4자회담’ 제의
 중국 외교부대변인, 4자회담관련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표명
 일본 하시모토 총리, 4자회담 제의 지지 표명
- 4.18 북한 외교부대변인, 4자회담관련 “현실성 검토중” 언급
- 4.20 국방부, 북한 해군 경비정 2척 경계선 침범 발표
 미·북 미사일 회담 제1차 회의(4.20~21, 베를린)
- 4.23 북한, 북한군 창건일(4.25)을 국가적 명절로 제정
- 4.24 중국, 4자회담 성사 적극 협조표명(제3차 한·중고위정책협의회)
- 4.25 주러시아 북한대사 손성필, 4자회담관련 “검토중” 표명
- 4.26 미 국무부, 대북 경제제재 해제조건 통보
 테러리즘 포기, 미군유해 반환, 미사일협상 계속
- 4.27 통일원, 3개업체에 대북 협력 사업자 승인
 삼성전자, 태창, 대우전자
 북한, 유엔에 긴급 식량원조 요청
- 4.27~5.7
- KEDO 5차 부지조사단 방북
- 4.29 (주)대우, 북한 남포공단에 첫 합영공장 설립 발표
- 5.1 미국 국무부, 북한을 테러활동지원국으로 발표
 미국 백악관대변인, 북한 핵연료봉 봉인착수 발표
- 5.2 IAEA대변인, 북한 핵연료봉 시료채취 불허 발표
 일본 외상, 4자회담 이후 대북수교 협상가능 표명
- 5.4~7
- 미·북한, 제2차 유해협상 개막(뉴욕)
- 5.7 북한 외교부대변인, 미국에 대해 4자회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요구
- 5.13 LG그룹, 대북 임가공 컬러TV 첫 반입
- 5.16 대한적십자사, 북한에 4차구호품 식용유 18만ℓ 지원

- 5.17 김영삼 대통령, 월드컵 남북분산개최 거듭 표명
북한 무장군인 7명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침범
- 5.20 미국, 4자회담관련 남·북·미 3자 접촉 대북 제의
- 5.21 KEDO-북한, 대북경수로건설인력 영사보호의정서 타결
- 5.23 북한 미그 19기 1대(이철수 대위) 귀순
북한 고속경비정 5척 서해 침범
북한, 월드컵 남북공동개최 불가능 FIFA 통보
- 5.24 북한 노동신문, 4자회담공동설명회 거부 논평
미국, 미사일 수출관련 대북한 경제제재 발표
- 5.26~28
리처드슨 미 하원의원 방북(미군유해 송환문제 협의)
- 5.31 북한 과학자 정갑렬 등 2명 귀순
- 6.1 일본 하시모토 총리, 대북 식량지원 표명
로드 미국무부 차관보, 미사일 동결 및 4자회담 참여시 대북제재 완화 표명
- 6.6 유엔, 4천3백만달러 규모 제2차 대북식량지원계획 발표 및 국제지원 호소
- 6.10~14
미군유해발굴 조사문제 협의(평양)
- 6.11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대북 300만달러 상당 식량지원 방침 발표
- 6.12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4자회담 호응 대북 촉구
미 국무부 대변인, 대북 620만달러 식량지원 발표
- 6.13 북한 경비정 3척 침범
- 6.14 대한적십자사, 제5차 대북 수재민지원계획(밀가루 572만톤) 발표
KEDO·북한, 경수로 통신·통행의정서 합의
- 6.17 유엔군축회의, 남·북한 동시가입 승인
- 6.21 IAEA, 북한 핵안전협정 위반 성명
- 6.23 한·일 정상회담 개최(제주)
- 6.25~29
제5차 IAEA 협상대표단, 방북 협상
- 6.26 미·북 4자회담공동설명회 관련 실무접촉
북한, 국가추도기간 1년 연장

일 · 북 수교협상 재개문제 실무접촉

7.6 KEDO 제6차 부지조사단 방북

7.8 김영삼 대통령, 북한에 4자회담 호응 촉구

김일성 사망 2돌 중앙추모대회(김정일 참석)

7.9 정부, KEDO 사무국에 사업전 용역비 600만달러 지원

7.10~31

제1차 미군유해 공동발굴조사

7.11 KEDO · 북, 경수로 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3개 후속의정서 공식서명

7.15 이수성 국무총리, 4자회담 수용시 대북지원 발표

7.17 중국 강택민 주석, 4자회담 지지 발언

7.19 통일원, 한전에 대해 경수로사업 관련 협력사업자 승인

7.20~30

KEDO의정서협상 실무대표단 방북(묘향산 지역)

7.21 ASEAN 외무장관 회담, 남북대화 재개 촉구

7.22 한 · 러 외무장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긴밀협력 합의(자카르타)

7.24 4자회담 관련 미 · 북 실무접촉

7.25 조선인민군 판문점대변인, 대미 장성급 회담 개최 제의

7.29 표류 북한군 하사 김영길, 판문점 통해 송환

미군유해 1구 판문점 통해 미군에 송환

7.30 북한, UNDP에 수해지역 점검 요청

7.31 김영삼 대통령, 4자회담 수용시 대북경제지원 협력 표명

8.1 강영훈 「한적」 총재, 북한 선박 및 민간인 시신 2구 송환제의

8.2 북한, 12월 외국 항공기에 영공개방 방침 발표

8.5~7

한국어 언어학자 한 · 북 · 중 국제학술대회 개회(장춘)

강영훈 「한적」 총재, 소설가 김영 송환요구 대북전통문

8.7 북한 군인 및 민간인 시신 4구 판문점 통해 송환

8.10 「한총련」 대표 유세홍, 도종화 평양 도착

8.12 강영훈 「한적」 총재, 북한수해관련 남북적십자 총재 회담 제의

8.14 북한, 김영 중국측에 인도

8.15 김영삼 대통령, 4자회담 실천방향 제시(광복절 경축사)

8.21~24

토니 홀 미 하원의원 방북(북한식량사정 조사)

8.22~9.26

경수로 지원관련 부지인수 및 서비스 의정서 2차 협상

8.28 일·북 수교교섭 실무접촉 재개

8.29 대우, 북한 남포공단에 직원 첫 상주

8.30 북한적십자회 위원장대리, 김인서 송환요구 대남전통문

9.8 김영삼 대통령, 대북수해 복구비 35만달러 지원 표명
북한, 유엔에 식량원조 공식 요청

9.9 「한적」 제8차 대북수해 물자지원

9.10 북한·러 상호 우호 및 원조조약 시효 만료

통일원 대변인, 나진·선봉 국제투자포럼 불참 발표

9.13 남북한, 북한영공 한국민항기에도 개방키로 합의

9.13~15

북한, 나진·선봉 국제투자 및 기업토론회 개최(현지)

9.17 강영훈 「한적」 총재, 인도문제협의를 위한 적십자 회담 호응촉구
대북전통문

9.18 북한 잠수함 이용 무장간첩 26명 동해상 침투

9.19 유엔사, 북한 무장 잠수함 침투관련 대북 통지문

국방부 대변인, “잠수함 침투사건을 명확한 대남도발행위로서 중대한 정전협정위반사항”으로 규정

9.20 유엔 안보리, 북한 무장잠수함 침투 관련 의장성명 채택

미국 국무부대변인, 잠수함 사건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

IAEA, 북한 과거핵 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

9.23 국회, 북한무장공비 침투관련 대북결의안 채택

KEDO-북한, 부지인수 및 서비스의정서 2차 협상 중단

북한 인민무력부 담화, 무장공비침투관련 “정상훈련중 기관고장으로 표류, 잠수함·인원송환” 주장

9.24 클린턴 미 대통령, “잠수함 사건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 발언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변인, T/S훈련 재개용의 언급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통일문제보다 평화정착 우선 강조

10.1 국방부, T/S훈련 재개방침 표명

10.9 한·미연합사, 「독수리연습」 실시(10.28~11.10) 발표

10.12 국회, 북한무장공비침투 및 보복협박관련 제2차 대북결의안 채택

- 10.18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대남정책변화전 대북지원 불가 입장 발표
- 10.21 김영삼 대통령, 무장공비침투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조치 대북촉구
두만강개발계획(TRADP) 5개국위원회 제2차 회의 개막
- 10.25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 핵동결 파기시 군사대응 대북경고
- 10.29 미 국무부 대변인, 미사일 실험 중단 대북촉구
유엔 총회, 핵안전협정 이행 촉구 대북결의안 채택
- 10.30 아태경제이사회(ESCAP)각료회의, 남북한 철도복원 노력키로 합의
(뉴델리)
- 10.31 유엔 총회, 한국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
- 11.1 한·미 제28차 연례안보협의회(SCM)개최
- 11.4 한·러 국방장관회담, “북한잠수함침투는 주권침해 행위” 규정
- 11.8 김영삼 대통령, 잠수함 침투 사과전 대북경수로 지원 불가 언명
- 11.10 주한미대사, “북한 잠수함 침투 사과해야 4자회담 가능” 발언
- 11.13 판문점 「자유의 집」 신축 착공식
- 11.15 북한 중앙통신, 경수로사업 지연 관련 제네바합의 파기 위협
- 11.19 북한 중앙통신, 판문점 연락사무소 철수 및 업무중지 선언
- 11.20 북한, 판문점 북측 연락사무소 잠정 폐쇄
- 11.24 한·미 정상회담개최(마닐라), 잠수함 사건 관련 북한측에 ‘수락할 수 있는 조치’ 촉구 및 사과문제와 별도로 4자회담 계속추진 합의
- 11.27 김영삼 대통령, “4자회담에서 북한이 잠수함 침투사과시 수용” 표명
- 12.3 유엔사·북한 군정위 비서장급 접촉
- 12.9 탈북 김경호씨 일가 등 서울 도착
미·북한, 잠수함 사건 및 미·북쌍무문제 협의 관련 실무접촉
- 12.11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 북한경제위기 시인(독 ZDF TV 회견)
- 12.13 통일원 대변인, 남북기본합의서채택 5주년 즈음 이행촉구 대북성명
- 12.16 제3차 미·북 실무접촉
- 12.17 유종하 외무장관, “대북 경수로지원 정상화에 북한 잠수함 침투 사과 필수” 언급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정
- 12.18 북한 인권상황 “전세계 최악” 보고(미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 연례평가보고서)

12.20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잠수함 사건 해결되면 식량지원 검토” 언급

12.21 김영삼 대통령 잠수함 사건 관련, 북한의 분명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않는 한 대북지원 불가 강조

12.21~28

미·북 실무접촉

12.29 북한 외교부 대변인, 잠수함 침투사건 사과성명 발표

12.30 유엔사·북한군간 군정위 비서장급 접촉 진행

무장공비시신(유골) 24구 송환

북한 중앙통신, 미·북접촉에서 공동설명회 참가용의 보도

1997

1.4 미국, 북한과 식량거래 협약

1.8 KEDO-북한 대북 경수로 제공을 위한 서비스의정서와 부지의정서에 서명

1.14 대만 전력공사 총경리(사장), 북한과 핵폐기물 매립 계약 체결 언급

1.15 통일원 대변인, 북한·대만간 핵폐기물 매립 협정체결 중지 촉구

1.16 북한 종교인협회, 남한 종교단체에 수해복구문제 논의 제의

1.21 한·미, 4자회담 설명회 개최 논의

2.1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대만 핵폐기물 북한이전 비난 성명

2.2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북한 당국 요청시 대북식량지원 검토 용의

2.12 북한노동당 국제담당비서 황장엽 망명

2.13 북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서명 거부

2.18 북한 평양방송, 북·미간 잠정평화협정 체결 주장

2.19 중국 등소평 사망

2.20 통일원 대변인,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대북식량지원 참여 언급

2.22 북한 외교부대변인, 4자회담 공동설명회 개최 언급

2.27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규정」 제정

3.5 4자회담 공동설명회 개최

3.6 97년도 T/S 훈련 취소 발표

- 3.7 연락사무소 개설 등 관련 미·북 준고위급 회담
- 3.11 미 국무부대변인, 미·북연락사무소 설치를 4자회담 진전과 연계 시사
- 3.13 김영삼 대통령,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적극 대비 언급
- 3.17 국회, 동아시아대회 북한참가 결의안 채택
- 3.19 미 국무부대변인, 4자회담 성사 전제로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해제 검토 언급
- 3.31 민간단체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 4.8 북한행 KEDO 실무단 동해항 출발
북한, 미 카길사와 미국산 밀 3만톤 반입 합의
- 4.9~15
의정서이행관련 제1차 KEDO-북한 실무협상(신포, 마전)
- 4.11 김영삼 대통령, 북한에 4자회담 수용 촉구
일본 산케이신문, 북한 노동1호 미사일 10기 동해안 배치 보도
- 4.14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민간부문의 대북지원은 창구단일화로 지원 당부
IPU 서울총회, 대만핵 북한 이전 반대결의안 채택
- 4.16 KEDO-북한간 고위급 전문가협상 경수로 대상부지에서 개최
북한, 미국에 국교수립 요청
- 4.16~21
한·미·북, 4자회담 공동설명회 후속회의 개최(뉴욕)
- 4.18 강영훈 「한적」 총재, 북측에 식량지원 및 물류제공절차 협의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제의
- 4.24 강영훈 「한적」 총재, 남북적십자요원 판문점 접촉 제의
- 4.25 미·일 양국정상, 북한의 4자회담 호응 촉구
- 4.30 강영훈 「한적」 총재,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북경개최 수용 대북전통문
「한적」, 제18차 북한 수재민 구호물자 전달
- 5.3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북경)
- 5.12 북한주민 2가족 14명 귀순
「한적」, 제19차 북한수재물자 전달
- 5.13 유종하 외무장관, 북한의 화학무기 금지협약(CWC) 가입촉구
- 5.16 강영훈 「한적」 총재, 남북적십자대표 접촉 제의

- 5.22 IAEA사무총장, 북한의 핵관련 정보 미공개 비난
미국, 북한 등 5개국에 화학무기협정가입 촉구
- 5.23 대북구호물자 전달 관련 제2차 남북 적십자 대표 접촉
- 5.26 촬남북적십자간 대북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서명) 채택
- 5.27 EU, 4자회담 수용촉구 대북성명 발표
- 5.28 KEDO-북한간 2차 실무협상 개최
- 5.29 4자회담 3자(한·미·북) 실무접촉 재개
- 6.9 대북정책공조를 위한 한·미·일 3자 협의회 개최
- 6.12 IAEA, 북한의 「핵안전협정」 준수 촉구
- 6.16 미 국무부대변인, 북한과 미사일 회담 정례화 추진 언급
- 6.17 국제사면위원회, 북한의 인권탄압실태 공개
- 6.18 4자회담관련 한·미·북 실무접촉
- 6.23 G-8 정상회담, 북한에 미사일 개발중지 및 4자회담 수락 촉구
북한, 유엔분담금 감액요청
- 6.24 김영삼 대통령, DMZ 보존 남북한 협력 제의
KEDO-북한, 촬채무불이행시 조치의정서(서명) 발효
- 6.28~30
한·미·북, 4자회담관련 뉴욕3자협의회 개최
예비회담 8.5개최 합의(6.30)
- 6.30 탈북자 4명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의 도움으로 서울 도착
- 7.2 KEDO-북한간 경수로사업추진 세무사항 관련 실무협상 타결
- 7.12 북한 평양방송, 조선일보사에 보복위협
- 7.14 촬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서명) 발효
- 7.15 제1차 탈북자대책협의회 개최 및 후원회장 임명
- 7.22 경수로 지원사업 관련 남북한 우편물교환 시행
- 7.23 대북구호물자지원 관련 제3차 남북적십자대표 접촉
- 7.24 경수로사업 관련 남북한 우편물 교환 시행
- 7.25 남북적십자대표접촉, 제2차 구호물자전달 관련 합의서 타결
- 7.27 아세안안보포럼(ARF), 한반도 정전협정 계속유지 성명 채택
- 7.28 KEDO 현장사무소 개설
- 8.4 대북경수로 관련 남북간 통신 개통
- 8.5 4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 개최
- 8.10 정부, 신포 금호지구를 국내사업장으로 규정

- 8.14 통일원 대변인, 대북지원 식량 투명성 의혹 관련 논평
- 8.15 김영삼 대통령, 「한반도평화정착 4대 방향」 등 제시(광복절 경축사)
- 8.19 신포 금호지구 경수로 부지공사 착공식 개최
- 8.21 「유엔인권소위」, 북한주민 출입국자유 등 촉구 결의안 채택
일·북, 수교본회담 조속개최 합의
- 8.23 통일원 대변인, 대북추가지원(1천만달러) 발표
- 8.24 주이집트 북한대사 장승길 제3국 망명
- 8.28 북한, 유엔인권협약 탈퇴 선언
- 8.29 정원식 촠한적잖 총재, 대북구호물자 지원 계획 통보
- 9.9 일·북, 북송일본인 처 일본방문 합의 (일·북 적십자 회담 9.6~9)
미국적 민항기 최초로 북한 도착
북한 주체연호 사용 시작
- 9.20 EU, KEDO 정식 가입
- 9.23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합의
- 9.24 유종하 외무장관, 한반도유사시 한·일간 협의체 구성 제의
- 9.25 KEDO 집행이사회, 북한 위기사태시 파견 인원 신변안전결의
- 10.1 김영삼 대통령,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고수 경계촉구
- 10.1~5
경수로공사 일시중단 사건 발생(노동신문 훼손관련)
- 10.6 북한 중앙방송, 김정일 총비서 추대 각급 당대표회 개최(9.27~10.5)
보도
10. 7~10
남북한 비행정정보구역(FIR) 통신·통과 항공노선개설을 위한 남북한
당사자 회의 개최(태국 방콕)
- 「대구/평양 항공교통관제소간 관제협정」 서명
- 10.8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공식 추대
- 10.13 북·대만, 연말이전 무역사무소 교환 합의
- 10.14 토지개발공사 등 5개사 협력사업자 승인
- 10.15 북한'?러시아, 농업협정 체결
- 10.17 대성동 주민 2명 남북
- 10.21 8차 경수로 부지조사단 출발
- 10.27 정원식 촠한적잖 총재, 북적에 남북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제의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 국제항로개설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 10.29 미·중 정상회담, 북한 4자회담 참여 촉구
10.30 유엔 인권위, 북한 국제인권협약 탈퇴불가 성명
11.3 북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대표회담 거부
11.5 DHL 평양사무소 개설
11.7 북한, 제4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제의
11.8 북송일본인 쳐 고향방문단 제1진 15명 동경도착
 정원식 촠한적잖 총재, 북한에 구호물자에 대한 분배결과 확인보장

요청

- 11.11 일본 여 3당 대표단 평양도착
 정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지속 방침 발표
11.12 유엔, 북한의 핵관련 안전조치 불이행 우려 표명
11.13 속초-나진·선봉 카페리항로 개설관련 한·중·북 3국 실무협의
11.17 대북 수해복구장비 북송
11.17~18

‘두만강경제개발지역(TREDA) 및 동북아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
연례회의와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정부간 조정위원회’ 제3차회
의 개최

- 11.19 남북한 항로관제소간 직통전화 개통
 공보처, 북한의 KBS 폭파위협 중단촉구 성명
11.20 국가안전기획부, 남파 부부간첩 및 고영복간첩사건 발표
11.21 통일원, 북한의 납치·테러사건 관련 대북 성명
11.21~22

- 4자회담 제3차 예비회담 개최(뉴욕)
11.25 대북경수로 공사비 51억8천만달러 확정
 미 국방부, 북한의 핵무기개발 재개능력 상존언급
12.3 KEDO·북한, 촠경수로발전소 품질보장 및 보증에 관한 의정서(뉴욕)
 상 개시(뉴욕)
12.8 정원식 촠한적잖 총재, 남북적십자 대표접촉(12.22, 북경) 수정제의
 북한 촠조평통(대변인), 금호지구내 남한측 경수로 건설자 부재자
 투표 불허 담화
 IAEA, 북한핵 폐연료봉 내년초 봉인완료

12.9~10

제1차 4자회담 개최(제네바)

12.11 북한 적십자회, 제4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동의(12.22, 북경)

12.13 통일원 대변인, 촐남북기본합의서adow 채택 6주년 즈음 논평

- 촐남북기본합의서adow 등 남북간 모든 합의사항들의 조건없는 준수 · 이행
촉구